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국가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의 역동

- 경기도 양평군 산간마을 대동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류 평 평

국가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의 역동

- 경기도 양평군 산간마을 대동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류 평 평

류평평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김 재 석 (인)

부위원장 강 정 원 (인)

위 원 오 창 현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지역에서 행정리 단위로 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현상을 주목하고, 화전2리 대동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이래 동계류 조직의 지속과 변모를 고찰했다. 대동계의 존속을 이해하는 데, 생활세계를 체계세계와 민속세계로 이원화하는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고 국가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의 연계방식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계세계와 민속세계에서 별도로 발견되는 마을(구역, 주민과 공공의 일)을 각각 더듬어 그 가운데 나타난 의미부여 방식과 인원 및 물질의 움직임의 단서로 차이와 연계방식을 찾아내는 연구방법을 선택했고, 대동계가 공유재산 관리를 주된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히 공유재산의 구성과 움직임에 중점을 맞추었다. 대동계의 변화 추이와 각 단계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대동계가 중수된 1980년대 중반과 대동계 규모가 축소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세 가지 시기를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 시기는 행정 체계화가 시작한 갑오개혁에서 대동계가 중수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우선 연구지 소재 양평군과 경기도 지역에서 발굴된 마을 문서를 통해, 재지사족인 교화직과 중인·하층민에서 선출된 실무직으로 구성되는 임원조직이 나라-마을-인간에 관통하는 행정적 질서를 규칙으로 마을 대소사를 관장하는 마을 행정의 모습을 확인했다. 나아가 정부 문서를 기반으로, 마을 사회에서 국가 행정 관리대상으로서의 마을 영역을 발현시키고 ‘국민’ 품행을 포함하는 행정 체계 주도의 의미부여 방식들을 주민에게 전달하며 마을 사회에 관한 정보를 상달해 마을에 대한 통치를 가능케 하는 말단 행정보조조직이 전시체제와 근대화사업을 거쳐 발달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지의 경우, 마을일로 여겨지는 일생의례 시의 부조와 품앗이는 국가행정 영역에서 배제되나 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어 민속사회와 말단행정구역의 괴리를 보여준다. 한편, 국가 행정 체계는 기능을 준거로 재생산할 때 자신의 작동에 활용될 수 있는 모국 관행을 행정 재원으로 포섭해 말단

행정구역 단위의 계를 재생산시켰다. 기능 중첩에 의한 연계 외에, 민속 세계와 체계세계에서 모두 등장하는 마을 임원과 그들의 노동은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나타난다. 임원수고비 마련은 행정보조조직의 직능으로 확대됐다는 면에서 기능 중첩에 의한 연결을 다시 보여주는 동시에, 동리장 보수제도 수정에 따라 조정되지만 입법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돼 왔다는 점에서 마을사람이 임원 노동에 의미부여하는 방식이 행정 체계로 인한 요동을 흡수하면서 지속해 대동계 설립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시기는 대동계가 소관 재산의 증가로 중수되어 수고비 마련에서 자금 차용, 의례용구 관리, 개발사업 비용 조달까지 기능을 확대한 1980년대 중반~20세기 말이다. 이 시기에 공유재산은 재산이 개별가구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과, 용익권 취득에 따라 구성원과 계 사이에 또한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맺히는 노동 교환 관계를 통해 개별가구를 대동계에 가입시켜 결속을 다지는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대동계 소관 공유재산의 증가는 상례조직과의 통합과 지역사회개발의 전개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의 지역사회개발은 ‘발전’, ‘협동’ ‘자조’를 아울러 강조하는 담론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행정리를 단위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마을 사회에서 인원과 물자의 움직임을 일으켰다. 특히 공동노동이라는 민속세계에서 공유재산과 연관지어져 있는 행위방식을 촉발해, 공동노동을 둘러싼 사회 민속의 지속에 변수를 도입했다. 노동관계와 소유관계를 병행하는 관습과 이에 따른 공동노동 수익 처리 방식은 전처럼 행해져 지역사회개발에서 비롯된 수익과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한 반면에, 공동노동에 답례하는 행위방식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출을 대비하는 수요로, 외부에서 노임 지급의 방식을 수용해 현금화되었다. 마을사람의 지역사회개발담론에 대한 수용과 노동 답례 방식의 전환이 이 시기에는 공유재산을 늘려 대동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 시기에는 대동계와 민속사회의 축소를 초래하는 계기 중의 하나가 됐다.

21세기에 들어 생활세계에서의 기능 영역 분화와 말단행정에서의 전문화가 심화되면서, 공유재산은 개별가구의 일상생활과 연결고리를 풀어

나가고 발전 담론 주도 하의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됐다. 공유재산이 재편된 데다가 발전담론이 구성원과 집단 사이 또한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노동교환을 유지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동계는 여전히 마을재정기구의 성격으로 행정 체계로부터 지속 동력을 받고 있지만 공유재산의 구속력과 함께 축소됐다. 환언하면, 행정 체계는 단체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적 질서를 제시해 주었지만, 과거의 나라-마을-인간에 관통했던 행정적 질서처럼 강한 사회 통합을 낳기 어렵다. 후자에서 비롯된 인간관은 오늘날에도 사회 민속에서 잔존하고 있으며 행정 체계에 의해 발현되는 행정마을과 사회 민속에 의해 발현되는 민속 사회 사이의 균열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행정 체계와 이로 확산된 발전 담론은 개별주민의 세계들의 연결점과 물적·인적 자원 유통의 기본 방향을 주도하고 있지만, 생성시키는 사회적 연대가 취약하고 오히려 행정 체계의 작동과 상호 동반하는 민속에서 안정성의 힘을 얻는다.

.....

**주요어 : 대동계, 사회 민속, 행정 체계,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개발,
마을공유재산**

학 번 : 2019-23025

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배경	1
1.2 선행연구 검토	6
1) 동계 연구 약사	6
2) 한국 마을공동체에 관한 논의	12
1.3 연구 시각 및 방법	14
제 2 장 연구 지역 개관	19
2.1 마을의 형성, 성장과 사는 사람들	19
2.2 자연과 사회 민속	27
2.3 신앙과 사회 민속	35
제 3 장 행정 체계화와 대동계 설립	39
3.1 행정 체계화에 따라 발현된 마을	39
1) 나라-마을-인간에 관통했던 행정적 질서	39
2) 마을 사회에서 행정적 질서 및 조직의 분화	42
3) 이·반조직의 정립과 행정리의 위상 상승	49
3.2 기능과 ‘수고’ 관념으로 말단 행정과 연계된 동계 ...	54
1) 마을재정기구로 단순화되어 국가 행정 재원으로 활 용된 동계	54
2) 행정보조조직 기능 확장과 수고비 관행의 지속 ...	58
제 4 장 개발사업의 전개와 대동계의 성장	66

4.1 공유재산에 의한 결속과 그 원리	66
1) 공유재산의 구성, 출처와 용도	66
2) 재산 공유 관계에 의해 지어진 집단 경계	74
i. 가입 동기 겸 구성원 자격에 해당하는 용의	74
ii. 재산공유에 수반된 노동참여	95
4.2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대동계의 활성화	85
1) 지역사회개발사업 전략의 기본적 골격	86
2) 지역사회개발을 계기로 증가한 공유재산	90
i. 부역으로부터 나온 공동노동수익	91
ii. 개발 비용의 마련과 부조 답례 현금화	95

제 5 장 공유재산의 재편과 구속력 약화

5.1 행정 체계와 사회 민속에서 마을의 역할 축소	104
1) 면으로 거점을 이동한 말단 행정	104
2) 개별가구의 삶과 연결고리를 풀린 공유재산	108
5.2 발전 담론 주도 하의 대동계 운영과 사회 통합	111
1)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공유재산	111
2) 민속사회와 행정리의 괴리 및 공존	125
3) 노동참여 탈의무화 후 여가로 보강된 통합	130

제 6 장 결론

134

참고문헌

141

中文摘要

149

표 목 차

[표 I-1] 면담대상자 명단	17
[표 II-1] 농지개혁 전 각 성씨 소유 농지 면적	22
[표 II-2] 농지개혁 전 천 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23
[표 II-3] 농지개혁 후 천 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	23
[표 II-4] 농지개혁 후 주요 성씨 농지소유 상황	24
[표 II-5] 지명 추이와 집거 양상	25
[표 II-6] 대동계 계원 구성 변화	26
[표 IV-1] 1985~2020년도 화전2리 세대수와 대동계 가입 가구 수 추이	76
[표 IV-2] 1985년도 대동계 가입 가구의 주요 성씨 구성 ..	80
[표 IV-3] 1970년대 국토가꾸기 추진 체제	87
[표 IV-4] 1980년대 후반 대동계 자금 지출 상황	97
[표 V-1] 차용이자 금액 추이	109
[표 V-2] 주요 마을공용물품	109
[표 V-3] 찬조 주체 및 찬조금의 구성	114
[표 V-4] 대동계 자금의 지출구조와 그 변화	117
[표 V-5] 양평군에서 체육·문화 행사 관련 정책 추이	119

그림 목 차

[그림 II-1] 『지평현 광여도』	20
[그림 II-2] 『지평현 여지도』 (부분)	20
[그림 II-3] 1970년대 이래 화전2리 세대수 및 인구수 또한 대동계 가구수 추이	24
[그림 II-4] 연구지 마을 지도(2019년 기준)	28
[그림 II-5] 다른 농가에서 받은 모판으로 이양함	33
[그림 II-6] 남아서 얹어진 모판	33
[그림 III-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 도해	47
[그림 V-1, 2] 마을창고 내부 사진	110
[그림 V-3] 1989년도 대동계통문	112
[그림 V-4] 2012~2020년도 세입예산	123
[그림 V-5] 2012~2020년도 세출결산	123
[그림 V-6, 7] 다른 수입항목과 구분해서 별도로 기록된 척 사대회 찬조금	123
[그림 V-8, 9] 별도로 기록된 마을축제 관련 수입·지출 ..	123
[그림 V-10] 2006년도 면체육대회 관련 지출(부분)	123

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지역에서는 행정리를 단위로 ‘대동계(大洞契)’ 혹은 ‘이중계(里中契)’라는 마을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계원들은 해마다 이세(里稅)를 납부함으로써 마을 기금을 마련하고 마을 임원 수고비, 공유 물품 구입비 및 보수비, 각종 행사경비로 사용하며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연말에 총회를 열어 이세를 거두는 동시에 결산보고, 마을 임원 선거와 내년 마을사업 계획 체결 등의 마을 일을 의논한다. 동리를 단위로 계를 결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처리하는 문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편, 계의 규모, 성격과 기능 등 측면에 있어서 다소 변화를 다소 보인다. 특히 20세기 초에 식민지 통치를 거쳐, 여러 자연촌을 아우르는 재지사족 중심의 상하합계형 동계나 분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자연촌 단위로 운영되는 촌계¹⁾나 모두 면제 실시 또한 촌락 지배정책으로 인해 재편 내지 해체를 겪었다. 해방 후 반공과 개발 사업의 전개를 위해 마을 행정적 대표자와 반장으로 이루어지는 기반행정조직이 유지·강화되었고,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따라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 개발위원회 등 관련 자치조직도 형성되어 기반행정조직과 같이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망을 형성했다. 따라서 20세기 동계류 조직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재지사

1) 촌계는 동계를 주관하고 마을재산 관리, 부역 및 두레 조직, 분쟁조정과 구휼 등 일에 관여하는 자연촌 단위의 계모임이었다. 동회, 리회, 촌회, 촌약, 소계(小契), 사계(私契), 향두 등으로도 불렸다(김용덕, 1992: 33; 이해준, 1992: 205). 동리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1910년대 행정구역 통폐합 전의 동리는 자연촌인 경우가 있고 몇 개의 자연촌으로 구성되는 지역촌인 경우도 있다), 촌계와 동계의 관계는 단언하거나 요약하기가 어렵다. 다만 동계 중 자연촌 범위를 넘어서 결성되고 양반에 의해 주도되던 그 유형은 양란 이후 자연촌 단위의 촌계/동계를 포섭하기 시작했고 공동납제가 강화된 후 동역 분담 분쟁의 치열화로 인해 다시 분화되어 형해화됐다는 것이 통념이다.

족의 향촌지배를 주목하는 향촌사회사적 동계 연구와 달리 행정력의 마을에 대한 침투를 염두에 두었으며, 마을 행정 조직과 계 조직이 분리하고 행정적 질서와 자치적 질서가 분리한다는 이원구조론을 제기했다(김준 2003; 윤해동 2006; 이용기 2007). 그중에서 동계와 촌계는 마을 전체 주민이 결속해서 마을 일을 다스리고 상부상조하는 ‘마을자치기구’이며 행정과 구별되는 ‘공동체’적 차원에 속하는 조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마을이라는 지역을 행정리와 경계가 일치하는 곳으로 보는 시선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야 대두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사람들의 ‘마을’에 대한 경험과 이를 토대로 전개하는 행위방식은 정해진 양식을 갖추지 않고 국가의 말단 행정과 같이 변화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익숙한 ‘마을공동체’ 개념도 행정리가 생활단위로 자리를 잡게 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논문은 동계류 조직이 대부분 지역에서 소멸된 20세기 후반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지역에서 행정리 단위로 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국가 행정과 마을 사회 민속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 의존·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시각에 입각해, 해방 후 반계(班契) 토대 위에 설립된 화전2리 대동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체계화 아래 대동계의 지속과 변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에게 경험되는 생활세계를 ‘기능영역이 내외준거를 기반으로 자동 재생산되는 체계세계와 기능영역이 상호 중첩되면서 문화와 개별 주체의 지배하에 놓이는 민속세계’로 이원화하는 이론적 모델(강정원 2020: 23-24)을 수용해서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을 이해한다.

현상학적 용어인 생활세계는 살아가는 자에게 삶을 이루는 모든 가능성의 장(場) 혹은 지평으로서, 원리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우주로서 주어지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참된’ 세계와 구별된다(후설 1997: 228-231, 250). 개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세계는 실재하나, 그 원래 모습대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 인간에게 경험되는 대로 주어진다. 개별 인간에 따라 경험되는 세계가 다르지만, 인간은 폐쇄적·독립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른 존재자(와 그 세계)들을 만나 자기 세계의 지평을 넓히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동리를 단위로 결성해 여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동계는 개별 주민의 세계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운영되고 개별 주민들이 마을이라는 단위와 마을일로 불려지는 공공의 일을 경험하는 데 중첩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동계류 조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동계를 ‘마을공동체’의 표징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바로 마을조직의 이러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대립시켜 보는 시선과 같이 ‘마을공동체’ 개념 자체는 재검토될 여지가 많다. ‘공동체’개념은 인간관계와 이에 기반한 사회 형태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기 위한 고전사회학 개념들이, 한국에서 번역·소개된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²⁾. 사회 복잡화와 사회이론의 정교화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관계와 사회통합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동체’ 개념은 점차 다른 개념 및 이론 틀로 대체됐다. 1980년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가 대두되면서 공동체 개념은 다시 각광 받았는데, 소유관계와 예속관계의 형태 혹은 본질의식과 선택의 지 등의 문제 대신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규명되었다. 한국에서 공동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위와 같은 공동체 이론의 동향과 맞물려 있는 동시에 국내 지역사회개발의 전개와 밀착되어 있어 특수성을 지닌다.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실천이 전개되면서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표현이 공식 문서에서 언론 보도와 사람들의 대화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이에 상응하여 연구 영역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다시 주목해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학술용어로 수용한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용어는 폭넓게 사용된 한편 내포와 외연이 모호해지게 됐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를 분석 용어로 수용하지 않고

2) 소유관계와 예속관계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와 달리하는 사회로 제시된 ‘코뮌(Commune)’, 감정까지 포함하는 전체 심리적 요소들이 아울러 작동하는 상태에서 형성된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특정한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결사체(association)’와 구분되고 관념, 관습, 소속감 등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공동생활권(circle of common life)으로 정의된 ‘커뮤니티(community)’ (MacIver 1921: 8) 등 내포가 각각 다른 개념들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모두 공동체 부류로 취급됐다.

마을 만들기 사업 용어만으로 취급하며, 대신 ‘마을 사회 민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마을이라는 사회 단위를 경험하는 방식과 이 과정에서 맺힌 사회적 연대를 연구 내용으로 삼는다.

생활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반복되는 행위방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방식(가령 감각방식, 지각방식, 사고방식과 감정방식 등) 및 행위 결과물인 행위체를 문화로 간주한다면(강정원 2020: 34), 수단합리성과 기능 분화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가 주도하는 부분과, 기능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감각, 지각, 사고와 감정 등 인간 경험의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합리성에 기반하는 경험이 주도하는 부분으로 문화를 분류할 수 있고, 후자를 민속 문화로 볼 수 있다. 마을 사회 민속은 마을이라는 사회·생활 단위와 관련된 민속 문화이다. 여기서 논쟁을 일으킬 개념은 오히려 다양한 정의로 사용돼 와서 다의성을 지니는 ‘체계’이다. 인류학에서는 체계가 처음에 내부적으로 분절되면서도 하나의 전체로 통합되는 총체로 이해되었고³⁾, 복잡 적응 체계(Complex Adaptive System) 이론이 도입되면서 체계 내부의 구조와 체계 전체의 일체성, 자율성, 안정성보다는 체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적응·변동하는 면이 주목받게 됐다. 이 글에서 말하는 체계는 복잡 적응 체계에 가깝다. 다만 국가와 행정 기능을 지향하는 체계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의 체계이론도 아울러 참고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와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일찍이 시작한 사회학에서는 체계이론이 기능주의적 방법론 및 현대성 비판과 함께 발전해 나가며 사회학 정립 초기부터 제시된 사회적 질서 및 통합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시도해 왔다. 파슨스는 규범과 가치를 사회적 행동의 영향요소로 보아 사회체계, 인격체계와 문화체계, 행위체계 등 체계들을 범주화함으로써 개별 인간들 행동 속에서 사회적 질서의 생성 및 재생산을 논했으며, 무작위의 대립면에 속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의미하

3) 예를 들면, 레드클리프-브라운은 자신의 사회인류학방법론에서 문화가 분절적 구조(segmentary structure)들이 일반 법칙에 따라 통합된 체계라며, 문화라는 체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사회생활의 질서를 낳는 기능을 중요시했다(Radcliffe-Brown, Srinivas 1958: 61-62).

는 것이라고 체계를 이해했다(Parsons, Shils 1951: 5; Parsons 1968: 4, 1991[1951] 7). 이와 달리 하버마스는 체계 메커니즘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는 기능적 연관을 통해서 작동하고 규범과 의사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통합과 다른 체계적 통합을 낳는다고 주장해(Habermas 1984: 117), 체계를 상호주관적 의미나 가치와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루만도 기능이 사회적 체계의 분화 기준이 된 것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들었지만(Luhmann 1998: 5), 사회를 사회적 체계로 보고 체계 자기재생산의 기반인 ‘체계/환경-차이’의 재생산을 의미의 생성으로 보았다(루만 2020: 76, 175-178, 183-184)는 점에서 하버마스와 상이하다. 루만의 체계이론은 복잡 적응 체계를 모델로 하며 의미 개념을 체계 분석에 적용하므로, 국가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를 체계로 가정하는 전제는 생활세계에서 비체계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배제시킨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전개된 체계는 자신과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유지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의존의 관계를 맺는다. 환경은 체계에 의해서 자신의 동일성을 획득하고 열린 지평 속에서 구획된다(루만 2020: 100-101). 여기서 ‘지평’이란 생활세계와 가까운 개념이다. 루만은 ‘생활세계’ 대신에 ‘지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와 동시에 ‘세계(Welt)’를 ‘체계/환경-차이’와 함께 생성하는 의미의 동일성에 대한 상관물로 규정해(ibid: 418-419) 체계의 세계로 그 함의를 일축한다. 그러나 지평과 생활세계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체계와 환경을 이해한다면, 체계의 대상으로서 환경은 생활세계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정이 필요한 개념은 행정이다. 이 논문에서의 행정은 입법, 사법과 구분되는 국가기관의 행위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administration)을 채택하지 않는다. 막스 베버의 주장에 입각한 ‘단체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적 질서’ 중의 행정(Verwaltung)의 개념을 적용한다(베버 1997: 187-188). 국가 행정은 국가 영토 내에서 행위를 규제하는 가망성을 지니는 작동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행정 행위를 체계이론의 맥락에서 검토할 때 국가 행정이 처음부터 체계화되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연구지 소개에 이어 마을에 대한 국가 행정이 체계화된 과정을 검토한 뒤, 4장과 5장에서 행정 체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대상화하는 ‘마을’과 ‘마을주민’의 생활방식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마을’을 경험하고 ‘마을일’을 처리하는 생활방식들을 기술하고 그들 간의 연결 방식과 영향 관계를 밝히도록 한다.

행정 체계는 생활세계에서 자신에 어울리는 환경(milieu)을 만들어 놓으면서 돌아가는 동시에,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삶(세계)을 영위하고 있다. 이 글이 다루려는 사회 민속은 바로 개별 사람에게 주어진 세계들 가운데 공통된 부분으로 나타나는 행위 방식과 의미화 방식, 특히 마을이라는 단위, ‘마을 주민’ 또한 ‘마을일’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다. 행정 체계와 마을 사람은 같은 생활세계에서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활세계를 대상화하여 경험하고 서로에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관계 속에서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이 맺힌 연결과 겪은 역동을 기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국가통치와 마을자치의 이분법을 넘어섬으로써, 대동계의 존속 원리, 국가의 마을 행정 관리, 마을 사회의 통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1) 동계 연구 요약

본 장에서는 동계 연구의 전개를 간략히 소개하고, 동계의 장기지속을 주제로 하는 연구와 동계를 행정 체계와 연결시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동계의 역사적 변천을 연구사의 맥락 속에서 함께 읽어내고자 하기에 다소 길어지더라도 개별 성과물들을 꼼꼼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동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일찍이 식민지시기에 이루어졌고 풍부한 데이터를 추적해왔다. 일제강점기에 계는 조합과 유사한 조직으로서 주목받았으며, 동계·대동계·이중계는 계 종류 중 하나로 조사되어 공공

사업을 위한 계나 일종의 마을규약으로 분류됐다(朝鮮總督府 1910: 265-266, 1926, 1938; 李覺鍾 1923: 81; 善生永助 1927). 공공사업이란 도로, 교량, 제언과 보의 보수, 동제, 소임 또는 구장의 보수, 혼상구와 농기구의 구입 및 관리, 무연고 사망자의 안치 등 일로 소개되었다. 중추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계는 금송계 기능을 행하여 동산(洞山)을 관리하고 남벌과 도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경우가 있다(中樞院 1912). 당시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동계의 재산 각출 및 식리 그리고 호세 납부 기능이었다. 동계의 식리성, 공동체성, 호포제·사창제·인보제와의 관계 그리고 자치적 성격은 연구의 주요 주제 내지 쟁점이 되었다(李覺鍾 1923; 豬谷善一 1924; 백남운 1991[1927]; 今村鞆 1931). 식민지 시기의 조사 및 연구는 지방행정제도를 모색하고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려는 식민지 당국의 동향과 맞물려 있어 실천적 지향을 강하게 나타내긴 하지만, 한말~일제 초기의 동계 양상에 대한 소중한 기록을 남겼다.

동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해방 후 계에 대한 사회경제사적 연구(김병하 1958; 김삼수 1964; 장동섭 1969, 1973)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1980년대 향촌사회사 연구에서 향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활발해졌다. 향촌사회사적 연구는 처음에는 동계를 향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향약을 동리로 적용된 과정에서 생긴 하부조직으로 보았다(한상권 1984; 김인걸 1984; 이진태 1989; 이해준 1996: 86; 박순 1999). 한편, 재래적 협동 관습과 계의 전통을 강조하여, 동계가 향약에서 독립되고 평등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주장(김경일 1984: 167-168)과, 향약이 토착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계와 결합될 수밖에 없고 거꾸로 동계의 보급에 계기로 제기하기도 했다는 관점(장동섭 1969: 15; 최재율 1991: 41; 정승진 2006: 304)도 있다.

향약과 동계의 관계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만, 동계가 신분적 구분을 바탕으로 조직되었다는 관점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동계 조직양상을 통해 사족지배체제 동향과 반상관계 변화를 밝히는 것은 한 동안 향촌사회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물적 토대의 취약화와 양란

후 토지 및 인구의 유리 등 위기를 당면하여 재지사족들은 피폐된 향촌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종전의 동계에서 배제되고 있던 하층민들을 동계에 포섭시켜 상하합계 형태로 동계를 중수했다. 공동납제가 시행된 후 동리는 하나의 전체로서 묶였지만 분담 문제로 계급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하계의 분동 요구로 발전해 나갔다(김인걸 1984: 125; 임선빈 1993: 35; 이해준 1996: 68-71; 이영훈 2002: 283-288; 이용기 2006: 5; 황기준 2017; 배향섭 2021: 145). 주장현(2003)은 서산 고양동 동계의 사례를 통해, 사족 중심의 동계에서 갈려 나온 촌계가 자주성과 자치적 성격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식민지시기 조사 자료에서 나온, 반상의 구별 없이 동리 내 모든 가호가 참여하는 동계, 대동계 혹은 이중계 중에는 자연마을을 단위로 결성한 사례가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1980년대 중반 후로부터 연구 시각이 과도하게 재지사족에 편향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하층민 중심으로 동계를 접근하는 시도가 있었다. 김용덕(1985)은 동계가 두레, 동제, 이사지법(里社之法) 등 기타 관행과의 연결을 중요시하고 동계의 유교적 걸모습 아래 토속신앙적 토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경하(1987)는 고평동 동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왜란 후 동약·동계가 향약의 틀에서 벗어나고 민간 관행들을 적극 수용할 뿐 아니라 교민(教民)이 아닌 양민(養民)으로 중점을 돌렸음을 밝혔다. 이해준(1990, 1996)은 향도, 촌계, 소계, 하계, 사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동계 하부조직을 기층민의 ‘생활공동체조직’이라고 보아 그 성격과 위상 변화를 고찰했다.

향촌사회사 연구는 주로 ‘관-재지사족-상천민’의 틀에 의해 반상관계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접근하는데, 반상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공동납을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과 수령권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여겨, 이와 동계 양상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공동납의 영향에 대한 분석 외에, 국가권력이 사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동요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향촌사회 내부의 계급관계와 동계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확인된다. 구열희(2019)는 경기도 양근지역 대야동 동계의 사례를 통해,

사족들이 관 주도적 지배체제와 결합하면서 일반 인민에게 상호부조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분동 요구를 물리친 사례를 제시한다. 대야동 동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국가 행정중심지와 인접하는 지리적 조건과 화재·도적·역병 등 재액이 빈발함에 따른 상호부조의 긴박성으로 설명한 것이다.

국가의 통치가 사족지배구조와 동계 형태에 영향을 미쳤으나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재지양반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다. 동계 연구에서 국가통치와 마을자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논저들은 주로 행정 체계의 마을사회에 대한 침투가 심화된 식민지시기에 초점을 맞췄다. 김경일(1984)은 동계의 수가 1910년대에 줄었다가 1920~30년대에 들어서 다시 증가한 추세를 주목했는데, 협동운동, 생활혁신운동, 농촌진흥운동 등 관 주도 프로젝트를 계기로 동계가 부흥회, 진흥회나 조합으로 탈바꿈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력과 행정력이 농촌생활 각 분야에 거쳐 유입되며 자치촌적 질서와 행정촌적 질서가 공존했던 균형이 붕괴되었음을 근거로, 일제하 동계의 변화에 대한 시론을 주장했다. 21세기에 들어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면서 식민지시기의 국가지배와 마을자치는 동계 연구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부상하게 된다.

윤해동(2006)은 면 행정, 중간지배층과 마을조직이 연동된 '촌락의 삼국면'이라는 틀을 제기하고 식민지 촌락에서 지배와 자치가 교착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동계 재편 과정에서 조합의 성격과 향약정신이 의도적으로 강조됐으며 공익기구, 금융기구, 생산기구와 혼상부조기구로 분화된 후 국민총력체제 하에 부락연맹으로 통합되어 행정조직이자 통제조직으로서 작동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용기(2007)는 연구의 범위를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에 걸친 근대 이행기까지 확대하고 전남 어서리 마을 동계의 변화를 관찰해 마을의 자치적 운영이 국가의 지배력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했다. 그는 전시동원체제의 가동 시기를 동계가 행정력에 밀착·포섭된 시기로 보았으며,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동계가 급속히 위축됐고 1950년대부터 마을의 행정적 차원의 업무와 부담에서 손을 떼어 동제, 동수세찬(洞首歲饌), 강신비(講信費), 마을 공유 물품의

유지 및 장만 등 비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마을 행정의 영역과 동계의 영역이 이원화되었음에도 ‘공동체적 질서’가 행정적 질서와 병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진교(2014)는 봉정 대동계의 사례를 통해 식민권력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수동적 수용, 적극적/수동적 저항, 명시적/암묵적 타협과 조정을 드러내는 데에 주력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대동계 위상이 전통과 근대, 자율과 타율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에 들어 ‘국가지배와 마을자치’와 같이 동계 연구의 공통관심사는 장기지속의 문제이다. 하나의 동계를 대상으로 그 기능적 변화와 지속 원리를 밝히는 사례연구는 우후죽순처럼 제출됐다. 김경옥(2002)은 20세기 전반 장흥 유치동계의 동향을 관찰하여 인구감소에 따라 합계가 이루어졌으며 공공기금 확보 및 행정업무 보조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김준(2003)도 구립대동계의 형성과 변모를 추적한 과정에서 종족적 기반을 매개로 확립됐던 대동계가 개발중심의 조직으로 나아가 축제 중심으로 변했음을 발견했으며, 동계와 지역사회개발과의 연결을 보여줬다. 이용기의 연구와 대조하여, 해방 후 동계나 대동계가 어떻게 행정 영역과 분리되고 다시 연계되는가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동계 장기지속의 경우,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협력 혹은 상호부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김경옥 2010), ‘도덕경제’, ‘생존윤리’와 ‘호혜성’ 등 인류학적 용어를 동계 장기지속의 원동력으로 제시한 연구가 있다(정승진 2004, 2006; 김건태 2008; 정수환 2019, 2020). 그러나 ‘공동체’처럼 ‘도덕경제’, ‘생존윤리’와 ‘호혜성’ 등 사람들의 행위 양식과 인간관계를 서술하는 관점으로부터 제기된 개념들은 선형적인 대상으로 가정되거나 현상의 원인으로 제시되기 어렵다. 현상과 같이 나타나고 현상의 특징으로 추출된 것이지만 현상과 인과관계로 연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원인으로 취급하기보단 생성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 검토한 연구들에 있어서 동계류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착안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반상관계, 국가 행정과 마을 자치의

관계, 그리고 동계·장례·두레 등 기타 민속 영역과 동계의 관련성이 그것이다. 그 외에 혈연관계도 동계류 조직의 결성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됐다. 김택규는 동성촌락이 각성촌락에 비하여 계의 수량 및 종류가 적다는 점에 입각하여, 계를 친족조직과 대비되는 이웃간의 협동조직으로 판단했다(김택규 1985: 425-426). 씨족의 족적 결합 및 대잇기가 동계의 지속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을 밝힌 사례연구는(박순 1999: 35-60; 정승진 2006: 332) 혈연에 기반한 관계나 조직이 대동계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어 동계와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수직적 차원에서는 동계의 재생산에 기여함을 밝힌다. 본 연구는 대동계의 존속 및 국가 행정과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의 성과에 착안하되 기존 연구에 누락된 요소들을 추가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에는 국가 행정이 재지사족을 통해 마을의 행정을 관리했기에, 재지사족들이 주도하는 질서가 동계 존속 및 형태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두레와 동계를 비롯한 마을 사회 민속들이 동계와 결합했을 가능성도 확인된다. 식민지시기에 들어서며 마을 조직이 분화되었고 동계는 재원 마련과 행정 관리 수단인 관변단체로 재편되었다.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의 도입은 마을 사회에 대한 행정력 침투가 심화된 이정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해방 후 국가 행정과 동계 조직의 관계는 사례에 따라 달라졌다. 동계가 마을 행정 영역에서 분리 돼 독자적으로 운영됐다는 사례가 밝혀진 한편, 동계 사무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사례도 드러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조선후기에서부터 식민지시기까지 과도기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방 후 개발사업에서 국가 행정과 동계 운영양상의 관계에 대한 보완책을 구상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행정과 사회 민속의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동계 활동 내역에 대한 정태적 묘사, ‘공동체’ 혹은 마을사람들의 ‘적극적/수동적’ 대응을 발견하는 만족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인원과 물질들의 움직임을 통해 대동계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며 개별 가구(동계류 조직의 가입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 것이 상례임)의 생활방식을 사회적 통합과

대동계 존속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주목한다.

2) 한국 마을공동체에 관한 논의

마을공동체 논의를 검토하는 까닭은, 대동계 운영의 기반을 마을공동체와 연결지어 설명해온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 마을공동체와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마을, 대동계와 공동체의 관계를 설정해온 방식을 재고하고자 한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처음에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의 저술을 거쳐 도입되며 코뮌과 공동사회의 의미에서 사용됐다. 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이타니 젠이치는 계를 원시사회의 공동소유제와 연결시킴으로써 계의 공동체성을 입증한 바 있다(猪谷善一 1924: 541). 한편 백남운은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구분을 근거로 계를 정의해, 계가 공동체가 아닌 ‘목적사회’에 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백남운 1991[1927]). 공동체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방식은 해방 후 한국 경제사, 사회사와 농촌사회학 연구에서 수용되었고 계에 관한 연구에서 계가 공동체인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초래했다. 최재석은 공동체 개념을 서로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토론의 불편 내지 논란까지 가져온 상황에 임해, 각 학과에서 쓰이는 공동체 개념을 검토한 후 농촌사회학의 연구 단위로서 ‘촌락 공동체’ 개념을 제기하고 이를 ‘전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고 생산을 위한 공동조직을 가지는, 가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폐쇄적 지역집단’으로 규정했다(최재석 1972: 35). 그 이후 ‘자연부락’이라는 개념으로 수정하고 동산 승배와 동제 수행, 기우제나 안택에의 공동참여, 생산·생활을 위한 공동조직 계와 두레의 존재, 길흥사에 대한 연대의식과 상호부조 그리고 공동제재 등 지표들을 제시했다(최재석 1975: 54-68).

최재석의 자연부락 개념은 스즈키 에타로의 자연촌 개념과 대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스즈키 에타로는 한국 농촌을 답사했을 때 공동기원, 동계, 공동 생산 및 놀이 등 관습을 포착해서 촌락을 ‘협동체’라 했고(스즈키 에타로 1943) ‘자연촌’ 개념을 한국 농촌에 적용하면서 한일

자연촌의 차이를 비교했다. 자연촌은 주거의 근접에 기반한 지연적 결합, 다양한 사회집단의 누적, 그리고 정신상의 일체성을 보여주는 사회의식체계 등 세 가지 측면을 겸비하는 사회 단위를 가리키는데, 스즈키 에타로는 한국의 자연촌이 일본의 자연촌에 비해 집단조직의 수가 더 많고 집단의 조직화 수준이 높은 반면 성씨, 계급, 성별과 장유에 의한 사회분화가 현저하여 일체성이 비교적으로 저조함에 주목했다(鈴木榮太郎 1973: 87-88). 자연부락은 자연촌처럼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방식을 마을의 특징으로 삼되, 한국 마을의 일체성과 폐쇄성을 강조했다.

농촌사회학의 연구 단위로 제기된 자연촌과 자연부락은 지역적 경계,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공간의 중첩을 조건으로 형성된 사회를 지칭하며 생활방식의 공유, 일체성과 연대감을 이 사회 집단의 특성으로 전제한다. 이와 같은 가정에 대해 혼다 히로시는 질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그는 사회적 경계가 지연적 경계 사이의 간격을 제시함으로써 지연적 공동성이라는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며(혼다 히로시 2002), 마을에 일체성을 부여하는 경향 또한 비판하고 자연촌과 자연부락의 대안으로서 ‘마을 커뮤니티’ 개념을 정립했다. 마을 커뮤니티가 생활자원의 공유, 상호부조나 협동 같은 대면적 상호행위의 누적, 그리고 상호주관적인 인식에 기반한 상징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귀속의식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고 본 것이다(本田洋 2016: 34). 자연촌 및 자연부락에 비해, 지연적 계기보다는 상호행위와 상징 구축의 반복을 중요시하는 마을 커뮤니티로부터, 공동성의 유지 및 재생산을 끊임없는 실천과 상징의 재생산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동태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동체의 범위를 마을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는 접근법 외, 공동체를 마을사회에서 평등호혜적인 일면만으로 이해하고 이와 상응되는 위계적 일면을 동시에 설정해온 연구도 관찰된다. 사회관계에 착안한 연구 중에는 이토 아비토의 친족관계와 ‘친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는 친족관계가 부계혈연에 기반하고 문중 사이의 잠재적 긴장을 배태하는데 수평적인 ‘친한 관계’가 친족의 경계를 넘어 마을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이토 아비토 1982: 54-57). 빈센트 브랜드의 경우

는 이토 아비토와 유사한 이원적 틀을 설정하지만 사회관계 대신 문화 심리와 윤리 체계에 중점을 두어 위계적(‘양반적’) 가치관과 평등주의적(‘평민주의’적) 가치관을 유형화했다(브란트 1975: 20).

공동체는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을사회에서 뿌리 깊이 박혔던 반상구별이, 기존의 연구에서 상호부조 또는 공동체의 표징으로 여겨진 두레, 상여계 등 마을조직을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밝히며 공동체를 호혜평등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연구가 제출됐고(오창현 2008; 안승택 2019), 공동노동에 공동체적 계기와 이해타산적 계기가 병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안승택 2009). 그러나 마을에 내재된 분화와 불평등이 부각되었음에도 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회나 집단 전체의 대명사로 동일시되어 계속 사용되어 왔다.

1절에서 지적했듯 공동체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 색깔에 물들어 있으며 존재자에 따라 주어지는 마을의 차이성을 포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전개돼 온 연구들의 성과가 부정될 수는 없다. ‘마을 커뮤니티’ 모델에서 커뮤니티 및 공동성의 재생산 기반 중 일례로 지적된 생활자원의 공유는 물질에 의한 개별 세계의 연결로 이해될 수 있으며, 대면적 상호행위는 개별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고, 상징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넘어 연결을 낳는 매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 마을공동체의 표징이나 마을공동체 재생에 기여하는 요소로 제기된 상부상조 정신, 공동체적 가치관, 동계를 비롯한 상징체계(정승모 1981; 강정원 2002), 선물·노동교환 그리고 공유재산(안승택 2014) 등은 모두 개별 세계들의 연결을 수반하거나 연결을 가능케 하는 매체로서 기능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연결고리들을 단서로, 연구지 마을의 역사와 특징을 개관해보기로 한다.

1.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하는 화전2리를 연구지로 선정했다. 개발사업과 동계류 조직의 연계를 고찰하기 위해 정보화마을사업 진행 상황을 단서로 연구지를 선정해, 한국 국내에서 정보화마을의 수가 가장 많은 양평군을 주목하게 됐다. 양평군은 경기지역에 속해 조선시기부터 중앙정부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 왔다. 조선시기 수도 주민의 삶과 중앙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충당하는 기능을 맡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부역 및 조세 부담이 심각했고⁴⁾, 왕족의 능묘들이 산재하는 지역이기도 하여 능묘의 구축·수축·능행(陵行)·제흥(祭享)에 관계하는 능역(陵役)이 빈번했다. 또한 임금의 수렵과 강무를 위한 강무장도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농지 개간, 벌목, 사냥 등이 금지되었고 지역민들 중 몰이꾼이 징발됐다⁵⁾. 조세와 부역 부담이 무거워 경제적 성장이 저조하던 곳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심한 피해까지 받았다⁶⁾. 전쟁이 끝난

4) 공납제가 행해졌던 시기 경기지역 주민들은 지방 영(營)·읍에 소요된 땀감, 풀과 숯 등 물자뿐 아니라 중앙관서에 소요된 것까지 공물로 바쳐야 했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동법이 시행된 후, 경기지역은 지방에서 상납하는 세미를 도성으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투입하는 인력이 많았다. 선난이나 가뭄 발생 시, 연구지와 같은 수운로 연안지역에서는 조운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동원되었다(『세종실록』, 세종 5년 4월 16일: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이제 경상도 녹전(祿轉)을 조운하는 때를 당하여, 가뭄으로 말미암아 강물이 얕아져서, 배들이 여울을 만나게 되면 통해하지 못하니, 청컨대, 여흥·음죽·이천·천령·지평·양근·광주 등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기 물가에 사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여울을 파서, 배가 통행하도록 하소서.”).

5) 『세종실록』, 세종 원년 2월 22일: 병조에서 계하기를, “양근 성산(城山)의 몰이꾼 2천 명은 양근·지평 등 8읍에서 징발하고, 광주 검단산의 몰이꾼 2천 명은 광주와 용인 9읍에서 징발하게 하소서”.

『세종실록』, 세종 2년 2월 22일: 선지(宣旨)하기를, “강무장(講武場)으로는 경기도의 광주·양근 등지, 철원·안협 등지, 강원도의 평강·이천 등지, 황성·진보 등지로 결정하고, 그 지역 안에는 전부터 거주하던 사람과 이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오는 사람이나 및 새로 개간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사냥하는 등 일은 일체 금한다.”

6) 1951년 2월에 북한군은 소백산맥으로 남하하는 도중에 수원지인 지평리를 포위하고 점거하는 작전을 세웠다. 이를 도화선으로 한·미 연합군과 북한군 또는 중공군이 지평리에서 충돌하게 되고 전투를 벌였다. 같은 해 4월 중공군과 북한군이 합세하여 개시하는 제2차 춘세공세에서 중공군이 미 제9군단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군 제6사단과 마주하여 용문산에서 결전을 전개했다(용문면지발간위원회 2011: 343-344).

후, 양평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군사도시가 되었다. 1960년대에는 미군의 구매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부흥하고 인구 확장 및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1969년 일부 미군이 귀국함에 따라 군사도시로서의 경제성이 감축됐다(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2: 284).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며 아파트 단지 및 공업 단지 설립에 제한을 받게 되자 지역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업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양평군 정보화마을 중에서 이중계를 갖추는 화전마을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며, 화전마을에서 해방 전부터 자연마을을 단위로 하는 반계가 운영되어 왔으며 1960년대에 행정리를 단위로 하는 대동계가 출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화전마을이 1990년대에 양평군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로 선정된 이후 정보화마을사업, 생태정원마을 조성사업, ‘친환경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한 지역만들기’ 사업 등 일련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화전마을을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지로 판단했다.

대동계와 관련된 행위방식, 행정 체계의 작동과 그 결과물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검토한 끝에 물질, 사람과 정보의 이동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행위방식과 행위 결과물을 유추하는 방법을 채용했다. 또한 행위방식을 제한하는 규범, 의미, 가치 등의 요소가 드러나도록 마을사람들의 경험담과 공식 문서에 대한 담론 분석을 분석의 일환으로 추가했다. 본 조사는 2021년 4월에 시작하여 2022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크게 문헌 조사, 참여관찰과 면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각 도서관 및 문화원의 소장자료, 마을회관이나 주민 집에 소장된 대동계문서, 반계(班契)문서와 사진 등 서류를 수집·분석하였고, 기타 공공기관이 소장한 연구지 지역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그 중 대동계 분석의 기본 자료가 된 것은 1985~2021년도 대동계통문, 1987~2021년도 리중계 결산보고서이다. 조직의 공식 명칭이 1980년대 말

에 대동계에서 리중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서 쓰이는 조직 명칭은 통문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일상 대화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대동계’와 ‘리중계(이중계)’ 두 가지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동계의 조직 형태와 수지내역을 단서로 2021년 12월 ~ 2022년 3월 사이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마을 및 대동계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충했다. 면담은 세 갈래로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대동계와 반계 임원 혹은 이장을 역임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인터뷰였고, 두 번째 부분은 대동계와 반계 임원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인터뷰였다. 마을조직의 운영, 공동 노동과 여가 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이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주민 2명을 면담했고, 그 외 여성 놀이집단의 모임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식으로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다만 집단 구성원이 면담을 거부했으므로 소집단 인터뷰 및 개인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동계에 가입한 이주민 1명과 가입하지 않은 이주민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대동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성명	출생년도	성별	역임 내역
남SS	1923년생	여	
홍ST	1934년생	남	반장, 대동계 감사,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홍SH	1939년생	남	1983~1986년도 이장, 대동계 감사
조YD	1940년생	남	
이ZH	1940년생	남	반장
이HY	1941년생	남	
조YJ	1943년생	남	1987~1992년도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대동계 감사
신ZS	1948년생	남	반장, 게이트볼회장
홍SG	1951년생	남	
김SH	1959년생	여	부녀회장, 반장
함GZ	1964년생	남	2009~2014년도 이장
김GS	1967년생	남	
김ES	1968년생	남	2015~2020년도 이장
김HM	1985년생	여	

표 I -1 면담대상자 명단

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을 단위로 하는 못자리, 이앙 활동, 각 자연마을 주민이 동참하는 제초작업, 화투·게이트볼 놀이집단의 정기적 모임을 참여 관찰했다. 대동계 총회, 마을축제, 노인회 등 정기모임은 COVID-19 방역수칙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참여관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 2 장 연구 지역 개관

2.1 마을의 형성, 성장과 사는 사람

연구지로 선정된 화전2리(花田2里)는 양평군 용문면 소재지 남쪽으로 약 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원래 지평군 상서면 관내에 속했는데⁷⁾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양평군으로 통합되면서 양평군 관할 구역이 됐다. 18세기 말 작성된 『호구총수』와 『여지도서』에는 지평현 상서면에 위치한 마을을 화곡리(花谷里), 성천리(星天里), 진리(陣里) 이렇게 세 곳으로 지명한다. 그 중 화곡리가 바로 화전2리의 전신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 상서면과 하서면이 용문면⁸⁾으로 통합됐으며, 상서면에 속했던 궁촌리(宮村里), 신촌리(新村里), 여촌리(餘村里), 전곡리(田谷里)의 일부가 하나의 행정리로 편입되어 화전리라 명명됐다(越智唯七 1917: 120). 그 중 궁촌리, 신촌리와 여촌리는 화곡리에서 떨어져 나온 마을군에 해당하고, 전곡리는 전곡 역촌과 명칭이 같으나 전곡역촌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되 오히려 『지평현 여지도』에 표시된 ‘전곡장(田谷場)’과 그 위치가 겹쳐 18~19세기 전곡장 주변에 형성된 마을로 짐작된다.

궁촌리라는 이름은 궁에 계시던 분의 묘가 있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묘는 효종과 인선황후 사이의 차녀로 태어나 우위정(右議政) 홍중보(洪重普)의 아들인 홍득기(洪得箕)와 혼인하고 사망 후 홍득기와 합장된 숙안공주의 묘이다. 옛 지평군 화곡리는 남양

7) 고구려 때에는 지현현(砥峴縣)이었고, 신라 때 이름이 지평현(砥平縣)으로 고치어 삭주(朔州)의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 때에 광주로 속하게 했다. 조선 숙종 11년(1685)에 강상(綱常) 죄인 해옥(亥玉) 때문에 고을 없애고 양근군에 소속시켰다가 숙종 14년(1688)에 복구되었다. 현 화전2리가 소재하는 위치는 『여지도서』에서 화곡리로 표기되어 있으며 지평현 상서면에 속했다(이상식 역주, 『여지도서(3): 경기도』, 전주: 디자인흐름, 2009, p.261.).

8) 상서면과 하서면이라는 명칭은 과거 지평군 중심지인 군내면(郡內面)과의 상대위치에 근거하여 짓은 것이다. 용문면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용문산과 산에 있는 용문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홍씨 줄용공과 시조 홍성민(洪聖民)의 증손인 홍중보(1612~1671)가 매장된 이후 홍씨 일족의 세장지(世葬地)가 되었다. 정승모에 따르면, 조선 때 용인과 양근 지역은 풍수가 좋고 도성과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거족들에게 사후 안식처로서 각광을 받았다(정승모, 2010: 47). 화곡리는 지평-양근계와 가깝고 산으로 둘러싸였으며 물에 인접하여, 양근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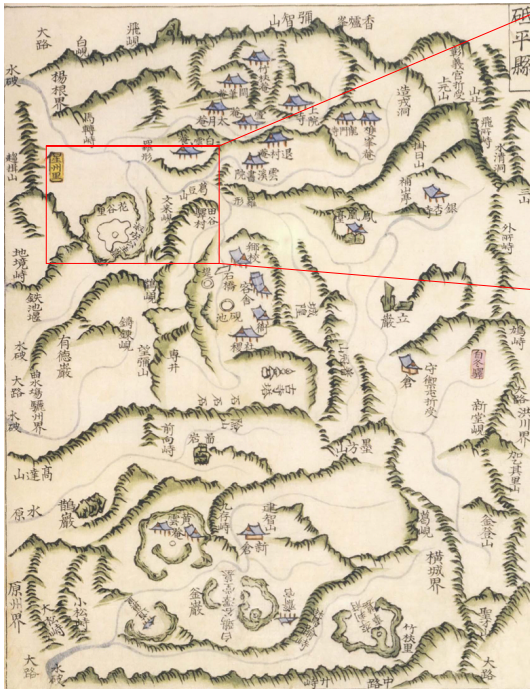


그림 II-1 『지평현 광역도』



그림 II-2 『지평현 여지도』(부분)

홍중보가 화곡리에 분묘와 종토를 두면서 남양홍씨 중의 일파는 화곡리에 정착한 뒤 오늘날까지 13대를 넘게 세거해 왔다. 관직의 인물을 배출하였고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어 마을에서 핵심성씨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후손을 훈학하기 위해 이종순(李宗淳)이라는 사람은 여주에서 화곡리로 이주하게 되어, 경주이씨 입향조가 되었다.

여촌리는 남안골이라는 한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름 그대로 산골짜기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여촌리에서는 남양홍씨보다 일찍 입향한 영월엄씨와 창녕조씨가 집거하고 있고 가구 수가 가장 많아다는 점을 얻

두에 두었을 때, 여촌리는 비교적으로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촌리는 한글 명칭으로 ‘새말’이라 하여 새롭게 나타난 마을임을 의미했다. 게다가 신촌리의 주요 성씨인 영산 신씨가 종산에서 모시는 조상은 9대조까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영산신씨가 다른 주요 성씨보다 늦게 입향했고 신촌리가 여촌리와 궁촌리보다 늦게 형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18년 지방지도에서 신촌리로 표시된 곳은 오늘날 동촌이라고 불린다. 동촌의 동은 동쪽 동이고, 신촌리와 기타 자연마을과의 상대적 위치를 가리킨다. 신촌에서 동촌으로의 명칭 변경은 신촌리가 궁촌·여촌·마장말과 하나의 마을군으로 포섭되며 밀접해졌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해도 자연마을 간의 연대가 아직 두텁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촌은 다른 마을과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다른 마을과 하나의 행정리로 통합된 후에도 상여계, 두레 그리고 놀이집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있었다.

구장제가 설치됐던 시절 여촌리가 한 구로, 궁촌리와 신촌리 소재지가 다른 한 구로 구획되었다. 구가 대개 50호 가구를 기준으로 설치된다(鈴木榮太郎 1973: 16)는 점에 착안하면, 일제시기 화전리의 호구 수는 100여 호 정도였고, 그 중의 절반이 여촌에 모여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보다 작은 단위인 반이 설치되면서 궁촌리가 남양홍씨 집성촌인 궁촌반과 경주이씨 중심의 마장반으로 나누어지고 궁촌리가 두 개의 자연마을로 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시 화전리가 소재하는 양평군은 접전지대가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화전리는 교전지역이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자가 많은 마을로 와전되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 1950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지속된 양민학살에서 화전리 주민 13명이 피살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존 주민의 구전으로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피살당한 자가 20~30명에 달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피난이나 인명 피해로 인해 마을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농지가 충분히 이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외지로부터 소작하는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⁹⁾. 그러나

지리적 조건으로 경지 총 면적이 제한되어 있던 까닭에, 이 시기에 유입된 이주민은 많지 않았고 원주민 위주의 국면이 유지되었다. 특히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가 전쟁 전후에 소작농으로서 입향한 경우에 해당된 면담참여자 3명은 자연마을 이름이나 변두리에서 거주했는데, 그 점을 감안했을 때 당시 이주자들이 마을생활에서 주변적인 지위에 속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손자대가 마을 이장 선거에 나서고 마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의 지주-소작 관계와 신분관계는 농지개혁 이후 동요했다. 마을에서 역사가 오래된 성씨들은 영월엄씨와 창녕조씨, 남양홍씨와 경주이씨였지만, 양반 계층으로 취급받던 성씨는 관직자를 배출하고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었던 남양홍씨 집안뿐이었다. 남양홍씨는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큰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상류 성씨였다. 다만 면담에 참여한 남양홍씨 족인의 구술에 따르면 1930년대에 이르러 남양홍씨 집안에 대지주와 소작농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던 만큼 종종 내 빈부 분화가 심했다고 한다. 『농지분배부』를 살펴보면, 농지개혁 전에는 대부분 농지가 홍씨, 김씨, 이씨와 양씨 등 집안의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었다. 남양홍씨와 경주이씨가 유력 성씨로 자리하고 있는 동시에 경주김씨가 새로운 유력 성씨로서 성장했다는 현상이 확인된다.

성씨	홍씨	김씨	이씨	양씨
농지 면적(평)	22003	18456	18331	14298

표 II-1 농지개혁 전 각 성씨 소유 농지 면적

(이 표는 『농지분배부』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각 소유자의 본관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농지 면적을 계산한다. 따라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 소유 상황 개략만 반영한다.)

9) “할아버지 때는 저 지평 단월면에 살아오셨고 6.25 사변 난 이후에 내가 13살 먹어서 여기 왔어, 우리 아버지가. 먹고살기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는. 그냥 이불 보따리 하나 지고 그냥 여기로 온 거야. 여기서 그때는 일손이 없고 다 못하니까 논을 빌려주는 거지, 소작으로. 남의 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마지(기)에 열 가마가 낫다. 그러면 다섯 가마 내가 먹고 다섯 가마 땅 임자 주고.”(이ZH, 1940년생)

경주김씨는 20세기 초반에 입향한 성씨이고 김DH라는 사람이 용문면 면장까지 올라갔음을 미루어보아 화전리에서 높은 명망을 누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마을에는 종토를 깔지 않았고 자손들 중에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양씨는 화전리와 인접한 삼성리에 거주한 재지사족이었다. 『분배농지부』에서 등록된 피보상자 중 천 평 이상 농지를 소유했던 사람을 추출해 보면, 양씨처럼 화전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나 서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화전리 내의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전리 거주		인근 지역 거주		서울과 기타 지역 거주	
홍WP	12690	이ZJ(덕촌리)	8518	문JY(서울)	9249
홍ZP	4311	양DS(삼성리)	4047	김CG(서울)	6167
신ZY	1183	이JH(곡수리)	3889	임BO(서울)	5417
김씨중중	1118	양JY(삼성리)	3335	안YG(서울)	3500
		홍SE(지평)	2989	이KM(서울)	1837
		안DH(지평)	2874	김JS(서울)	1751
		김YO(다문리)	2650	장KY(서울)	1279
		양JH(삼성리)	2524	김DA(충주)	1051
		김CG(여주)	1822		
		양SH(삼성리)	1728		
		원SS(삼성리)	1216		

표 II-2 농지개혁 전 천 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거주지별로)¹⁰⁾

홍씨		이씨		김씨		조씨		신씨	
홍BP	1963	이GI	1718	김GS	2527	조ZH	1337	신IP	1183
홍ST	2004	이MA	1443	김GS	1002	조CB	1135	신YD	3659
홍SH	2555	이BB	1155	김GJ	1735			신YS	1970
홍YG	1779	이ZB	1182	김DU	1641			신YT	1889
		이ZS	1467	김DS	1421			신IT	1475
		이ZC	1397	김BR	1001				
				김BY	2979				
				김SY	1148				
				김SS	1591				
				김SO	2351				
				김SH	2157				
				김SJ	1543				

표 II-3 농지개혁 후 천 평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성씨별)

10) 국가기록원, 「분배농지부(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1950. 참고

홍씨	이씨	김씨	조씨	신씨	엄씨
9559	11132	22746	2445	12487	4067

표 II-4 농지개혁 후 주요 성씨 농지소유 상황

농지개혁 이후 남양홍씨와 경주이씨의 소유농지는 감소한 반면 영월신씨와 영월엄씨가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남양홍씨와 경주이씨의 경제적 실력이 약화되었음을 암시할 뿐 아니라, 농지개혁 이전 신씨와 엄씨 집안에 소작농이 많았다는 사실도 짐작케 한다. 농지개혁은 소작인이 5년 동안 농산물을 상환함으로써 지주에게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외지로 이주해 간 구성원이 많고 소작농이 비교적 적은 남양홍씨의 경우 농지개혁에서 분배받는 농지가 많지 않았다. 소유권 재분배와 이촌향도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력 성씨였던 남양홍씨는 경제적으로 실권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다른 성씨들과 유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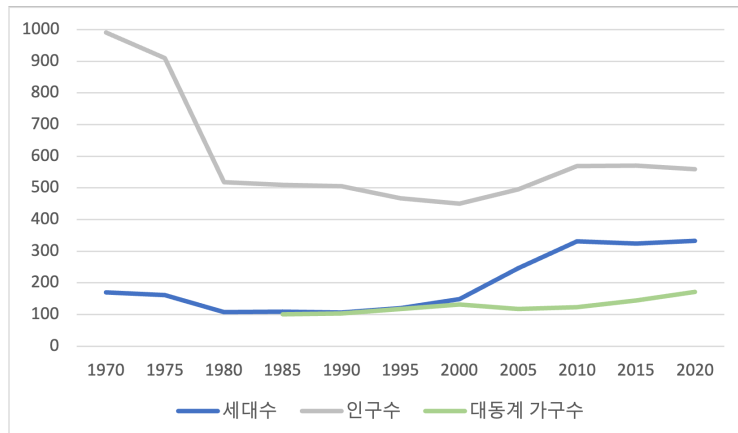


그림 II-3 1970년대 이래 화전2리 세대수 및 인구수 또한 대동계 가구수 추이
(데이터 출처: 해당 연도 『양평군 통계연보』 및 대동계통문)

전후 지방행정체제의 재정비에 따라 전곡리는 1955년에 화전1리로 분리돼 나갔고 여촌, 궁촌, 마장말과 동촌은 화전2리로 통합됐다. 화전1리와 화전2리는 1958년~1961년 간 몇 년 동안 통합되었으나 1961년 다시 분구하여(용문면지발간위원회 2011: 522) 오늘날까지 독자적인 행정리를

이루어왔다. 1970년대 화전2리는 한국의 대부분 마을과 비슷하게 이촌향도 현상을 겪어 세대와 인구가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도시에서 귀촌해 퇴직 생활이나 요양생활을 보내는 경향이 1990년대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정점에 올랐음에 따라, 마을 인구수와 세대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귀촌의 특성으로 귀촌 가구가 2인 가구를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세대수는 인구수보다 그 증가율이 배로 높았다.

2000년대에 와서 두드러진 인구 증가는 화전2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평군 전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수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에 생애 도시라는 지역 이미지가 더해져,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현직자들에게 은퇴지 및 휴양지로서 선호되었고 전원주택 및 주말주택의 증가와 함께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었다. 특히 서울과 가깝고 남한강을 마주하는 서부 지역은 중부 및 동부의 산간지역보다 더 빠른 개발과 이주민의 유입을 경험했다. 화전2리는 양평군 중부의 산간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개발될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이라, 양평군 범위 및 용문면 지역에서 이주민 비율이 적은 마을에 해당한다. 1995년에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분지 가운데의 대부분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택지로 활용될 수 없었으므로, 2000년대에 몰려든 이주민들은 주로 도로 주변 및 등골 같은 가장자리에 집터를 잡거나 전출한 선주민에게서 택지를 인계받아 기존의 취락에 거주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취락 형태가 보존된, 분지 동남쪽으로 떨어진 등골이라는 산골에서 이주민 위주의 자연마을로 분화되어나갔다.

표 II-5 지명 추이 및 집거 양상

『여지도서』	『신구대조 부군면리동 명칭일람』	조선전도	식민지 말기	해방 이후	주요 성씨
화곡리	궁촌리	1구	궁촌	궁촌	남양홍씨
			마장말	마장말	경주이씨
	신촌리		동촌	동촌	영산신씨
	여촌리	2구	여촌	여촌	영월엄씨 창녕조씨

				등골(1990년대 여 촌에서 갈려 나옴)	
--	--	--	--	---------------------------	--

등골마을을 제외한 기타 자연마을의 인구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II-2에서 인구 증가세나 감소세가 나타나는 시점을 세로축으로 하여 대동계 가입 가구의 성씨 구성 변화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마을에 정착한 지 오래되어 12~16대 정도 이어져 온 남양홍씨, 경주이씨, 창녕조씨, 영월엄씨, 영산신씨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고(여촌 부분에서는 식민지시기에야 마을에 들어왔으나 남양홍씨에 버금가는 대지주 집안이 된 경주김씨를 추가로 표시함) 그 외의 성씨들을 아울러 '기타'로 포함시켜 세대수 별 통계비를 산출했다. 일단 주요성씨가 전체 세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이주민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각 자연마을이 불가피하게 각성촌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85년 대동계통문에서 이씨 17명, 엄씨 11명, 조씨 10명, 신씨 9명, 홍씨 8명으로 각각 나오는 것과 대조해 보면, 주요성씨들은 대부분이 전출로 인한 세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양홍씨 같은 경우, 이촌한 죽인이 귀촌해서 총 세대수가 다시 늘어난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자연마을	성씨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궁촌	홍씨/소계	6/15	6/15	4/20	7/25
	조씨	1	1	1	0
	김씨	4	3	3	5
	신씨	2	3	1	1
	기타	2	2	10	12
마장말	이씨/소계	7/21	8/26	8/26	6/34
	홍씨	1	1	0	2
	엄씨	1	1	1	2
	신씨	1	1	1	2
	기타	11	15	16	22
여촌	엄씨/소계	11/43	11/40	6/43	4/57
	조씨	9	6	6	6
	김씨	9	4	5	4 ¹¹⁾
	홍씨	2	1	2	3
	신씨	1	1	2	2
	기타	11	17	22	38

동촌	신씨/소계	5/12	4/15	6/22	5/31
	이씨	4	4	5	6
	기타	3	7	11	20

표 II-6 대동계 계원 구성 변화(자연마을별)

이주민의 유입과 자연마을의 각성촌화가 일어났음에도, 주요성씨 출신 집안들과 20세기 새롭게 들어온 가구들 사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은 해체되지 않았음을 대동계와 놀이집단의 존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을 총 인구수가 배로 올라가고 대동계 참여 가구의 수도 소폭 증가했으나, 대동계와 마을 공동행사의 참여자는 여전히 21세기 전에 정착한 인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2 자연과 사회 민속

등골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화전2리는 산간분지에 자리를 잡고 산림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었다. 분지의 중앙은 논밭과 취락으로 개간되었고, 서남쪽 산골과 동남쪽 산골에서 흘러나온 개울이 여촌과 궁촌 사이와 궁촌과 동촌 사이로 경계선을 가르며 북쪽으로 흐른다. 자연이 사람들의 생활을 구성한다는 환경결정론에 착안하여, 이 절에서는 자연물을 계기로 사람들이 생업 영위와 생필품 마련 과정에서 맺은 관계를 추적해보았다.

-산림

11) 이 표는 해당 연도 대동계통문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대동계통문에서 본까지 표시하지 않아서 주요성씨 세대수의 수치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씨와 김씨는 흔히 보이는 성씨라서 본이 다른 성씨를 하나로 묶어서 오산한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가구주가 김씨인 가구의 경우, 대동계통문에서 14집으로 나오지만, 경주김씨 족인에 따르면 현재 마을에서 거주하는 경주김씨 집안이 네 가구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여기서 대동계통문 대신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을 참고해서 수치를 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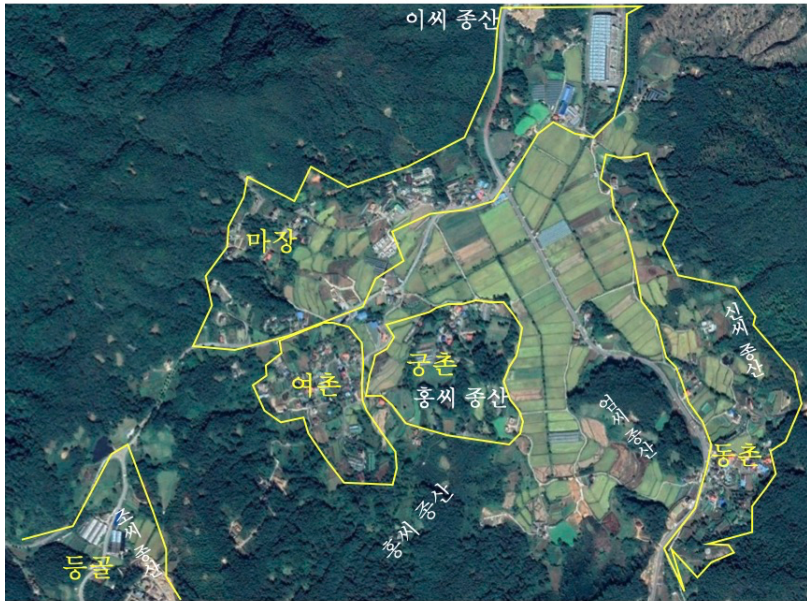


그림 II-4 연구지 마을 지도(2019년도 기준, 출처: Google Earth)

산림은 조상의 묘소가 모셔진 신성한 공간이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연료, 사료와 퇴비 원료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마을 주변의 임야는 홍씨·이씨·엄씨·조씨 종중, 개인, 화전2리 전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소유·관리하고 있다. 그 중에 홍씨종중은 최대 산림의 소유자이다. 산림소유권에 관하여 남양홍씨 족인은 “숙안공주를 여기다 모시면서 이 화전리가 다 너 거다. 이렇게 한 모양이야. 우리 집 안 거다 관리를 해라, 공가가”(홍SH, 1939년생)라고 설명했는데, 조선후기 산림정책과 대조해 보면 남양홍씨의 산림소유권이 분묘지와 부속 산림을 금양이라는 이름으로 점유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확대된 산림 사점은 주로 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절수제도에 의한 영아문과 궁방의 사점, 입안과 분산(墳山)의 금양지 제도를 활용한 양반층의 사점, 그리고 일반 인민이 매득을 통한 사점(배재수 외, 2002: 13)이 그에 해당한다. 특히 분묘지와 부속 산림을 사점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경작과 분묘를 금지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나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졌다(ibid: 19). 땔감을 연료로 하던 시절

에, 남양홍씨는 선산을 제외한 산림에 대한, 연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마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허가해 주었다. 산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대가로 남양홍씨 선산에 있는 묘들에 대한 별초를 해주어야 했다. 국가의 산림정책과 마을 의식주 민속과 생업민속 등이, 공동의 별초 작업을 통해 양반 집안과의 산림 사용 권리를 교환해 온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와서 성장한 행정체계와 법체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산림을 비롯한 자연세계를 관리 대상으로 포섭시켰다. 이와 동시에 임목을 별채하고 가공·유통·판매시키는 임업도 발전됐다.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 사회 민속과 맞닿게 된 체계 행위는 산림세 부과와 분수조림의 시행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는 소유권, 산림과 관련된 행위의 합법성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통해, 산림을 가용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종중이나 마을은 산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화전2리의 경우, 마을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에 부과된 세금은 대동계 자금으로 충당되고,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한 세금은 종중계를 통해 조달된다.

분수조림은 산림이 급격히 황폐화된 동시에 목재 및 땀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됐다. 행정체계는 식목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산림 소유주와 작업집단 사이에 나누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력·자금이 부족한 조건 하에 지역사회 주민과 임업 업체를 동원시켰다. 화전2리에서 분수조림을 실시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행정적이거나 비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공동작업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식림과 별채를 감행했고, 목재 수확 시 얻은 수익을 마을 공유재산으로 삼아 이를 기금으로 대동계를 중수했다. 그 상세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산림이 마을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들어온 방식은 연료의 종류와 취득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별초 작업을 통해 산림 이용권을 확보하면서 형성된 개별 세계들의 연결 또한 다른 형식의 연결로 대체됐다. 연료가 땀감에서 연탄으로, 다시 기름으로 바뀐 데다가 공동구입·배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반이라는 조직 단위의 이장 및 반장들로 구성된 임원

진이 마을 내 각 가호들을 연결시키고 정보와 물자를 전달하는 식으로 조직망이 확장됐다. 개별 구매가 가능해진 후, 취사와 난방에 소요된 연료들은 주로 개인이 주유소나 회사에 주문하여 배달받는 방식으로 구입·배급되었고, 행정리와 반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논밭

산림처럼 마을의 절반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는 논밭으로 개간된 땅이다. 김매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성한 두레 조직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속되고 있었다. 두레는 궁촌과 마장말이 공동으로 하고 여촌과 동촌이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식으로 조직됐다. 궁촌과 마장말은 일제말기에 두 개 반으로 나누어져 분화되었으나 연대를 끊지 않았다. 일 년의 김매기가 다 끝난 뒤, 궁촌 뒷동산의 은행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며 큰 잔치를 벌였다. 놀이집단은 작업집단보다 규모가 크고 동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자연마을에 한했다. 여기서 말단행정단위보다는 지리적 인접성과 주요 성씨들 간의 친밀성이 공동 노동이나 공동 놀이 집단을 결성하게 된 주요 동인으로 짐작된다.

사례 II-1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동 노동 및 공동 놀이

“두레패들이 논에 모심고 노래를 하고, 그때는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팽과 리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호미씻어라고 한다고. 논을 다 땀으니까 이제 시간이 나니까 천엽이라는 게 있어...(중략)...돼지 잡아서 뭐 떡도 해가지고 같이 먹고 놀고 그랬지. 마을마다 모여서, 이 은행나무로 다 모였어. 저쪽에서 이 두레패가 깃대를 들고 와, 사물놀이 하면서. 그럼 여기서 뭐 가지고 인사하고. 마당이 그전에 넓었었지, 은행나무 앞에. 그리고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선풍기가 없으니까 그들이 제일 두껍게, 그들이 겹겹이 있으니까 시원하잖아. 사 동네에서 다 이로 놀러 오더라, 낮에는. 점심을 먹고 쉴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한참 쉬었다가 일대로 나가고 그랬어...(중략)...아니 (동촌)저쪽 사람들은 저쪽에서 놀았고. 저 동촌이라는 데 좀 떨어졌어. 참, 한참 올라가야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

는 따로 그냥.” (홍SG, 1951년생)

“6,70년대 그때는 모내기 그런 거 끝나고서 천엽이라고 그러지, 천엽. 그거 하루 노래하는 거야. 동네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뭐 돼지 잡고 그래서 하루 놀았지. 농약이 있잖아. 악기는 상여하고 창고에다 보관했었어.” (이ZH, 1940년생)

더욱 흥미로운 것은 놀이집단의 경계가 의례조직의 경계와 동일했다는 점이다. 궁촌, 마장말과 여촌 사람들은 상여를 공동으로 소유·사용하고 서로 메어주었고 동촌은 그 나름의 의례조직을 결성했다. 의례와 놀이용구를 보관하는 곳집도 두 군데로 나뉘어져 마장, 궁촌과 여촌의 접경지대 또는 동촌에 각각 배정됐다¹²⁾.

농업생산과 관련해, 자연마을 차원을 초월하는 연대는 주로 여가와 놀이 영역에서 드러난다. 구체적으로는 놀이용구에 대한 공동소유, 두레패들 간의 노래 시합과 음식 나누기 등이 그것이다. 연구지 마을에서 천엽, 호미씻어, 초연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행사는 원래 대농이나 지주가 주관하여 고생한 머슴과 농군들을 위로하는 마당이었는데, 지주 소유농지가 여러 자연마을에 분포하였으니 자연마을의 경계를 넘는 놀이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 전후 천엽 참여 양상의 변화에 관한 자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소작 관계의 해체가 놀이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60~70년대 천엽을 행하는 비용이 전체 참여자들에 의해 각출되었다는 것뿐이다.

12) 동촌은 농업생산·여가놀이·상례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자연마을과 분리된 양상을 갖추었다. 이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한다. 동촌은 비교적으로 늦게 개발된 지역으로서 화전2리 외곽에 위치한다. 궁촌과 논밭, 작은 산과 개울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주요한 성씨들의 입향 시기를 보면, 동촌에 주요 성씨인 영산신씨는 다른 성씨와 비해 조상묘의 수가 적어서 늦게 입향한 편이었다. 또한 농지개혁 이후 신씨 집안들이 소유하는 논밭의 총 면적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농지개혁 이전 신씨 집안에서 소작농 출신한 자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놀이공동체와 상여계의 경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보면, 노동을 교환하는 집단의 범위는 놀이공동체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두레패의 규모는 실제 놀이공동체의 규모보다 작고 자연마을을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성씨 사이에 친한 관계가 맺혀 있고 마을 세대수가 적은 궁촌과 마장말의 경우에만 두레를 같이 한다. 두레패의 규모가 노동교환 집단의 범위와 다른 까닭은 다른 제한요소(예를 들면, 농지규모 영세화가 인력 수요에 가하는 상한선 등)의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화전2리의 농지는 주로 분지와 경사도가 낮은 비탈에 위치하여 그 면적이 제한적이다. 농지개혁 후 농지 규모가 더 영세해져서, 마을에서 농업 규모화를 이루기 어려워지면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 영농이 주된 영농형태로 유지돼 왔다. 마을과 도시의 상대적 위치와 농기계의 보급도 가족 영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경기도 농촌이 대도시와 가까워, 도시로 이주한 자녀 세대가 고향을 다녀오기 용이해졌다. 게다가 이앙기, 경운기와 콤팩트 등 농기계의 보급은 생산효율을 높여 노동시간을 감축했기에, 자녀와 손자들이 주말에 귀향해 일손을 돕는 식으로 농사를 거둬주는 영농이 정착했다.

농기계 보급 과정에서 농작물 재배에 수반된 공동 노동과 공동 놀이는 1970~1980년대 경에 사라졌고, 대신 농기계 임대が登場했다. 농기계 임대는 경작 평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개별농가 사이에서 진행됨으로 종전의 농업 협동 관습과 구별된다. 노동집약적인 농업생산을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동이나 노동 교환 관습이 소멸된 이후에도, 자연세계는 여전히 농가와 농가를 연결시키는 매개로 작용해왔다. 이앙기의 사용은 노동 교환의 필요성을 축소시킨 동시에 모판으로 벼모를 키우는 방식을 도입했다. 영농 규모가 비교적 큰 탓에 자동 파종기를 구입한 뒤 자가에서 모판을 만드는 개별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가들은 농지 평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모판 수를 가늠하여 농협에 주문했다. 모의 성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모판의 수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모판이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개별

농사들 사이에 모판을 주고받는 행위방식이 형성됐다.



그림 II-5 다른 농가에서 받은 모판으로 이양함
©류핑핑



그림 II-6 남아서 없어진 모판
©류핑핑

새로운 농업기술은 생산조건을 개선한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자연적 요소와 만나서 새로운 연대 방식을 낳았다.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의 사용이 농기계 보급처럼 인력 수요를 줄여 공동 노동이나 노동 교환 관습을 흔들었음에도, 빗물이나 관개용수의 흐름으로 인근 논밭을 오염시킬 가능성으로 인해 논밭이 인접한 농가들을 연결시켰다. 물에 의한 연대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조 및 추진을 계기로 증대됐다. 1990년대 후반 양평군이 친환경농법을 보급시키기를 시작했을 때, 농가들은 농약과 비료 잔류물을 사용할 시 인근 논밭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농법을 택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시범마을로 선정된 것은 생산방식 변화, 농업소득 증가, 유기농식품 가공공장의 정착 등의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화전2리로 하여금 정보화마을사업,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 행복한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농간 자매결연 프로젝트, 1사1촌운동 등 일련의 농촌진흥사업에 가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서 체험 프로젝트와 마을축제¹³⁾가 계획됐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

13) 마을축제에 대한 계획은 양평군이 랜드마크인 용문산을 장소로 하여 소위 '명품 축제'를 조성하고 행정리 주최의 향토마을축제를 장려하는 군정시책을 배경으로

선, 체험농장과 싸이클장은 마을 주도로 연선에 생겼다. 적극적인 상버 참여는 대동계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은 대동계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재산으로 들어왔고, 사업 이행 시 필요한 자금은 대동계를 통해 조달됐다. 농촌진흥사업과 대동계의 연관에 대해 IV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화전2리를 개발사업에 맡겨둘게 한 친환경농업은 최근 몇 년 들어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농가 노령화와 정부 보조금의 감소로 인해 친환경농법에서 관행농법으로 다시 바꾸는 농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농법은 관행농법보다 제초작업이 무거워, 고령에 들어 신체적으로 취약해진 대부분 농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물

1974년 전기가 통하기 전 마을사람들은 개울물, 샘물, 빗물과 우물물에 많이 의지했다. 샘이나 공동우물의 물을 마셨고 개울물로 빨래를 했으며, 빗물과 개울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 중 공동우물은 공유재산으로 취급되어 망가질 때 부역을 통해서 수선하였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지하수를 펌프와 관정으로 퍼 올리는 것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주요 방식이 되었다.

사례 II-2 생활용수의 확보

“여기가 자가로, 옛날에 펌프 이런 걸로 먹다가 이게 오염돼서 좀 위험하다 이래서 지하상수도를 각 동네 꼭대기 산에다 이제 군에서 해줘가지고 그걸로다가 한 20년 먹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오염이라고 그것도 안 좋

한다. 향토문화·생활체육·예술을 활성화하려는 방침은 일찍이 20세기 후반에 제기됐다. 그러나 1999년 이래 그 중점이 향토문화 보전에서 관광개발로 변했다는 새로운 경향은 나타난다(지방의회발전연구원, 『민선 양평군정 20년사:1995-2018』, 참고). 향토문화·생활체육·예술 자체의 발전 대신에 테마마을 조성, 축제 추진, 지역 특산품 및 체육 행사를 통한 지역 이미지 형성 및 관광객 유치에 최종의 목적이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평군은 마을축제와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 2000년대 중반 이래 군내 각종 축제의 수가 늘어났다.

다 아래가지고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먹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상수도 이제 요금 나오니까 노인분들이 돈 나가는 게 좀 그러니까 옛날 걸로 먹는 집들도 몇 집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 안쪽으로.”(김SH, 1959년생)

“나처럼 집을 짓고 오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파려고 그러면 좀 많이 들어, 한 400만원 이렇게 들어. 우물이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 쓰는 마을 상수도라고 있어.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조건으로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150만원 돈을 낸다고. 마을 상수도는 내 오기 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저 위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모아놨다가 내려 보내는 거지.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 원. 그다음에 물을 쓸 때마다 1톤당 그 당시에 100원이었어. 엄청 싼 거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야. 군에서 운영하는 진짜 상수도로 다시 바뀌었어. 그 대신 물값이 비싸. 기본 1200원에다가 1톤당 900원 정도 돼.” (김GS, 1967년생)

그러나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양평군이 상수원의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됐음에 따라, 양평군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추진하기가 시작했다. 화전2리에는 자연마을 별로 공공 양수·저수·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수원을 공용하는 집단이 다시 형성됐다. 공동수원에 대한 용익권은 이주민으로 하여금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몇 년 전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공용급수설비가 파기됐다. 생활용수의 확보는 개별수도세를 납부하거나 자가용 펌프로 지하수를 퍼 올리는 등 개별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3 신앙과 사회 민속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주목받는 문화 현상은 두레, 품앗

이, 계 등 협동 관습을 제외하고 또 동제, 산신제 등 신앙적 부분이 있다. 여기서 화전2리에서 행해졌다든가 행해지고 있는 시제, 산신제, 은행나무 고사와 성황당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그들을 기반으로 개별 세계들이 중첩될 가능성 또는 중첩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마을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제사는 시제이다. 조선 중후기에 입학한 남양홍씨, 경주이씨, 영월엄씨, 창녕조씨와 영산신씨 다섯 성씨는 음력 10월에 선산에서 시제를 지낸다. 남양홍씨 시제의 경우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숙안공주와 부마 홍득기의 합작묘 그리고 입향조 홍중보와 부인의 합작묘만 모시고 있는 작은 산에서 진행되며 외부인 관람이 가능하다. 시제는 마을 차원의 연대보다는 문중 차원의 통합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지역에서 마을제사로 치러진 산신제의 경우, 화전2리에서는 시제를 지내기 전 산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이행돼 왔다. 이처럼 종종 중심의 시제가 마을제사 대신에 마을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현상은 주자학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고 여러 문중이 병존하고 있는 화전2리의 특징과 연관된다. 가뭄 때 비 오기를 빌던 기우제는 남양홍씨 집안 어른에 의해 주관되고 참석자가 재관에 한정된다는 유교식 제사의 경향을 반영한다.

사례 II-3 시제와 산신제

“시제를 지낼 때 어느 집안이고 산신이 있어 산에, 거기다가 제를 올리는 거야. 산신을 먼저 지내고 선 산신 후 조상.” (조YJ, 1943년생)

사례 II-4 농사와 관련된 제사나 고사

“그러니까 금년도 농사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가서 고사 지내고 천엽이라고 하거든...(중략)...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거든. 비가 안 오면 저 은행나무 뒤쪽으로 올라가서 큰 바위가 있는 데 거기 가서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어. 바위하고 조금 떨어진 데에는 샘물이 있었어. 그 물을 떠다 놓고 떡 놓고 빌고 쌀 좀 갖다놓고 그래. 그 후로는 전기가 들어오면서는 기우제 그런 걸 없어졌어...(중략)...우리네 늙은이들이 모여서 이거 다 했지, 다는 안 갔지.” (홍SG, 1951년생)

성씨의 경계 내지 자연마을의 경계를 넘어 여러 가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신앙은 성황신앙이 있었다. 1980년대 도로가 포장되기 전까지 분지를 출입하는 세 입구에 성황당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화전2리에 있던 성황당은 엄나무 아래 누석단을 쌓아올린 식으로 만들어지고 지나간 행인들이 소원을 빌거나 개별 농가들이 무당을 불러와서 굿을 하는 곳이었을 뿐, 마을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은행나무를 신성시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사도 동네 전체의 행사보다는 남양홍씨 집안의 만며느리가 맡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집안 내부의 의례에 가깝다.

사례 II-5 은행나무 고사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썼고, 저 은행나무 고사를 우리 할머니만 정성을 들여 촛불 켜놓고 떡도 놓고 빌고. 그거는 조상님들한테 고맙다고 후손들한테 자손들한테 잘해달라는 그런 고사를 지냈어. (연구자: 이것도 농사와 관련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 집안 자손들 잘해 달라는, 조상님한테 인사드리는 거.” (홍SG, 1951년생)

“오래 묵은 나무이니까. 천 년이 되는지 몇 년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중략)...우리 시어머님이 계실 때 같이 해 내려오다가 이제 돌아가실 건데, 며느리하고 같이 해놓고.”(남SS, 1923년생)

(은행나무 고사)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저쪽으로 했는지 그 소리는 못 들었어.” (이ZH, 1940년생)

궁촌 뒷동산의 은행나무는 남양홍씨 집안에게 신성시된 대상이자, 다른 자연마을의 사람들에게는 노래를 하고 잔치를 베풀던 천엽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 모내기철이 끝날 무렵에 행해진 천엽은 마을사람들이 동참하는 축제성 행사였다. 남양홍씨 후손인 면담참여자에 따르면 천엽은 한해 농사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고사의 성격도 있다고 했지만, 마장말에서 거주하고 소작을 했던 이ZH에 따르면 천엽은 “동네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돼지 잡고 하루 놀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두 사람의 서술은 차이를 나타내지만, 축제란 표현의 어원이 제관인 축(祝)

이 제를 올리는 데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서술은 모두 천엽의 공동제사적 성격을 알려준다.

화전2리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종중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혈연관계 및 고분관계에 의해 전승되거나 개인이 사사로이 치르는 식으로 행했다는 특징이 보이고, 양반계층이자 지주 계층이었던 남양홍씨가 농경의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드러난다. 이때에는 신앙에 의한 자연적 연대는 개별 세계의 시공간 중첩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징체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가깝다. 마을사람들이 같은 시공간에서 초월세계와 생활세계의 접점을 경험하는 현상은 천엽 때에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지속된 천엽이라도 행정리 단위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궁촌, 마장말과 여촌 세 자연마을에만 한했다. 동촌까지 포함하는 모든 자연마을들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회 민속은 20세기 후반 결성된 대동계로 짐작된다.

제 3 장 행정 체계화와 대동계 설립

3.1 행정 체계의 성장에 따라 발현된 마을

1) 나라-마을-인간에 관통했던 행정적 질서

한국전쟁 이후 설립된 화전2리 대동계를 조선시대 동계와 대조해 보면, 지리적 범위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관리자가 교화적인 존위(尊位)에서 행정적인 이장으로 바뀌었고 조직 기능도 축소되었다. 1950년대 이전 연구지역 마을조직 상황에 대한 문서 및 면담 자료가 결여되어, 기타 지역 동계에 대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근거로 조선후기~식민지시기 동계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연마을 단위의 동계·촌계 특히 기층민의 촌계가 거의 문서를 남지 않기 때문에, 현존의 동계 문서는 재지사족의 주도 하에 만들어져 상하 동민을 결속하던 동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연구지역과 근접한 양평군 양서면 곡수리 일대에서 발굴된 대야동 문서¹⁴⁾를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조선후기의 대야동은 6~7개 리(里)로 구성되는 생활권이였다. 대야동계는 처음에 동내 사족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었고, 1878년에 유학 강한철에 의해 중수되어 ‘물론존비(勿論尊卑)’라는 상하함계 형태로 개편되었다. 중수 시 작성된 「동내입의계서(洞內立議契序)」에 따르면, 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고 옛날부터 내려온 규칙을 지키며 인간으로서의 큰일을 위하는 것은 동계를 중수하는 이유라 기록된다¹⁵⁾. 이은 「입의(立議)」에서는 동계 임원의 구성 및 임무, 계원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규칙과 상벌제도 등이 소개되고, 계급·친족·이웃 따위 인간관계의 법칙과 사별·화재·도난·질병 등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법을 중심으로 규정짓는다¹⁶⁾. 단체 행위의 질서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행정적

14)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이트(<http://archive.history.go.kr>) “경기 양평 양서면 대야동회 소장 지역사 수집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15) 『座目』 「洞內立議契序」(1878): “於戲洞內上下契者，國家流傳之古規也。蓋人之大事非眾難濟，而事之重大，莫如喪葬”

질서를 요약하자면, 인간이 관계나 위치에 따라 취해야 하는 태도 및 행위방식을 규정하는 인륜에 가까운 것이라고 개괄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질서가 국가, 마을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나라나 마을이나 개별 인간을 다스리는 데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다만 규약에는 ‘죄가 심한 자(罪重大者)’와 품행이 ‘유달리 아름다운 자(尤美者)’자를 관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구절¹⁷⁾이 있어, 죄와 덕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벌을 주관하는 주체가 달라질 뿐이었을 것이다. 대야동 문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향약을 본받아 만든 동약에는 조세 납부와 관령(官令)의 지킴이 덕행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양근 지역과 같이 경기도 광주부 관할에 속했던 경안면에서 발굴된 이리동약(二里洞約)의 경우는, ‘조부의 철저한 이행(謹租賦)’을 행위규범에 포함시켰고 ‘약헌(約憲)을 따르도록 하면, 장차 고장의 선인(善人)이 되고 나라의 양민(良民)이 될 것이니’¹⁸⁾라고 밝혔다. 이 시기에 국가적 행정과 마을 행정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양식 및 관계 양상을 규정하는 질서에 관통된 것으로 보였다.

행정적 질서는 물론 이 질서를 마을 사회에서 실현하도록 강요와 온갖 활동을 펼치는 행정조직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조선후기 양근 대야동의 사회 양상을 예로 들어보자. 중수 후의 대야동계는 상·하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상·하계에서 각각 계장, 공사와 유사를 설치하고 하계에서 보조적인 조사(助使), 하소임(下所任)과 장무(掌務)를 추가로 두었다. 동계 임원의 임무는 상·장사(喪·葬事)를 비롯한 큰일과 어려움을 당한 집안을 공동으로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인원 동원과 정보 제공 및 전달, 공유재산 관리를 위주로 했다¹⁹⁾. 다른 동계·동약 문서에서 흔히

16) 『座目』 「立議」(1878): “春秋講信 (중략) 契中喪出 (중략) 葬時 (중략) 上下契員中如有火患盜賊意外之變 (중략) 若有疫患染疾 (중략) 如以少凌長, 以長壓少, 以下慢上, 以上抑下者 (중략) 如有孝悌忠信 (중략) 隣里不和...”

17) 『座目』 「立議」(1878): “或有淫風惡行不孝不悌竊盜劫奸等事, 罪重大者, 則各別呈官處置事, 如有孝悌忠信見稱於洞內者, 則春秋講信時, 各別褒獎而禮遇之為遣, 其中尤美者, 各別報官旌表事.”

18) 「洞會文」(1757): “一遵約憲法, 則為鄉之善人而國之良民”(원문은 한국고문서자료관 소장 “광주부경안면이리동약”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

19) 『座目』 「立議」(1878): “上下契員中契長各一二人外, 擇定公事員一人, 有司二人, 下

최고책임자로서 등장하는 집강(執綱, 일명 존위)은 대야동계 「입의」에서 나오지 않았고, 1881년 관부에 올린 「대야동 대소민인등 등장」, 1884년에 작성된 「대야동 오가작통」 그리고 1883~1903년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야동 동중 전완문, 명문 완문」 등 문서에서 언급됐다.

하계 계원의 분동 청원이 실려 있는 「대야동 대소민인등 등장」에는 집강과 각 리의 소임이 매년 호포와 공납에 관련된 일로 모여 의논했다²⁰⁾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 당시 집강이 국가시책의 이행에 보조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향촌사회에 대한 통치기구로 추진된 오가작통의 실행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대야동 오가작통」은 식곡리를 제외한 6개리의 통수와 통수들을 통솔하는 도집강(都執綱)과 부집강(副執綱, 혹은 부임[副任])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동 우두머리인 도집강은 「대야동 동중 전완문, 명문 완문」에서 동계를 중수한 자로 밝혀진 강한철이었고, 통수들은 모두 유학 집안의 노비였다. 도집강은 관아가 아닌 향약 계통에 속한 임원이지만 통수와 같이 행정 명령의 시행 및 조세 징수에 협조했고, 통수는 국가적 행정을 보조하는 제도로 설치된 인원이었지만 재지사족의 세력에 좌우되고 있었다. 질서가 지역 관계를 갖추는 행위자들에게 강요되는 지역적 타당성(베버 1997: 184)을 기준으로 국가 행정과 마을 행정을 구분할 수 있지만, 마을 사회의 수준에서 이행되는 국가 행정은 마을 행정과 겹쳐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동리 주민에게 존재했던 권위는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세(賦稅)의 분담으로 계원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 관청에 등장(等狀)을 올릴 지경에 이르렀던 분동 논란은 재지사족의 권위와 이로 결속된 동계가 관의 권위로 동요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야동계 하계 구성원들의 분

契中助使二人 (중략) 洞內上契零星, 上有司只定一人事 (중략) 契中喪出則自本家即通于有司, 有司發通通告于契中 (중략) 下所任等段成服前侍令於喪家為遣 °下契喪事, 良置下所任等, 成服前看護事 °喪家喪事定日後, 浚即呈于有司, 有司發通于契中, 前期一日, 各具奠物致奠為遣, 仍為護喪, 返魂後罷歸為守矣 °下契則無致奠護喪等事 (중략) 契中所儲上下裝雨備及加乃鑪耳鑪等物乙, 下契中可信者擇之, 都家封援為於, 穀物段置, 亦定掌務一人, 使管其出入.”

20) 「大也洞 大小民人等 等狀」(1881): “每年戶布與公納等事, 自執綱所與各里所任□會相議, 分排於七里.”

동 요구는 결국 재지사족들의 부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로 관부에서 거절을 당했다. 구열회는 양근 지역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분동 시도의 좌절을 설명했는데, 이 지역의 사족들이 수도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향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나 조세행정과 국가 감시 기구인 오가작통제도에 힘입음으로써 기존의 향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구열회 2019: 246-248, 255-260). 연구지가 자리하는 양평군 용문면은 옛날에 양근과 지평의 접경지대에 해당하였으며 천주교도의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연구지는 대야동과 비슷하게 조정의 철저한 감시 하에 놓여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마을 사회에서 행정적 질서 및 조직의 분화

앞절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생산된 대야동 마을문서를 통해서 당시 향약 계열 임원인 존위가 국가의 조세 행정과 인구 관리에 협조하고 있던 모습을 이미 확인했다. 국가 행정이 향약조직을 흡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한 시도는 「향회조규(鄉會條規)」와 「향약판무규정(鄉約辦務規程)」을 국가 행정이 향약조직을 흡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이정표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향회조규」는 군, 면, 리에서 각각 군회, 면회와 이회를 두어 해당 지역 내의 교육, 호적 및 지적, 위생, 사창, 도로교량, 공공산림 및 제언보항(堤堰洑港), 식산흥업, 환난상휼, 공공부역, 각종 계모임과 신식 영칙(令飭)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했다(송병기 외 엮음 1970: 600-601). 특정한 지역 내의 주민(인구학적 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도 대상으로 포함됨), 경제적 활동과 자산들 그리고 사회질서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치단체와 그 관할영역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시도로 보였다.

대야동계 「입의」와 비교해 보면, 「향회조규」는 ‘큰일 중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던 상·장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그러나 국가 행정이 법과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통치 대상으로 가정한 마을에 상·장례 부조가 부재한다고 하여 실제로 상·장례

부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연구 사례의 경우는 자연마을이나 말단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하는 상·장례 부조가 화장 문화 보급으로 상여를 소각한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국가 행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상대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라는 영역이 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례가 유교윤리와 신분질서를 압축적으로 재현하는 자리라, 중앙정부가 구축하려는 마을자치에서 상례가 공적인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지향하는 행정적 질서가 과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뒷받침하는 질서와 갈라지게 됐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약판무규정」에서 밝힌 동리 임원 선출 방법이 종전의 동계·동약 문서에서 규명된 것과 달리 출신 계급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은 것도 쉽게 이해된다. 「향약판무규정」에 따라 이정, 권농관, 풍헌(風憲), 약정(約正) 등 행정기관 임원과 향약조직 임원들이 임립했던 조직 구조는 정비됐고, 존위, 두민, 서기와 하유사로 구성되는 공식적 자치조직이 세워졌다. 임원 선출에 관한 부분에서는 임원의 직책과 임기가 강조되었으나 출신에 대한 제한은 관찰되지 않았다.

동리 임원의 출신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을 분등하는 기준과 마을총회 시 좌석을 배정하는 방식도 개편되어, 재산과 이에 따른 납세액·부역액의 다과로 바뀌었다²¹⁾. 재산의 다과 또한 조세나 부역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주민으로서의 역할 및 등급을 가늠하는 기준은, 「이리동약」에서 나온 ‘약헌(約憲)을 따르도록 하면, 장차 고장의 선인이 되고 나라의 양민이 될 것’이라는 기준에 비해, 경제적 지위와 이바지에 대한 강조 그리고 마을과 나라의 위상역전 등 변화를 반증한다. 즉 동약이 규정하는 질서를 제대로 지켜 ‘고장의 선인’이 되고서 더 높은 차원에서 나라의 양민이 된 점에 비해, 국가에

21) 「鄉會條規」, 第十六條: “凡里面郡會하는 議席에는 賦役이 多한 上等戶民이 執綱尊位次席에 座함.”(송병기 외 1970: 602. 여기서 賦役이라는 한문 표현은 조세와 부역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나 국세의 총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鄉約辦務規程」, 第六條: “各里內戶口産業을 該里로서 調査하야 産業의 多寡로 戶秩을 五等에 定하고 詳錄하야 一簿는 該里에 置하고 一簿는 該面에 置하고.” (ibid: 604)

이바지하는 정도에 따라 마을 사회에서의 지위가 결정된 것이었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 세우기를 시도한 갑오개혁은 재지사족 주도의 향약과 동계의 형해를 수용한 한편 국가 행정에 맞추는 마을 영역, 행정적 질서와 ‘바람직한 주민의 품행’을 대상화하여, 마을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의 분화를 일으켰으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질서를 공유했던 국가의 마을 행정을 쇠신했다.

국가의 입장에서 마을 사회의 영역과 질서를 새로이 정립하도록 했지만, 한말의 지방행정제도 개혁은 마을사람들의 자주적 운영에 많은 여지를 남겼다. 동리 임원 중에는 사역에 임하는 하유사를 제외하고 남은 임원들이 모두 민선 명예직에 해당했다. 임원 조직이 돌아가는 데 발생하는 비용(서기가 사무를 볼 때 필요한 지필 값과 하유사에게 주는 수고비 등)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식으로 하여, 법문화된 마을자치조직은 임원 선출부터 재원마련까지 마을주민들의 주도 하에 집행됐다고 짐작할 수 있다²²⁾. 그리고 규정에서 ‘반상을 구분하지 않고’라 하여 반상차별을 법적으로 폐지하려는 까닭을 마을 구성원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과 지식을 기준으로 임원을 뽑는 조직을 세우려는 시도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동리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은 바로 반상차별에 기반한 명예직과 실무직의 구분, 실무직에게만 보수가 지급되오던 관습을 반영한다. 연세가 많고 사리를 아는 사람을 뽑아 감독 및 자문으로 삼는다는 조례는 ‘나이와 덕이 모두 많은 사람을 추대하여 집강(속칭 존위)으로 삼는다’²³⁾라는 향약·동약 규칙을 답습한 것으로 보여,

22) 「鄉約辦務規程」, 第一條: “一 尊位는 官으로 差定하던 例는 廢止함 (중략)

三 尊位는 名譽로 하되 年三十以上으로 하고 一年으로 遞期를 定하되 每年正月에 該里民人이 會議하야 班常을 拘치 勿하고 圈選한 後에 該面에 報하거든 面으로서는 各里尊位를 本郡에 稟報함 (중략)

六 書記는 尊位 命 受 該里帳簿記錄과 報告文件을 掌하되 紙筆의 費는 該里로서 精略히 議定하야 支給함 (중략)

十一 下有司는 該里事務使役에 任하고 料賴는 該里로서 精略히 議定하야 支給함.”

23) 「광주부경안면이리동약(廣州府慶安面二里洞約)」: “집강 1인, 보통 ‘존위’라고 한다. 마을 사람 중에서 나이와 덕이 모두 많은 사람을 추대하여 삼는다(執綱一人俗稱尊位 推洞中齒德俱優者爲之 非有大故, 則不遞其爲任).” 『고문서집성 8 -광주

그중의 ‘덕’을 ‘사리에 밝힘(解事)’으로 적었지만 전통적 관습의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갑오개혁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 정권은 식민지 정부로 넘어갔다. 지방제도의 골격을 규정한 「조선총독 부지방관 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에서는 지방행정 단위가 도(道), 부(府)·군(郡), 면(面)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중의 면이 말단 행정 단위로 지정되었다(朝鮮總督府 1910: 125-126). 면제의 실시와 함께 종래의 존위나 동·이장은 면 하급 관리(面吏員)인 구장에 대체되었다. 주의할 점은 구장이 책임지는 구는 대개 50 가호를 기준으로 구획된 구역이고 필히 동리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지의 경우, 동리 통폐합 전에 궁촌리, 여촌리, 신촌리 세 가지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생활권이었는데, 동리 통폐합에 따라 북쪽 고개 저편의 전곡리와 함께 화전리로 편입되었고 구장 설치 시 궁촌리와 신촌리가 1구로, 여촌리가 2구로 나누어졌다. 구라는 행정단위는 통폐합 전후의 어느 ‘리(里)’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활단위인 자연마을과도 대개 경계가 동일하지 않았다.

구장까지만 설치해 둔 면제나 행정구역과 자연마을의 괴리는 마을 수준에서 법령 및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기에 다소 불편을 초래할 것이었는데, 계와 향약을 변용시켜 부락 단위의 관변단체를 결성시킨 정책들이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일찍이 1918년에 향약의 취지를 부흥하고 미풍양속을 작흥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공조회(共助會)의 설치를 권장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해 1923년에 도지사가 다시 각 군수와 면장에게 훈령을 내려 부락을 단위로 공조회를 조직하도록 명령했고, 공조회를 통해 마을에서 폐풍타파, 미풍작흥, 산업진흥과 행정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다(京畿道內務部社會課 1927: 142-149). 공조회와 성격이 비슷한 마을조직의 결성은 1930년대 전국적으로 전개된 농촌진흥운동 가운데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 전 군 300여 부락이 일제히 농촌진흥회를

안씨·경주김씨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에 수록된다. 한글 번역문은 디지털 장서각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

창립했다²⁴). 식민지 정부가 얼마간 세력을 키웠고 또한 농민조합운동을 비롯한 사회 불안을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배경 아래, 농촌진흥운동은 그 전의 지방개량운동보다 더욱 강한 행정력에 의해 감행됐다. 경기도 농촌진흥회의 본보기로 지목된 시흥군 농촌개량조합 규약을 보면 조직 기능, 임원구성과 하부구조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됐다. 규약(府邑面雜誌社 193 2: 35-38)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은 공조회 때의 가구주에서 부락 내 전체 주민으로 확대되고 호주부(戶主部), 부인부(婦人部), 청년부, 소년소녀부로 나뉘었다. 조직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항들은 여전히 산업과 교화에 중점을 두면서 조세·공과금 납부, 분쟁 조정, 공동저축과 차입금 운영 등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켜, 조세행정과 사회 안정 유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근검저축조합(勤儉貯蓄組合)의 기능을 흡수한 모습을 보였다. 진흥회로 대표되는 농촌진흥운동 시기 부락 단위의 관변단체는 위와 같이 부락 전 주민을 망라하고 정부의 추진 하에 산업, 저축, 금융, 행정, 방재 및 구휼, 사상과 생활양식의 규율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행사를 전개했다. 조직이 돌아가게끔 조합장, 부조합장, 이사, 위원과 고문(顧問)까지 포함된 임원진을 구성해 각호로부터 1년당 곡식 10가마니를 거두어 기부금, 이월금과 합해서 경비에 충당했다(ibid: 37).

은 주민이 가입하고 각 생활 영역에 대한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마을 조직이 형성되었지만, 부락이라는 단위는 시종 정부에서 행정 단위로 인정받지 못했고, ‘부락감정’이라고 불리는 마을에 대한 애정은 ‘개인주의’와 같이 애면·애국심(愛面愛國心)에 반해 배제될 대상이라고 농촌진흥운동에서 주장됐다(ibid: 36). 결국 부락이라는 사회 단위는 식민지 정부의 사업을 이행하여 사회 통제, 경제 발전과 자신의 존속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양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부락을 단위로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행위방식은 공식적으로 권장

24) 동아일보, 1932.11.12., 7면, 「진흥운동 소식」: “(전략) 양평군에서는 현하 극도로 피폐한 농촌에 자력자금을 목표로 농촌진흥회를 창립코자 리(李)군수 통택(桶澤)서장 이하 관계 관청 직원과 일반 유지의 활약으로 만반 준비를 마치고 지난 3일에 전 군 330여 부락이 일제히 창립하였다는데, 실행 사항은 생활개선의 건, 산업개선의 건 통 44종목으로 우선 실행키 용이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차 진행할 방침이라 한다(후략).”

연맹 이사회에서 추대되는 사람으로 정했다(朝鮮總督府 1940: 66). 이와 달리, 총력운동 때에는 부락연맹 이사장이 읍면연맹 이사장에 의해 선임되고 가능한 한 구장과 동일화한다는 원칙이 채택된다(朝鮮總督府 1941: 35-36). 구장이 책임지는 구역 안에 두 개 이상의 부락연맹이 존재하는 경우는 구장이 배치되지 않은 부락연맹을 구장이 배치된 부락연맹과 묶어 하나의 동리연맹으로 편성하고 구장을 동리연맹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동리연맹은 동리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실은 구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동리와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한 동리에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었다(ibid: 39). 동리연맹을 설치하는 방법 위에, 일제는 1940년 12월에 구장의 인원수를 31,000명에서 60,000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구장 충원의 방법도 사용했다(김영희 2003: 340). 위와 같은 노력을 거쳐, 결국 1940년대에 구장과 애국반 반장으로 이루어진 말단행정기구가 자리잡게 됐고, 동리나 부락은 모두 구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구를 기준으로 재편되었다.

구장과 반장들로 구성된 말단조직은 총력전 시기에 선전과 정보 통신, 풍속교화와 생활양식 규율, 생산에 대한 조직 및 지도, 보건·방재·환경에 관한 공공사업의 추진 등 종전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물자의 공출 및 배급, 인원 동원, 방위 훈련 실시와 기부금 모음 등 전시총동원을 위한 업무들을 추가로 이행하기 시작했다²⁸⁾. 마을 사회에서 국가 행정에 의해 획정된 공적 영역은 전쟁이라는 비상상태를 계기로 역대 보기 드문 넓은 범위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구장과 반장으로 이루어지는 말단행정보조조직도 마을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됐다. 개별가구까지 닿을 수 있는 말단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된 이후에야, 마을 차원에서 일어난 동향까지 파악하고 반영하는 국가 행정 체계가 가능해졌다.

부락연맹과 애국반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을 지역 관계에 따라 조직화하고 국가 행정이 추구하는 질서를 그들에게 적용하는 행정보조조직은 총력전체제를 계기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마을 사회에서는 국가 행정

28) 『國民總力運動要覽』(朝鮮總督府, 1943: 33-66) 에서 기재된 38개 항목의 사업 내용 중 애국반이나 부락연맹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요약했다.

이 제정하는 질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구장과 반장에 의해 행해진 배급을 예로 들면, 지역 내의 세대수에 맞추어 물자를 등분한 대신에 계급관계와 친족관계로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가 존재했고 공적 배급 외에 밀매매도 활성화되어 있었다(이경란 2004: 830-831).

3) 이·반조직의 정립과 행정리의 위상 상승

대한민국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읍면 지역에는 동·리를 두고 동·리에는 임기 2년의 동·리장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읍·면의 하부조직은 50가구 내외의 구에서 1910년대 동리 통폐합 후의 동리로 바뀌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후의 복구 사업 및 난국 수습으로 지방자치법의 실행은 1950년대 중반으로 미루어졌다. 연구지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2개 구로 나누졌던 동촌, 마장, 궁촌과 여촌이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통합됐다.

사례 III-1 구의 통합

“6·25 때까지 동촌, 마장, 여기는 구장이 하나고 그리고 저 여촌 마을에 구장이 하나 있어. 화전리에 들어 있었던 말이야. 6·25 나고 나서 합쳐지고.” (홍ST, 1934년생)

“구장이 통합된 거는 한 65년 전, 구장은 한 명으로, 이장으로 통하게 됐다고. 나 한 18살 쪽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 65년 전에 바뀐 것 같아.” (조YD, 1940년생)

통합 이후 행정책임자가 구장이라고 불렸는지 아니면 이장이라고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주민에 따라 기억의 편차가 있으나, 행정단위와 행정책임자가 하나로 통합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이장과 구장 두 명칭의 혼용은 지방행정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고 개정이 빈번한 1950년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장제를 폐지하고 동·이장제도를 실시한 이후, 동리장제도와 함께 시행된 「동

리세조례(洞里稅條例)」가 종전의 호림보다 무거운 부담을 초래했다는 불만이 터져 도시와 읍소재지를 제외하는 기타 지역에서 구장제를 부활 시키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바(김광준, 1954: 44-46)가 있었다. 또한 연구지역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의 행정리가 1리, 2리로 분구됐고 다시 합쳤다가 또 분구된 행정구역 개편 현상도 존재했다. 행정리 구획과 동리장제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 이후에야 안정화했다. 동·이장 선정 방법과 보수 측면에서는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리’라는 구역의 범위와 위상 그리고 관리자의 설치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리가 ‘마을’로 인식된 것은 해방 후 특히 1960년대 후에 일어난 일로 추정된다.

반은 폐지되지 않고 1949년에 국민반으로 재건되었다가 1958년~1960년 사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방’으로 개칭됐고, 1960년 ‘방’ 폐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했다(한국지방행정사편찬위원회 1987: 2386).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계획, 지역발전, 새마을사업 등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사업에서 반은 동·리와 함께 기반조직으로서 중요시되어 보강되었다. 도시지역을 선행하는 개발계획의 기조와 대응하여, 동·리 하부조직인 통·반의 강화는 도시지역에서 우선 추진되었고 새마을사업 본격화 후인 1975년에야 내무부 장관의 행정지시로 인해 전국 각 시, 읍, 면 단위로 전면 전개됐다. 해방 후 재정립된 반은 일제 치하의 애국반보다 그 규모가 컸다. 법적으로 규정된 반의 규모는 50년대의 10~20호에서, 70년대의 30호로, 현재 100호로 확대해 나갔고, 읍면지역에서 실제 설치 시 자연마을과 범위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8년 경기도에서 시행된 「국민반강화책」에 따르면, 국민반은 원칙상 10~20호 단위로 조직되는데 인구가 많아 반이 많은 경우 자연부락 또는 부락민의 실태를 고려하여 통장을 두도록 했다. 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술조사에서는 반이 자연마을과 동일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면담대상자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반이 자연마을을 단위로 결성된 것은 늦어도 195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때 이르러 오늘날 행정상 화전2리라고 불리는 지역은 대개 경계를 획정했고, 구역 행정 책임자와 각 자

연마을의 반장 및 주민총회를 포함하는 행정보조조직을 갖게 됐다.

이장(구장)과 반장들의 임무는 국가 행정에 의해 구현되는 마을 영역과 마을 일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보전달(위에서 아래로의 행정시책 홍보나 주민 여론·건의·요망사항의 상향적 전달), 지역 주민에 대한 파악과 동원 그리고 물자의 분배와 유통이 기본 축을 이루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총력전시기의 물자 통제 및 배급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미군정 시기에 군정청은 생필품 시세 안정과 수급 대책 확립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미국과 중요 소비품의 가격 및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물자수급을 조절하기로 했다(김점숙 2012). 1950년대로부터 배급통제가 점차 완화되었으나 농업생산에 필수한 비료와 농약은 대부분 농협의 중개 하에 구매·공급·유통 해왔다²⁹⁾. 연구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 반장이 반원들의 수요를 통계한 다음 이장이 각 반의 수요를 취합해 읍면농협에 주문하는 식으로 농자재를 구입해왔다. 따라서 마을사람은 반장이라고 하면 생활물자 배급과 농자재 공동구매를 보살피는 자라는 인상을 가졌다.

사례 III-2 반과 반장의 역할

“연탄 땔 때는 연탄 신청해서 연탄 나눠주고, 또 농약 많이 쓸 때는 농약 신청해서 농약 나눠주는 거를 반장이 다 했던 말이야. 비료 같은 것도 반장이 다 해서 나눠주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중략) 인원 동원시키고 그런 건, 반장이 다 해주는 거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자고, 가자고 이렇게 해서 인원 동원시켜서 일을 한 거지. 새마을사업이 그렇게 된

29)비료공급은 광복 이후 AID 원조자금으로 도입한 비료를 정부가 전량 인수해 금융조합·외자청·농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하는 관수체제였는데, 절대량이 부족해서 1951년부터 전체 물량의 약 20% 수준에서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관민이원화의 공급체제로 전환했다. 1961년 농협 창립 후 정부가 비료의 자유유통을 전량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했다. 1988년부터는 비료의 자유유통이 허용되나 농협이 여전히 유통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했다.

농약공급은 1962년에 농협으로 일원화됐다가 1966년으로부터 일부 농약의 민간판매는 허용됐다. 다만 수도용 농약의 공급은 1970년 식물방역법에 의해 농협 전담으로 했고 1977년 농약관제법 개정으로 정부 위촉구매 사업으로 취급하게 됐으며 1990년부터 농협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농협중앙회, 2021: 142).

거야.”(홍ST, 1934년생)

“반장이 사람을 동원시켜서, 부역이라고 동원시켜서 가서 쌀을 가져와서 나눠준 거야. (중략)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용문가서 배급 석유라고 그 걸 갖다가 나눠주고. 옛날에는 지게 지고 다니는 길밖에 없었어. 용문가서 지게로 지고 와서 한 집이 얼마큼씩 나눠줬는데 그건 반장이야.”(조YD, 1940년생, 남)

법령이나 시책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실행하도록 지역주민을 동원하는 것은 반장의 또 하나의 직책인데, 보통 이장 혹은 구장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전개된다. 국민반 시기에는 읍면과 그 상급 행정단위에서 하달한 실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외에 농번기의 이앙·제초·수확·탈곡과 농한기의 가마니·줄 생산 등 생업활동도 국민반 단위의 작업반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행하도록 했다(경기도 1957: 43). 이·반조직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조직하거나 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전략은 줄곧 이어져 왔지만, 소위 조국 근대화 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이·반 단위의 인원 동원과 공동노동은 주로 읍면이나 마을 내의 도로, 하천, 산림, 주택 등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부역을 그 내용으로 했다.

사례 III-3 20세기 후반 이래 인원동원의 형식

“옛날에는 부역이라는 거, 도로 포장에 안 됐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화전리 살지만 용문면에 나가서, 용문면에서 화전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삼성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 삼성리라는 데까지 가서 부역을 했다고. 소쿠리 지게 짊어지고 가서 자갈도 갖다가 도로가 망가지면 갖다 붓기도 하고 그런 거야. (중략) 지금은 이 도로변에 풀이 나잖아. 또 마을에서 그 갖고 있는 화초밭 거기도 잡초가 나와서 매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부역을 하는 거야. 이장이 방송을 해서 다들 나오십시오 작업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몇 번 안 해, 1년에.” (조YJ, 1943년생)

선행연구들이 지적했듯, 한말 이래 국가가 마을 사회에 대한 행정 관

리를 강화시키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마을 행정에는 국가 주도의 질서와 마을사람들의 단체 행위를 규제해 왔던 ‘자치적’ 질서가 분리되었다. 국가는 기존의 마을조직을 행정보조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관리 대상으로서의 마을을 현상화하고 자기주도적 질서를 실현하도록 했다. 행정보조조직을 중개로 마을 사무를 처리하고 바람직한 행위방식과 ‘국민’으로서의 품행을 제시함에 따라, 국가 행정 대상에 해당하는 ‘마을’ 영역을 새롭게 열렸다. 나라, 마을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질서를 깨고 오직 국가의 존속과 성장만 지향하여 이를 준거로 삼는 의미 경계가 싹텄다. 국가 행정 체계의 생성 내지 재생산은 바로 이러한 의미경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체계의 재생산이 ‘체계/환경-차이’를 낳는 의미경계의 재생산이라면, 의미경계를 짓는 준거뿐 아니라 복잡하고 번덕스러운 환경을 처리하는 능력도 필요했다. 정보 전달과 주민 동원의 역할을 겸하는 행정보조조직은 생활세계로서의 마을에 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해 상급조직에 보고함으로써 행정 체계의 환경에 대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국가 행정 체계의 재생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 체계가 대상화하는 마을이 반드시 재래적 질서를 중심으로 발전되는 마을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총력전시기 전까지 국가 행정은 자연마을이라는 사회 단위와 그 자치적 질서를 바탕으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활용했지만, 전쟁 상태에 들어서자 행정 단위인 구와 구·반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구보다 범위가 넓은 리(里)는 구를 대체하여 면의 하부조직이 되었고, 자연마을은 반의 형식으로 행정단위인 리의 하부조직에 편입되었다. 이·반조직은 20세기 말까지 지역 내 개별 가구들의 생업, 생활 인프라와 정보 통신 등 생활 전반에 개입하므로 마을 사람에게 중요한 사회 단위로 받아들여지고 행정적 사무에 의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행정 체계 작동의 결과물인 마을 외에는 구동리에 기반한 지역적 연대와 마을 영역도 존재했다. 2장에서 소개했듯이 1980년대 전의 연구지에는 농사, 농사 놀이와 상례조직이 구동리를 단위로 조직됐다.

따라서 마을 행정 질서의 분화는 마을 영역의 분화와 동시에 일어나

고, 생활세계에서 국가 행정 체계가 발현하는 마을과 다른 행위방식에 의해 발현되는 마을 간의 분화와 맞물려 있다. 행정 체계가 발현하는 마을은 생활세계의 일부로서 마을사람들에게 주어지도 하는데, 다음 절에서는 행정 체계의 행위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민속세계에 발현되고 대동계의 중수 및 존속을 성사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 기능과 ‘수고’ 관념으로 연계된 말단행정과 대동계

1) 마을재정기구로 단순화되어 국가 행정 재원으로 활용된 대동계

화전2리 대동계의 설립에 관해서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식민지시기에 설치했던 1구와 2구가 한국전쟁 후 통합되어 행정책임자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변화함을 계기로 대동계가 출범했다고 한다. 통합 전에는 구별로 반계가 조직되어 있었고 반원에게서 하곡과 추곡 각 한 말씩을 거둬서 구장 수고비를 충당하는 모금 조직으로 기능했다.

사례 III-4 구 통합과 대동계의 출범

“(질문: 구장이 있었을 때는 이중계를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저기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구장이 합쳐지면서 이 모든 재정 관계도 따로따로 하던 게 한 데로 합쳐진 거지.” (홍ST, 1934년생)

“1946년, 5년 이때는 그 때는 이중계가 아니고 반계였었어. 여기 이장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그땐 각 반에서 구장이라고 해서 저 아랫말도 하나 있었고 이 동네도 하나 있었고.” (조YD, 1940년생)

구술 내용을 통해서 대동계가 행정적 구분을 기준으로 결성하는 모금 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동계의 설립을 이해하려면, 대동계가 말단 행정단위와 어떻게 연계되게 됐는지 또한 어떻게 모금조직으로 변모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장 1절은 행정보조조직이 분

리해 나가서 동계를 대신해 국가 행정에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민속세계에서 일어나는 분화와 대동계 조직의 재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적 질서가 분리해 나간 후 동계가 행했던 규율, 징계와 조세행정 보조 기능은 일부가 행정보조조직으로 나아가 전문적인 행정·사법·교육 기관으로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양근 대야동 문서에서 동계의 일차적 목적으로서 강조됐던 상·장례 부조가 갑오개혁 후 국가 행정에 의해 규정되는 공식적인 마을 영역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식민지시기 일련의 국민운동이나 해방 후의 새마을운동은 생활개선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일생의례의 간소화를 주창했지만, 의례를 치를 때의 품앗이와 현물 부조에 대해서 행위방식을 일일이 규정하지는 않았다. 즉 갑오개혁 이후의 국가 행정은 풍속·습관을 고치는 입장에서 의례를 통치 대상으로 취급하지만, 집단적 의례 부조를 신분질서와 윤리의 표징으로 중요시하여 동계 규약으로 명문화하는 조선후기의 향촌 통치와 달리, 의례에서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인간관계와 윤리를 간과했던 것이다. 총력전 시기 전까지는 구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단위였을 뿐이고 자연마을이야말로 운동을 추진하는 말단 단위가었기 때문에, 의례조직과 행정보조조직의 경계가 여전히 일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와 그 이후의 리가 강화되면서 의례조직과 행정보조조직의 괴리는 점차 분명해졌다.

사례 III-5 행정보조조직 및 대동계와 분리되어 조직됐던 상례조직

“동촌말이라는 데 있지. 거기는 상여를 따로 썼어. 상여를 따로 썼었는데 이제 사람이 점점 구해다 보니까 화전2리 전체로 합쳤어, 그래서 거기 상여를 불살라버리고 계도 합친 거야. (중략) 그쪽은 왜 따로 했느냐? 거기까지는 모르지. 옛날에 내려오던 거니까 거기까지 우린 모르고.” (조YD, 1940년생, 여촌)

“(질문: 옛날에 따로 했을 때 동촌도 이중계에 가입했었어요?) 이중계 지금은 똑같이 했지, 여기하고.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너 구장이라고 물어봤지.

6·25 때까지 동촌 마장 여기는 구장이 하나고 그리고 저 여촌 마을에 구장이 하나 있어. 구장이라는 게, 그 대동계가 1개 구에서 다 합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상여는 따로 했어도 이 대동계는 여기하고 같이 해거지.” (홍ST, 1934년생, 궁촌)

연구지 상례조직의 경계가 행정 단위와 일치하지 않은 현상은 1980년 구역 내 두 상여계가 통합될 때까지 지속됐다. 그전에는 궁촌, 마장말과 여촌 세 가지 자연마을이 상여를 공용하고 운구와 산역을 서로 도와주는 상여계를 운영했고, 이 세 마을과 동떨어진 동촌이 독자적으로 상여계를 결성했다. 여촌이 아닌 동촌이야말로 행정상 궁촌 및 마장말과 같은 구에 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례조직은 행정구역과 경계를 같이하지 않으며 행정보조조직과도, 행정구역 단위의 대동계와도 궤를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상장례 부조 기능까지 갈려져 나감에 따라 동계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마을재정기구로 단순화됐다. 재정기구로의 변모는 마침 국가 행정이 마을 사회를 통치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데 마을조직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합했다. 1910년대 나온 구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면에서 필요한 경비는 면유재산(전답·산림)에 의한 수입과 각 동에 할당하는 조세·부역을 통해 마련했다며 동의 차원에서는 동유재산에 의한 수입과 호령으로 면에서 분배받은 납부액과 동 자체의 경비(동장 보수, 동회 비용 등)를 충당했다고 한다(朝鮮總督府 1934[1911]: 47). 어느 조직이든 움직이려면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원도 필요로 한다. 행정체계와 말단행정 보조조직의 성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을에서 행정보조조직을 처음으로 설립해 보는 갑오개혁으로부터 동리 임원 수고비와 기타 경비의 많은 부분은 동리 주민이 부담했다. 1895년에 제정된 「향약판무규정」에서 유급직 하유사의 보수와 사무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마을 내에서 의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송병기 외 1970: 602-603). 식민지기에 이르러 말단행정 보조조직이 활발해진 동시에 공공의 일을 위한 부과금의 명목도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호구세를 제외하고는 민적조사·토지조사·위생사업 등 행정업무에 소요된 경비, 해

당 구역 행정 담당자 보수, 각종 강연, 회의, 관변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기타 잡부금도 마련해야 했으며, 동계를 통해 조달하기도 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310-328; 이용기 2007: 74-76; 혼다 히로시 2016: 145-153).

해방 후 각종 잡부금이 줄어들었지만, 행정 담당자 보수를 포함하는 동리 행정 경비를 각출하는 모곡 관행은 지속돼 왔다. 지방행정제도 개혁 시 구장제를 동리장제도로 바뀌었음과 함께 「동리세조례(洞里稅條例)」를 시행하여 동리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 보조 인원의 보수와 활동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했다(김광준 1954: 44-46). 결국 행정 체계가 성정하여 말단 행정보조조직이 설립됐음에도 동리 행정의 전개를 뒷받침하는 자금원을 계속하여 마을주민의 모금에 의존하게 된다. 구가 통합되자 행정리 단위의 대동계가 새롭게 설립된 것은 바로 이에 근원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동계와 말단행정구역이 경계 및 관리자에게 있어 동일하지만 마을 사람에게는 성격이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이·반을 단위로 하고 이장과 반장에 의해 조직된 부역이 대동계나 반계에서 자금 지원을 받지만 계와 관계없는 일로 간주된 현상은 행정보조조직과 계조직의 상대적인 독자성을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례 III-6 부역과 대동계의 관계

“옛날에 면에서 시키는 부역도 하고. 이 도로 포장하기 전에 동네에서, 리별로다가 어느 구역을 맞춰서 도로에 가서 짐도 지고 부역도 했지. 그때 60년대 70년대. (질문: 그때 이미 성가해서 대동계에 가입하셨나요?) 그게 이 주민으로서 다니는 거지.” (신ZS, 1948년생)

“(질문: 새마을운동 때 반계나 대동계가 관여를 했어요?) 그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때는 못 살고 있었으니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YJ, 1943년생)

계가 임원 수고비와 공동행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나 공동행사

혹은 공동노동을 조직하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20세기 지역사회를 범위로 결성하는 계가 조선후기 동계에 비해 재정기구로 축소된 면모를 다시 관찰할 수 있다.

마을재정기구로 단순화된 것은 전 사회에 걸쳐 일어난 기능 영역 분화를 배경에 깔고 있으며, 행정 체계의 요구에 부합하여 대동계를 말단행정과 연계시켰다. 행정 체계는 동계류 조직을 재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유지시키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동계를 단순히 행정정보조조직의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타 지역 동계 조직에 관한 자료를 보면, 식민지기에도 동계가 지방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원 마련 기구로 포섭된 한편 동계, 백중과 같은 행사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고 혼상구, 농기구, 농악기 등 행정 체계에 가치가 낮되 마을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연구지역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의례조직이 행정정보조조직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말단행정구역을 단위로 결성된 계가 구성원에게서 이세를 거둬서 임원 수고비와 마을총회 비용을 충당했다. 그러나 동리세가 법적으로 폐지된 후에도 이세 납부를 납부하여 마을자금을 마련하고 임원 수고비를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행해졌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세 납부와 임원 수고비 지급을 중심으로 대동계와 말단행정 연계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정보조조직 기능의 확장과 수고비 관행의 지속

화전2리 대동계 설립 초기 구성원들이 납부하는 이세는 마을총회 경비로 쓰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이장과 총무에게 보수로 지급됐다. 대동계의 설립과 그중의 행정 체계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수고비 관행의 지속과 변모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한말시기 마을조직 운영 양상을 잘 보여주는 전남 구례 오미동 마을문서에서는 이미 동유재산으로 동임 및 소임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수고비를 받는 자는 동수, 동임, 소임 등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한했고, 최고책임자에 해당하는 존위는 오히려 무급이었다. 수고비는 직무가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집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된 것이었다.

여기서 조선후기 마을 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배정하는 데 관찰되는 두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고 행정적인 질서를 지키는 마을 임원은 두 가지 집단으로 나뉘어졌다는 점이다. 조선후기에 양반이 고된 일을 면한다는 신분관념이 강해, 문서 및 재산 관리, 모임 시 잡무, 소식 전달, 호령 징수와 부역 동원 등 실무는 역시 낮은 계급 출신에게 맡겼다. 공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전체 주민이 아니라 소수자에 한하고 또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역자(賦役者)와 다르다. 그러나 양반이 굶은일을 하지 않다는 반상차별에 기반한 분업 패턴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부역과 유사하다. 따라서 신분 질서에 의한 위계 관계 및 분업 구조가 공적인 일을 배정함에 있어서도 작동하고 공정한 일에서 '수고'라는 하위 유형을 분리해 냈다는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난다. 수고비는 바로 위와 같은 분업구조에다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을 만하다는 관념까지 겹쳐 지급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화직이었던 존위와 동리 행정 책임자를 일원화해서 유지를 행정보조조직에 포섭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한말~일제시기에 일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행정 보조를 맡던 이정이 동계에서 실무를 맡는 임원과 마찬가지로 신분 출신이 낮은 자로 선출된 것이었다³⁰⁾. 따라서 한말~일제시기 말단행정을 구축하는 시도는 기존의 재지 지배 세력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한편 동리장 선정에 있어서 신분관념과 의도치 않게 부딪쳤다. 국가 행정은 마을 사회에서 그 작동에 상응한 행정적 마을과 마을 일을 구현하도록 마을 사회 내부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행정보조조직 구축과 재원 확보를 시도했는데, 행정보조조직 구축에서 인원을

30) 「미동사목책(美洞事目冊): 1898~1905」: ‘錢15兩 洞任 春等 例下錢(전 15냥 동임 춘등 예하전)’, ‘15兩 洞首 春條(15냥 동수 춘조)’, ‘25兩 洞任 春例(25냥 동임 춘례)’ ‘洞小任條給(동소임조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245, 273, 275, 277)

31) 『백불암선생문집(百弗菴先生文集)』 권12, 「夫仁洞洞約節目(부인동동약절목)」: “擇下人中愿謹有識老者一人, 稱以洞約所里正(하인 중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삼가고 유식한 노인 한 명을 선택하여 동약소 이정이라고 칭한다).”

선정하고 그들의 노동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마을 사회에서 행해져 왔던 방식과 충돌하여 두 가지 방식의 상호 경쟁·보완·타협을 초래했다.

처음에는 대한제국 정부나 조선총독부는 존위를 무급 명예직으로 취급하던 관행을 답습하여 동리 행정책임자를 무급 명예직으로 규정했고, 특히 조선총독부는 동리장을 심부름꾼으로 비하하는 풍조를 바꾸기 위해 행정 보조자로서의 구장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송병기 외 1970: 602; 朝鮮總督府 1912: 15). 구장은 법적으로 무급 명예직이었지만, 조곡(粗穀)을 각출하여 구장과 소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각지에서 여전히 관찰될 수 있었다(尹寬秀 1928: 85-86). 1920년대에 와서 구장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관원과 전문가들은 구장 유급제를 시행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을 펼쳤다. 1942년에 조선총독부는 총동원체제 하의 구장 업무 폭증을 감안하여 각 도지사에게 「읍면구장의 처우개선에 관한 건」을 하달해, 부락민의 모곡 관습을 폐지하고 읍면비로부터 구장에게 연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겉보기에는 구장 급여가 정부에서 지급된 것으로 변했으나, 특별호세별제도(特別戶稅別制度)를 실행하여 호세로 징수해 온 세금을 구장 보수에 충당했다는 점에서 실상 민간의 자발적인 모곡 관습을 법적 형식으로 재정립했을 뿐이다. 해방 후 특별호세별제도와 대동소이한 「동리세조례(洞里稅條例)」가 시행됐다가 1961년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됐으나, 농촌지역 동리장의 보수를 마을주민에게 남겨 종래의 모곡제(募穀制)대로 처리하는 방침은 유지되어 모곡 관행을 묵인한 채 장려한 바였다. 1963년에 말단행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서 동리장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 농촌지역의 동리장에게도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이해권 1969: 91-95) 행정기관에서 급여된 수당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마을 주민이 모곡 관행을 계속하여 보태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III-7 이장 수고비

“그 이장이라고 있지, 마을 대표. 그 사람들의 수고비를 주기 위해서 자금을 거출해. 정부에서 주는 돈은 뭐 몇 푼 안 되니까, 마을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만큼 보수를 마을 대표자를 주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가을에

벼로다 한 말 그리고 여름에는 보리 한 말 그렇게 내가지고 마을 대표자에게 다 준 거야. 이걸 다 받아서 저 일하는 사람들에 수고비로 준 거지 그게. 그리고 내가 아까 현찰로 받는다고 그랬지. 그때서부터는 백미로다 5가마, 50만이지, 그 값을 줬어.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대표들한테 지원금이 많이 나와.” (홍ST, 1934년생)

위와 같은 전개를 보면, 공식적인 임원 보수 제도가 마을 사람들이 임원 보수를 다루는 방식과 항상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임원 수고비를 각출하는 행위방식이 일관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행정 보조 인원에게 수고비를 지급해 주는 행위는 행정보조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 체계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마을 사람이 공공의 일을 위한 노동을 경험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그 바탕이 된다. 즉 조선 후기의 마을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동임(洞任) 보수를 합리화하는 관념이다. 연구지에서는 이장과 반장뿐만 아니라 이장 보조로서 두어졌던 이서기와 소사, 그리고 대동계 중수 후로부터 설치되는 총무는 모두 수고한 대로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해 수고비 지급 대상으로 취급받았다. 그 중의 반장은 주로 반 차원의 공무를 담당하므로 대동계 아니라 반계에서 수고비를 지급받았다.

사례 III-8 마을 임원 수고비

“이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반장인데...(중략)...반계 할 때는 반에서 얼마씩 냈어. 예를 들어서 쌀 한 대면 한 대를 내서. 반장이 더 수고했다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조YJ, 1943년생)

“이서기까지 줬다고 봐야지. 소사도 얼마 줬어. 오는 애들 데리고 시키다 시피 했으니 그러니까 얼마씩 보수가 있었다고 봐야 돼. 이세 중에서 알아서 준 거야. 이서기 또 소사 이거 따로 건어서 주지는 않고, 이세를 주면은 얼마씩 이장이 준 걸로 그렇게 하라. 반장은 따로 줬어.”(조YD, 1940년생)

정부에서 이장 수당이 지급되면서 대동계 소관 자금으로 지급되는 이장 수고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임원 수고비 각출 행위가 확실히 정부 정책 및 법규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이나 법규에 따른 변화는 그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고비 관념을 기반으로 국가 행정적 지시를 이해한 다음 판단한 결과에 더 가깝다. 국가 행정의 수고비 관행에 대한 영향은 임원 수당 지급 여부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행정 보조 인원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3장 1절에서 살펴봤듯이 총력전체제시기부터 면 행정기관이 전문화·성숙화될 때까지 마을 행정책임자의 직능이 확대해 왔다. 행정기관을 보조하여 지역방위, 주민등록 및 민원관리, 지방세 업무 추진, 반상회운영, 새마을운동 추진, 통계조사 및 관리, 병무행정 추진, 각종 회비 수납,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 업무를 전개해야 했을 뿐 아니라 농협과 기타 각종 기관단체에 협조해야 하기도 했다(신상철 1989: 83-86). 특히 배급통제 시행 시 공출과 배급의 실행 주체를 맡았다가 농협 주도의 유통경로가 형성된 후 영농회장을 겸직해 농자재와 생필품의 유통에 계속 개입해 마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업무가 잡다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및 농협에서 이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미약한 편이었다. 결국 동네에서 전래의 모곡 또는 마을공유재산관리에서 나온 수입으로 수고비를 보태는 실상이 되었다.

행정력의 침투에 따라 마을 임원이 맡은 업무가 폭증될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생계유지와 더욱 깊은 연관을 갖게 됐다는 맥락에서는 수고비 관행의 지속이 납득하기 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수고’ 개념 나아가 수고비 지급 행위에 담겨 있던 신분 차별에 있다. 식민지시기 연구지역에서의 구·반장 선출 및 활동 실상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이번 연구에서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담조사에서 수집한 구술 자료를 통해 1950년대 이래의 경향만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반장을 ‘심부름꾼’으로 취급하여 반장 당선을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특히 반촌이었던 궁촌에

서 유달리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사례 III-9 반장에 대한 이해

“이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반장인데 (중략) 반계 할 때는 반에서 얼마씩 냈어. 예를 들어서 쌀 한 대면 한 대를 내서. 반장이 더 수고했다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조YJ, 1943년생, 여촌반)

“반장은 뭐 고생도 아니고 뭐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이장 심부름꾼 아니야. 그게 뭐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이장은 그래도 마을에 존중할 수 있는 인물,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하잖아.” (홍SH, 1939년생, 궁촌반)

사례 III-10 각 반이 반장을 선출하는 방식

“여촌반은 일 년마다 (반장을) 바꾸고. 그니까 그거를 연령순대로 나이순대로 내가 결정을 해놨어. 다른 동네는 홍ST 씨 같은 분은 평생 반장이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등골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ㅇㅇ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한 십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 해놓은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조YJ, 1943년생, 여촌반)

“내가 6년 했는데 1년에 30만원씩 줬거든, 수고비를. 그 반에서 걸어서 30만원씩 줬는데 다 ‘안 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 6년을 했는데, 지나간 가을에 딴 사람한테 넘겼어.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이ZH, 1940년생, 전 마장반장)

“마장반 궁촌반에서 운영하던 그 백미는 우리 남양홍씨 집안에서 회사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나왔어. 그랬던 걸 가지고 했는데, 6·25가 나고 나서 노인네들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조금 적어 하니까 나한테 이거를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56년도나 57년도 그 정도 될 거 같아. 그때서부터 이걸 내가 여태 관리를 하고 있어. (중략)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아이 나이가 또 세고 장상을 해.” (홍ST, 1934년생, 궁촌반장)

반장은 이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라며 수고해서 수고비를 마땅히 받

아야 하는 자라고 인식되어 있다. 지방행정제도와 유통체계의 결속으로 인해 반장은 필수불가결한 인원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행정 인원이 아니며 반에서 그 나름의 관습대로 선출하는 직위이다. 연구지에서도 반에 따라 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재지사족이었던 남양홍씨가 세거한 궁촌에서는 반장을 한 사람에게 맡겨 온 데 반해, 반촌이 아니었던 여촌, 동촌과 마장말에서는 반장을 맡는 인원의 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가구 수가 많은 여촌반에서는 배분 공정성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번으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궁촌반의 경우에는, 홍ST이라는 사람이 1956년에 종종 어른의 지명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와 아울러 반장을 맡기를 시작했고 중간에 내놓았다가 인계받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나섰고 현재까지 반장을 해 왔다.

반장을 심부름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나, 반장 선출 방식이 자연마을의 성씨 구성과 과거의 신분계층에 따라 상이한 현상이나, 마을 행정 보조 인원이 행정 체계에 완전히 포섭되어 전문직화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장과 달리 말단 행정 구역 책임자인 구장이나 이장은 ‘선거’ ‘관공서 출입’ 등 특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장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 이·반조직 강화책도 시작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서기와 이소사 등 비공식적인 인원을 실무와 심부름을 담당하는 자로 두어 이장의 일을 분담하는 적도 있다. 행정 체계가 행정 보조 조직 구축 시 과거 행정적 질서에 기반한 분업 구조를 건드려서 야기하는 충돌은 비공식적인 인원의 설치로 완화됐다.

사례 III-11 1950~60년대 마을 임원 구성

“이장이 새로 되고는 이서기가 있었어. 이장이 있고 이서기 있고 이소사가 있고. 사무만 보는 사람이 서기고, 이장은 그 관공서 출입을 서류 당겼고, 소사는 이장 심부름.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장이 ‘너 아무 데 가서 누구 좀 오라 그래라’ 소사를 시켰는데 애들이 가서 불러오고.” (조 YD, 1940년생)

1960년대 국가근대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동·리와 그

하부조직에 대한 정비가 시행되면서 말단 행정 보조조직은 오늘날 흔히 보이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노인회 등 공식적인 인원들로 구성되는 양상을 갖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장은 실무직으로 전환해 나가지만, 반장처럼 ‘심부름꾼’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사례 III-9 및 III-11을 보면, ‘출마’ ‘관공서 출입’, ‘정부에서 보상을 받는 것’ 등 행정 체계와 관련된 행위들은 이장과 반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행정 체계는 행정보조조직을 구축해 그 직무를 확대시킴으로써 마을 사회에서 행정 보조 인원의 위상을 올리고, 정부와의 관련성을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근거로 만들기도 한다. 한편, 행정 보조 조직을 전문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인원의 선출과 행정 보조 조직 운영 경비의 마련을 마을주민에게 맡겨 사회 민속의 작동에 많은 여지를 남겨준다. 행정 체계가 의도적으로 비워주는 자리와 행정 체계 개입으로 찢어져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는, 마을사람이 임원의 노동을 경험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들이 작동하고 있어 말단 행정 보조 조직의 구축과 그 운영비용의 마련에 참여하며 행정 체계의 출현이나 결석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을 대동계의 존속 동력으로 전환해왔다.

제 4 장 개발사업의 전개와 대동계의 성장

4.1 공유재산에 의한 결속과 그 원리

마을재정기구로 축소된 대동계는 1980년대 초기까지 행정리 임원 수고비를 마련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계기로 공동자금이 늘어났고 상여계와의 통합으로 의례용품도 관장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후반에 이리야 사람들의 삶과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연관을 맺게 되었으며 이장의 관할 아래 분리해 나가 그 나름의 임원조직을 갖추게 됐다. 공유재산 증가로 인한 대동계의 변화는 그가 마을재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다시 보여주는데, 이 절은 주로 공유재산에 기반한 결속력과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동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가지는 상례조직과 자연마을 단위의 반계도 아울러 살펴본다.

1) 공유재산의 구성, 출처와 용도

반계 소관 재산이나 대동계 소관 재산은 모두 부동산, 공용물품과 돈·곡물 세 가지 종류로 나뉘질 수 있다. 부동산은 논밭·산림·도로를 위주로 하는데, 1990년대 이래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 같은 공동이용시설이 잇따라 낙성되면서 건물은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공유 토지는 상속자가 없는 개인소유 토지가 넘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유래에 대해서, 후손이 없는 자가 전답을 마을에 기부해서 자신의 사후에 제사를 지내주기를 마을사람들에게 부탁했다는 설이 전해져 온다³²⁾. 기부 대상이 자연마을인지 리인지에 따라 반계 혹은 대동계

32)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장흥 유치동계에 대한 사례연구에도 나온다 (김경옥, 「한국전쟁 이후 장흥 유치동계의 조직과 기능변화」, 『역사학연구』 19, 2002, p.491). 또한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도 후손이 없는 망자나 병역·잡역을 면하기 위해 외지로 도망치는 자가 남기는 땅이 동리유로 귀속된다는 관습을 기록하고 있다.

소관 재산으로 편입된다. 마을에 토지를 기부하는 행위가 흔히 제사와 별초를 해주기를 조건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공유 토지가 사유 재산과 같은 상속 규칙을 공유하며 친족상속이 불가능할 때 하나의 대안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추측을 할 수 있다.

사례 IV-1 반계와 대동계 소관 공유토지 출처

“한MZ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자손이 없었어. 그 땅을 마장말 여기 반계로다가 회사를 한 거야. 회사를 했기 때고 묘지가 있었어. 묘지를 우리가 동네에서 관리를 해줬어. 이 사람이 자기 자손이 무해서 여기 개인 재산은 있는데 누구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에다 내놓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묘지를 관리해 달라. 그래서 이JS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묘지 관리를 했던 거야.” (홍ST, 1934년생 궁촌반장)

“그 땅은 뭐냐 하면, 옛날에 사람이 부부가 살았는데 자손이 없어. 자손이 없어 늙어서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어. 그럼 내가 죽으면 옛날에 다 산에서 장사를 지내고 산소에 풀도 깎아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해줄 사람이 없어,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노인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동네에다가 기부를 해서 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 죽거든 장사 치러주고 동네에서 그 땅을 해서 쓰고 일 년에 한 번씩 나 제사만 지내줘라 산에 별초도 좀 풀도 좀 깎아주고. (중략) 소유주 미복구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주인이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마을에서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그걸 국가 땅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이거를 우리 동네 땅을 만들자. 그러다가 주인이 나오면 주자. 그럼 동네 이름 화전리라는 이름으로다가 소유권을 해놓은 땅이 있어. 그게 동네 땅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같은 걸 갖고 동네에서 쓰기도 하고.” (김ES, 1968년생, 전 이장)

기부 받은 땅 외에 6·25전쟁으로 나타난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또 하나의 공유토지 출처이다. 한국전쟁 시기의 인구 이동, 인명 피해와 서류 훼손으로 인해 소유자가 불분명해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히 해서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유권 전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했다. 1964년부터 196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반농지의 소유권전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농지의 현소유자, 시효 취득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1977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전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전이등기를 읍·면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와 난이도를 더욱 간소화했다. 관리와 조세 징수의 편리를 위해 토지 소유자를 밝히려는 정부의 시도는 마을 사회에서 소유자불명 토지에 대한 관심과 소유권 등기 및 토지 매매를 둘러싼 일련의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지의 경우 소유자 미복구 토지 5필지를 마을 공동소유 것으로 등기했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양식은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로 마을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공유 토지로 등기하는 것 외에, 취득세 제도가 정립되면서 수입 내역에서 ‘도로 사용 승낙’ ‘땅 사용 승낙 비용’과 ‘부지취득세’ 등 새로운 수입 항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마을재산 운영이 국가의 토지 관리 수단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을 공유토지 특히 그중의 논밭은 초기 주로 개별 주민에게 토지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농지임대는 원칙상 농지규모가 작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하므로 구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마을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대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가 임차인이 없어졌으므로 중단됐고 비농업용지 임대에도 대체됐다. 임대라는 형식을 제외하고는 공용 토지가 시책에 응하여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 같은 공공시설을 지는 터로, 또한 부녀회나 노인회가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소위 마을발전 사업을 뒷받침하는 물적 자원으로서 활용된 셈이다.

공유재산에 속하는 공용물품은 원래 의례용품, 농기구, 의례용품과 농약기를 위주로 했다. 혼상구, 농기구와 농약기 같은 경우는 의례조직별로, 생산조직별로 소유하는 것이어서 두 군데로 나뉘어져 동촌 곳집과 궁

촌·마장·여촌 곳집에서 각각 보관됐다. 식기 같은 경우는 반계마다 갖추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단은 일생의례에서 품앗이를 서로 해주는 관계를 맺었다. 혼례, 상례, 환갑과 돌을 포함하는 일생의례는 마을에서 큰일이라고 불릴 만큼 잔치 규모가 크고 집에서 치르는 경우 많은 식기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한 식기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스스로 구입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계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다.

사례 IV-2 반계 소유 식기

“각 반마다 그릇이 다 있어. 우리 마장반하고 궁촌하고 한 마을이었어. 여촌반은 자체가 사람이 많아. 거기는 그때 40 몇 가구가 돼가지고 자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 동네나 이 동네나 사람이 몇 가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을 같이 합쳐서 했더라고요. (질문: 잔치 때 다른 반 사람도 왔나요?) 그러니까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다들 모인다시피 하고 저 동네나 이 동네라는 올 사람만 오는 거지.” (김SH, 1959년생, 1978년에 시집으로 화전2리에 정착하게 됨)

사례 IV-3 상여/상여계의 별도 운영

“동촌은 따로 있었어. 근데 동촌에 그 상여가 있던 게 내가 이장 볼 적에도 거기 있었거든. 그 후로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합친 거야. 그 상여 하던 데 곳집이라고 하는데, 거기 따로 곳집도 있고 그랬었다고. 근데 왜 따로 해놨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홍SH, 1939년생, 1983-1987년도 이장)

1980년대 말 두 상여계가 통합됐고, 이는 1989년에 상여돈과 대동계 자금이 합쳤음을 표징으로 상례조직과 대동계도 통합됐다. 이를 계기로 혼상구는 대동계 소관 재산으로 이전됐고, 리 단위로 공용되는 식기는 새롭게 마련됐다. 의례식장과 외식 문화가 보급되었을 때까지는 혼상구와 식기는 공유재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었다. 공용물품이 공유재산에서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줄어든 데 반해, 금전과 곡물로 구성되는 유동자금은 1980년대 말 이래 갈수록 부각 돼 왔다. 연구지에서 해방 이전 마

을조직과 공유재산이 운영되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구술 조사를 통해 1950년대~1980년대 사이 유동자금이 각호로부터 거둬들이는 이세를 위주로 구성되고 행정 보조자 수고비와 모임 경비로 쓰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IV-4 이세 징수

“그 전에는 대동계에서 쌀을 한 말씩 거둬서 그걸 이장을 다 줬어. 그 쌀을 걷어서 그날 점심을 해 먹고 나머지는 이장을 싹 줬다고 그 전에는. 그때 대동계라고 이름만 있었고 행동은 뭐 하는 게 없어. (중략) 그런데 보리 한 말 벼 한 말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벼를 거두면 또 도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쌀로 변동이 됐지. (중략) 내가 이장 볼 적에는, 다른 리를 보면은 쌀을 7가마 8가마 조정해서 걷어주는데, 열 가마를 거둬도 이장을 그밖에 안 줬어. 여기는 그때 당시에 100% 다 줘버렸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아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때 걷으면 쌀을 11가마 정도 걷었어. 열 가마에서 열한 가마 사이, 그 호수가 100가 조금 넘는다니. 그래서 난 쌀 일곱 가마 받는다 앞으로 일곱 가마 받고 나머지는 그날 쓰는 거 경비 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중계에 집어넣어줬다고.” (홍SH, 1939년생, 1983~1987년도 이장, 대동계의 이중계로 중수를 받기한 자)

가구당 납부액은 처음에 보리와 벼 각 한 말로 되어 있었다가 정미 한 말이나 시가치의 현금으로 바뀌었고, 쌀값 등귀와 농가 수 감소로 인해 2019년에 현금 3만원으로 재규정됐다. 1983년쯤에 대동계가 이중계라고 개칭되고 중수됨과 함께 이세 수입 중의 일부를 떼어 이중계 소관 자금에 집어넣게 됐다. 이중계로의 중수와 공동자금의 증가 및 활용에 대해서는 4장 2절에서 더욱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공유재산은 개별 주체들의 세계들을 관통하는 연결통로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유재산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힘은 소유관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가지는 의미, 정확히 말하면 재산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생활방식에도 기반을 둔다. 성립된 1960년대 초부터 중수된 1980년대 초에 이르는 대동계 소관 재산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보면, 행정리 수준에서의 연결은 주로 이세 납부에 제한돼 있었다. 이세 납부는 지난 절에서 설명했듯이 이장 직능을 확대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 체계의 작동 방식과 마을 사람이 임원의 노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리 단위의 사회적 통합은 행정 체계가 대상화하는 ‘마을’ 영역과 행정보조조직 인원의 직능에 달려 있다.

1960~1980년대 동안 이세를 거둬서 임원 수고비에 충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동계에 비해, 1910년대 동리 통폐합 전에 형성되던 지역적 관계를 기반으로 결성된 상례조직과 반계는 마을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했다. 구동리에 기반한 결속과 분열은 3장에 언급했던 상례조직과 행정보조조직의 경계 불일치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농업생산과 여가 생활에서도 그 흔적이 드러났다. 1970년대까지 지속된 두레는 궁촌과 마장말이 한 집단으로, 여촌과 동촌이 각각 자연마을 단위로 하는 식으로 조직됐다. 공동노동이 끝난 뒤 궁촌 뒷동산 은행나무 밑에서 휴식을 갖고 큰잔치를 벌일 때 궁촌, 마장말과 여촌 세 가지 반의 사람만 모였고 동촌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놀이 집단의 경계는 상여를 공유하는 상례조직의 경계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IV-5 60, 70년대 농업생산과 농사놀이

“두레패들이 논에 모시고 노래를 하고, 그때는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썰과 리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하고 나서 호미씻어라고 한다고. 논을 다 땀으니까 이제 시간이 나니까 철엽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금년도 농사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가서 고사 지내고 철엽이라고 하거든. 그걸 그렇게 해서 돼지 잡아서 뭐 떡도 해가지고 같이 먹고 놀고 그랬지. 마을마다 모여서, 이 은행나무로 다 모였어. 저쪽에서 이 두레패가 깃대를 들고 와, 사물놀이 하면서. (중략) (동촌)저쪽 사람들은 저쪽에서 놀았고. 저 동촌이라는 데 좀 떨어졌어. 참, 한참 올라가야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따로 그냥.” (홍SG, 1951년생)

“6,70년대 그때는 모내기 그런 거 끝나고서 철엽이라고 그러지, 철엽. 그거 하루 노래하는 거야. 동네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뭐 돼지 잡고 그래서 하

루 놀았지. 농악이 있잖아. 악기는 상여하고 창고에다 보관했었어.” (이ZH, 1940년생)

상여와 농악기에 대한 소유 및 사용 상황은 지역적 연대가 구동리를 중심으로 맺혀 있었음을 알려준다면, 반유재산의 상대적 독자성과 활성화는 당시 행정리보다 자연마을이 더 중요한 사회 단위였음을 보여준다. 반계는 원칙상 반(즉 자연마을)을 단위로 결성하여 반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반장 수고비를 각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궁촌반과 마장반은 원래 하나의 자연마을에 속했고 분리 후에 여촌이나 동촌만큼 가구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지역적 연대를 여전히 유지하므로 재산공유관계를 맺어서 반계를 같이 한다. 남양홍씨 종중에서 쌀을 기증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다른 반계보다 경제적 기반이 견고해 이세를 거두지 않고 원금 대출에서 비롯된 이자 수입으로 반장 수고비를 충당했으며,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반계 재산을 이용해 궁촌·마장 내에서 안길 포장 작업을 먼저 실행했다. 원금이 소진된 2012년에 이르러야 다른 반계와 같이 반세 부과를 시작했다.

사례 IV-6 궁촌·마장 반계의 재산 운영

“옛날에 매년 이 원금은 안 받고 요 이자만 조금씩 받아가지고 반장의 수고비로 준 거야. 그러니까 딱 데는 쌀 한 말 번씩 꼭 받는데 우리는 안 받거든. 이장에게 줄 거만 걸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금이 우리도 이제 다 말라붙었어. (중략) 아까 내가 지금 3만원 받고 있다고 그랬지. 그건 3만원 받아서 이장 주고 그리고 반에서는 쌀 한 번씩 받으면 반장에게 다 주는 거야. (중략) 그때는 재정이 좀 많이 있어서 도로 포장도 하고. 왜냐면 그때 길이 안 돼가지고 저쪽 동네 이쪽 동네를 도로 포장해 놓은 거는 정부 돈을 지원을 안 받고 우리 돈으로 그냥 해 본 일도 있어. 정부에서 해주는 거도 있지만, 저기 새마을 사업으로 해결하지만, 이 큰 길도 못하고 그냥 있을 때 마을 안길을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마을 안길 포장을 먼저 했지.” (홍ST, 1934년생, 궁촌반)

사례 IV-7 여촌 반계의 재산 운영

“반장은 따로 줬지. (질문: 반장에게는 1년에 얼마나 줬어요?) 반장한테도 같았어. (질문: 반세도 여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로 했어요?) 반장도 그렇게 해줬지. (중략) 마을에서만 사용되는 길이 있었어. 반돈을 써서 포장한 거고. 그 외에는 정부에서 그때 새마을 사업으로.” (조YD, 1940년생, 여촌반)

“요 반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1년 보면 집집마다 쌀 한 말, 작년에도 2만 3천 원씩 해서 한 말에 2만 3천 원씩 다 냈어. 그거를 반장이 갖는 거야.” (조YJ, 1943년생, 여촌반)

반세를 징수한 지가 오래된 여촌의 경우에, 반세는 이세와 비슷한 형식을 취해 있어 이세와 유사하게 곁곡식에서 정미 1말로 변했다. 반계는 대동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대동계와 분리되어 있어 반유재산 관리를 독립적으로 한다. 반계와 반계 사이에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차이성이 존재하고 자주성이 유지된다. 대동계의 성립은 행정리 단위의 재산 공유 관계를 정립하되 반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반계는 대동계 성립 후에도 종전의 방식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마을공공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게이트볼장이 대동계 소관 자금으로 여촌반 소유 토지를 임대해 온 터 위에 건축된 것은 대동계와 반계 사이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나뉠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반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동계보다 활성화된 마을조직으로 볼 수 있다. 대동계 자금은 이장 수고비와 마을총회 비용에 한해 사용되던 시절, 반계는 이미 반원에 대한 자금 대출을 행하고 있었으며 도로 포장 같은 공공사업을 지원했다. 다만 재정 기반에 따라 반계 재산의 다과와 운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사례 IV-2에서 언급된 것처럼 큰일이라고 불리는 일생의례에 필요한 식기들은 당시 반계에 소장되어 있었다. 다음 부분에서 소개하듯 재산 공유 관계가 노동 교환 관계나 공동 노동 참여를 수반하기 때문에, 1980년대 전에는 행정정보조직에 의해 조직된 행정적 사무를 제외한 마을 일들이 대동계가 아니라 반계 그리고 상례조직을 통해서 조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동계가 반계를 포섭하지 못하고 반계들이 그 나름의 독립성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연마을에 기반한 지역적 연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행정리가 아직 지역주민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2) 재산 공유 관계에 의해 지어진 집단 경계

임원 수고비로 쓰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은 대부분(대출자금, 혼상구와 식기, 부동산 등)이 조직 구성원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다. 공유재산을 개별가구에게 의미 있게 만드는 공통의 생활방식은 공유재산이 구속력을 지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소유관계는 공유재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활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별을 지어 계원과 비계원을 구분하고 계원과 계의 연결뿐만 아니라 계원과 계원 사이의 연결도 맺히는 것은 바야흐로 재산 소유권과 용익권에 관한 규정이다.

- 가입 동기 겸 구성원 자격에 해당하는 용익권

공유재산에 대한 용익권은 원칙상 계 구성원에 한해 집단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대동계 구성원 자격의 취득은 가구를 단위로 하며 부계 혈연 원리에 의해 계승될 수 있다. 아버지가 대동계 구성원인 경우, 아들은 장가든 후 가구를 이끌어 대동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자동적으로 획득한다. 그러나 가입권의 부계계승은 부모가 계원으로 등록돼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계원의 부계혈족이라도 외지에서 살다가 부모 사망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 외지인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사례 IV-8 신입례 남부와 입회 자격의 취득

“여기 와서 사는 주민들이 의무로 하는 거지. 자식들하고 아무 관계없어. 우리 아들도 셋인데, 큰 아들 개도 지금 55세가 됐는데 나이가 좀 더 먹어

서 여기 고향에 와서 살겠다고 오면, 자동으로 이증계원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사를 왔어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자동으로다가 이 집까지 가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가 다 죽은 뒤에 아들이 내려왔다. 그럼 새로 오는 걸로 봐야지.” (조YJ, 1943년생)

외지에서 새로 이주해 온 가구라면, 마을에 정착한 이듬해에 신입례를 내고 나서야 입회 자격 나아가 공동물품에 대한 용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마을에 온 첫 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올해는 안 내도 돼”(조YJ, 1943년생)라는 관념에 따라 과도기에 해당하여 신입례 및 이세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하는 해이다. 신입례의 납부는 공유재산 사용권의 획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통과례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례 IV-9 신입례 납부의 의미

“처음에 이 동네에서 오는 사람은 얼마 내라 이에 들어와라 근데 지금 안 들어온다고. 왜 안 들어오면, 뭐 상여를 뭐 혼인을 해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전에 상여, 그릇이 이에서 총괄적으로 해놓고 쓰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이에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 (중략) 이증계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큰일이 났을 때 이에서 전부 와서 협조를 해주는 게. 이증계 드는 사람은 협조를 해주고 이증계에 안 드는 사람은 안 해주는 그랬어.” (조YD, 1940년생)

“그걸 갖다 쓰고 그러려면, 동네 가입을 하게 돼 있어서 동네에다 돈을 몇 푼 내고. 화전리에 만약 들어왔으면, ‘나도 화전리 주민이다’라는 표시를 해야 그 물건을 갖다 쓰고 그랬단 말이야.” (홍ST, 1934년생)

신입례 납부는 대동계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호적상 주민으로 등록된 것과 상관이 없고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대동계 가입을 ‘이(里)에 들어왔다’거나 ‘동네 주민으로 인정되다’고 표현하는 관습이 있다. 그리고 양평군 『통계 연

보』에서 통계된 세대수와 대동계통문에 실린 가구의 수를 대조해 보면,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90%이 상의 가구가 대동계에 가입되어 있었다. 전체 세대수와 가입 세대수 간의 차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점차 확대됐다.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세대수	109	106	120	149	247	332	325	333
대동계 가구 수	101	104	118	132	118	123	144	172

표 IV-1 1985~2020년도 화전2리 세대수와 대동계 가입 가구의 수 추이
(출처: 양평군 편, 『통계 연보』; 화전2리 마을회관 소장 「대동계 통문」)

마을 주민의 구술에 따르면, 상여·가마·그릇 등 의례용구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고 다른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 것은 대동계에 가입하는 주요 동인이었다고 한다. 환언하자면, 상여계와 통합된 후 대동계가 대동 상계의 성격을 갖게 되어 개별 주민의 삶에 더욱 깊게 개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해 온 자에 대한 가입 필요성을 부여하기도 했던 것이다.

공유 의례용구에 의한 결속은 일부분이 공유재산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용익권에 바탕을 둔다. 공유재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통제함으로써 계원과 비계원을 구분하고 계원에게 조직에 대한 책임 또한 기타 계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이주민이 대동계에 가입하는 계기였던 의례용구가 21세기에 들어서며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상실한 것은 의례용구와 용익권 자체보다 그들이 사람에게 지니는 가치야말로 직접적인 동기였음을 드러내고, 왜 공유 의례용구에 의지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속력의 이해 필요성을 제기한다.

용익권의 구속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는 공유 의례용구를 필요하게 하는 것, 즉 의례용구를 요구하여 이에 사용가치를 부여하는 의례 절차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려사람들이 여말·선초에 형성된 매장문화³³⁾와 종래의 주연(酒宴) 풍습을 만나 상·장례와 관련된 인근조직

33)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9일(辛未): “외방의 백성들은 그 부모의 장사 날에 이웃의 향도(香徒)를 모아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애통

을 활성화한 유교식 상·장례법(정승모 1990)은 20세기 후반 연구지역에서 나타난 장례 문화의 형성에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요소로 뽑힐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가에서 상례를 행하고 마을 주변에서 망자를 매장하는 경우, 상례에 사용되는 용구와 문상객 또한 산역·상여꾼을 접대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치장(治葬), 발인, 성분(成墳) 등 절차에도 많은 인력이 소요해 집안의 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계에 가입하면 의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교적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원과 품앗이 관계를 맺어 인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계원 간 품앗이 관계의 성립은 공유 의례용구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데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전에는 의례 절차 자체를 타당한 것으로 만드는 믿음 혹은 상상을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의례 절차는 사람들이 믿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의미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믿음에 담겨 있는 주관적 의미 부여 과정을 거치면 행위자의 의식 나아가 그들의 생명에 더욱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의례 절차와 이에 따른 의례용구의 구속력을 이해하는 데에는, 상징적인 것이 상상적인 것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하기보다 그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 현실에 더 적합하다며 인간관계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상하는 방식이 사회와 시대를 구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고들리에 2011: 51)라는 모리스 고들리에의 주장에 근거할 수 있다. 고들리에에는 증여 현상을 재검토했을 때 증여하거나 유통할 수 없는 신성재를 주목했으며, 신성성

하지 않으니, 예속(禮俗)에 누(累)가 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전의 그릇된 점을 따르지 말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엄격히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2월 20일(丁卯): “사람이 역질(疫疾)에 걸려 죽으면, 혹은 산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향도들과 결탁하여 매장하게 하는데, 자손이 있고 부유한 집의 장사에는 다투어 모여들어 묻어주고 있으나, 자손도 없고 가난한 집 장사에는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서, 혹은 산화(山火)에 사체(死體)가 타기도 하고, 혹은 호리(狐狸)가 뜯어먹기도 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곤궁한 사람의 장사도 전부 향도에게 붙여, 이를 감독하여 매장하도록 할 것이며.” (한글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온 것이다.)

이 사물들의 기원을 상상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상상에 기반한 우주적·사회적 질서에 의해 위계적·정치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다(ibid: 183-185).

주목할만한 점은 유교식 상·장례법의 정착이 우주적·사회적 질서를 제공하려는 성리학이 국가와 지배 계층에 힘입어 보급된 과정에서 결착됐다는 점이다. 상·장례는 모든 사람이 겪을 죽음을 다루는 의례이며, 고대로부터 국가가 개입해서 규범화하려는 대상이다. 신라 지증왕 5년에 반포된 상복제와 고려 성종 4년에 정해진 오복제도는 고대국가가 상례를 제도화하는 노력의 예로 들 수 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주자가례에 의한 상제와 장법은 사대부들을 통해 도입·시행됐고,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 등 법전에 성문화되어 국가 시책으로 권장되었으며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사족사회 나아가 민간에 퍼져 나갔다. 3장에서 인용된 대야동계 문서를 보면, 재지사족 주도 하의 동계가 상장례를 중요시하여 호상을 설치해뒀을 뿐 아니라 상장례 부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 내부의 계급 차이(예를 들면 상계원과 하계원의 차이)는 상·장례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드러나 있어 의례용구, 의례의 복잡성과 부조를 받는 방식 등의 차이로 표현됐다³⁴⁾.

3장에서는 조선후기 향촌사회에 대한 국가 행정은 재지사족에게 위탁되어 있었고 나라-마을-개인에 동시에 적용되는 질서를 추구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의례 절차에 대한 믿음과 공유 의례용구의 구속력은 당시 국가 행정과 같은 우주적·사회적 질서를 토대로 삼았다. 많은 인력과 재력을 요구하는 유교식 상·장례법은 왕실과 사족들에 의해 보급되었지만, 군주제 국가와 신분제도가 해체된 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환언하면 국가 행정이 체계화되어 그 나름의 행정적 질서를 갖춘 후 종전에 나라-마을-개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행정적 질서가 분화되고 부분적으

34) 예를 들면, 상계원이 상을 당한 경우는 계가 빈칭(殯廳) 3칸을 마련해 주고 장사 하루 전날에 제물을 갖추어 주고 치전(致奠)할 자를 보낼 것이고, 하계인의 경우는 성복 전까지 하소임이 일을 살펴줄 것이나 치전과 호상 등이 없다. (『座目』 「立議」(1878): “上契則殯廳三間, 自契中出材木造給爲旆(중략) 下契喪事, 良置下所任等, 成服前看護事. 一, 喪家喪事定日後即呈于有司, 有司發通於契中前期一日, 各具奠物致奠爲遣, 仍爲護喪返魂後罷歸爲守矣, 下契則無致奠護喪等事.”)

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륜으로서 자리 잡던 부분은 신분 질서가 무너진 20세기 후반에 작동하고 있었다.

연구지에서는 상가에서 장례를 치르고서 매장을 하는 풍습을 2000년대 전후까지 볼 수 있다. 선산이 없는 집안의 경우는 사유 토지에 매장을 했고, 이로 인해 마을회관 주변의 빈터에도 무덤이 세워지게 됐다. 상을 당했을 때 필요한 자금과 물자들은 각종 계 조직들을 통해 마련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일손의 조달이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반상차별 해소 후 양반였던 가문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하계를 동원한다든가 상두꾼을 고용한다든가 유학계를 결성한다든가 여러 대책으로 장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된 듯하다(정승모, 2002: 147-151). 한편 연구지역의 경우 지연적 연대와 상례조직에 의해 일손을 확보했다가 상례조직과 대동계가 통합된 이후 대동계를 중심으로 일손과 의례용구가 조달되었다.

사례 IV-10 상장례 시의 품앗이

“여기서 여촌반에서 사람이 돌아갔다 하면 돌아가는 날부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준비를 해주고 애를 쓰고 그랬지.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날은 다른 데서 여기 와서 상여도 메고 다 같이 와서 그날은 같이 보는 거고.”(조YJ, 1943년생, 여촌반)

2장에서 『농지분배부』를 분석했을 때, 유력 성씨였던 남양홍씨가 농지개혁 전에 종종 내부의 계층분화를 겪었고 농지개혁을 계기로 경제적 기반의 세력 쇠퇴 사실을 밝혔다. 1985년 대동계통문에서 기재된 구성원들의 성씨를 통계해 보면, 남양홍씨는 8가구로 주요 성씨들 중에 말위를 차지했다. 경제적 기반 동요와 인구 감소, 출세자 배출을 통한 명망 유지의 실패까지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남양홍씨 집안 구성원의 구술을 통해서 1950년대 이래 반상차별의 해소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성씨	이씨	김씨	엄씨	조씨	신씨	홍씨
----	----	----	----	----	----	----

가구 수	21	16	11	10	9	8
------	----	----	----	----	---	---

표 IV-2 1985년도 대동계 가입 가구의 주요 성씨 구성

사례 IV-11 상례조직에서 반상구별의 해소

“옛날에 아주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양반은 상여를 안 멘다고 그래가지고 잘 와서 해줬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너가 상여 안 메니까 우리도 너 거 할 때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놔두고 그랬었어. 50년도 조금 지나서는 저걸 했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지.” (홍ST, 1934년생)

“우리 집안은 왜 같이 공동으로 했느냐?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각 파별로 오야지가, 어른들이지, 오야지는 일본말이야, 그런 사람만 안 갔지. 그 □□은 다 공동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어느 집안이면 다 그렇게 했지. (중략) 확실한 출세라는 게 없어지니까.”(홍SH, 1939년생)

가령 경제적인 토대와 신분제에 기반한 반상차별이 20세기 중반에 해소됐다고 하면, 20세기 후반 상·장례 절차의 지속은 나라-마을-개인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우주적 질서가 국가 행정과 계급 분화에서 효력을 잃은 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생활방식을 형성시키는 요소로서 잔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물론 상·장례 절차와 이를 뒷받침하는 질서가 국가 행정 질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 내지 배제 대상으로 취급받아 지속의 어려움을 당면한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종전의 예법에 담겨 있는 윤리질서가 상·장례 문화가 변화된 후 어떤 형태로 재편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 재산공유에 수반된 노동참여

구성원으로서의 재산에 대한 용익권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공유재산이나 기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가옥들을 연결하는 마을안길을 예로 들면, 마을안길은 구역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보수작업은 구역 내 주민들을 동원하는 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은 집단 내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례 IV-12 마을안길 보수를 위한 부역

“옛날에 이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이 여촌반에서 예를 들어서 김ES네 가는 데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망가졌어. 그러면 다른 데서 와서 고쳐줄 사람이 없잖아. 여촌반 사람끼리 부역을 해놓은 거지. 반장이 얘기를 해서 언제 이거를 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나와라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고.”(조YJ, 1943년생, 여촌반)

“마을 안길도 나 혼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네 논밭에는 자기 혼자 고쳐야 되는 거지만, 다 같이 이용하는 길은 공공의 재산이나 마찬가지로야. 여럿이 같이 쓰는 길을 같이 고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부역이 되는 거지.”(김ES, 1968년생, 여촌반)

보수뿐 아니라 마을안길의 포장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유재산과 반원들의 부역에 의해 행해졌다. 반원이 되면 반유재산을 이용하는 권리를 갖게 된 동시 부역에 나가는 의무도 부여받는다. 부역의 참여 여부는 품행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이에 따라 부역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동네를 위하지 않는 거지. 동네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자기 몸만 아끼는 거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역은 개별 주민이 직접 만나서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전개하는 시공간이자, 개인의 집단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 자신과 집단의 관계를 체험하고 또한 마을의 일원으로서 부역에 나가야 마땅하다는 이치와 이에 기반한 상호 인정 과정을 체험하는 시공간이다. 자신 책임에 대한 체험이든 타인의 인정이든 마을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산 공유에 수반되는 노동 의무는 부역 참여 외에 일생의례에서의 품앗이로 표현되기도 했다. 사례 IV-2에서는 이미 궁촌·마장반계 구성원들이 잔치에 필요한 식기를 공유하고 잔치 때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행

위양식을 볼 수 있는데, 여촌 반원의 서술에서도 품앗이에 참여할 의무가 주로 같은 자연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에게 부과된 양상이 보인다.

사례 IV-13 반계 차원의 재산 공유와 노동 교환

“동네 큰일 있잖아. 큰일이라는 게 잔치. 말하자면. 환갑 결혼식 뭐 돌잔치 이런 거 다 집에서 했지. 장사도 집에서 했지. 지금은 다 식당가서 하지만, 옛날 마을 전체에서 다 했지.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이 다 왔어. 며칠 전부터 와서 일들을 하고 (중략)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다들 모인다시피 하고, 저 동네나 이 동네는 올 사람만 오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 안면이 있어 이러면 와서 해 주는 거고.” (김SH, 1959년생, 마장반)

“마을에서 사람이 돌아가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또 서로 품앗이 해놓은 식으로 했던 거야. 그냥 마을 일이니까. 상여 이거 해가지고 매다가 해놓은 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해놓은 거고. 그런데 마을마다 지역적으로, 여기서 여촌반에서 사람이 돌아갔다 하면 돌아가는 날부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준비를 해주고 애를 쓰고 그랬지.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날은 다른 데서 여기 와서 상여도 매고 다 같이 와서 그 날은 같이 보는 거고.”(조YJ, 1943년생, 여촌반)

반계는 원칙상 자연마을을 단위로 결성된 것(단 궁촌·마장반계의 경우는 두 개 반으로 분화되었기 전의 구동리와 경계가 일치함)이기 때문에, 품앗이에 참여하는 의무가 과연 재산 공유 관계에서 비롯되느냐는 질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례조직의 경우를 아울러 대조해 보면 재산 공유 관계와 노동(교환) 참여 사이의 상관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장례를 치렀을 때 품앗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했다. 하나는 같은 반 사람에 한해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의례 준비였고, 또 하나는 반 범위를 넘어 결성한 상례조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장례날 품앗이었다. 후자는 상여계에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거주지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노동 교환 관계가 흔히 재산 공유 관계에 수반되는 것은 상례조직 병합 후 재산이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리 단위의 노동 교환 집단도 형성됐음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사례 IV-14 상여계 통합 후 노동교환 양상과 ‘우리’ 집단 범위의 변화

“거기 상여를 그때 불살라 버리고 계도 합친 거야. 상여를 거기는 따로 쓰고 이쪽에 장사 지내서 손님네처럼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같이 내 일 네 일 없이 내 일 같이 해놓은 거야. 그전에는 따로 했었고 동촌말만.” (조 YD, 1940년생)

앞서 언급했듯이 궁촌, 마장, 여촌과 동떨어진 동촌은 초기 그 나름의 상여계를 운영했으며 기타 자연마을과 상여도 곳집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화전 2리에 있던 두 상여계는 하나로 통합됐다. 대동 상계의 결성과 함께 동촌과 다른 자연마을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던 주인과 손님의 구분,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졌고 동등하게 일하게 됐다. 물론 여기서 재산 공유 관계에 따라 노동 교환 관계가 성립됐다기보다는 노동 교환 관계를 성립하고 나서 재산 관계가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재산 공유 관계와 노동 교환 관계는 어느 것이 선행적으로 성립되는지와 상관없이 결국 적용 범위가 일치하게끔 서로에게 맞춰 변하기 때문이다.

상여계와 같이 상례조직인 상조계를 상여계와 대조시켜 봄으로써 재산 공유 관계와 노동 교환 관계의 공변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상조계는 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결성된 조직인데, 관계의 친밀성을 입회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규모가 상여계보다 작다. 상·장례에 필요한 물건과 인력 확보를 지향하는 상여계와 달리, 상조계는 상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상조계에 가입한지 여부를 막론하고 상갓집에 물질적·금전적 부의를 보내는 관습이 있으나, 상조계 구성원은 계원 상의 하에 정해진 금액대로 부의금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타 주민과 구별된다.

사례 IV-15 상조계

“상조계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거나 어머니가 있거나 자손들이 계를 모는 거야. 이제 막상 장례를 치르게 되면 옛날에는 어려웠

어. 살기가 더 어려워 가지고 통장이라는 거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돌아갈 적마다 쌀을 한 말이라든가 반 말이라든가 이렇게 곡물로 가져가서 한 사람도 있고, 돈으로 갖다 한 사람이 있고. 자기네 그 막둥이를 당했을 때는 그걸 또 타는 거 그게 상조계이야 (중략) 이중계에서는 그냥 몸이 가서 때워주는 거고 개인적으로 조금 주는 거고. 상조계에는 규정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이면 10만 원 ,쌀 한 말씩이면 쌀 한 말 이렇게 그 규정대로 가져가는 거고 ” (조YD, 1940년생)

요약하자면, 상조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등가적 금전·현물 교환을 제도화하는 소규모 집단이다. 재물상의 부조를 규정하되 품앗이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 반면에 상례조직과 이후 이를 흡수한 대동계의 경우에는 구성원 사이의 상장례 부조가 ‘몸이 가서 때워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노동 교환에 중점을 둔다. 대동계와 비교해 보면, 상조계는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재물의 움직임도 일대일 관계 속의 등가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달리 대동계에서는 구성원이 조직에서 공유재산 사용 혜택을 받고서 기타 구성원과 품앗이 관계를 맺는 식으로 갚는다. 공유재산은 한 사람이 아닌 전체 계원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일 등가교환으로 주고받기가 어렵고 그 대신에 계원으로서 대동계 규약을 지켜 다른 구성원이 상을 당할 때 힘을 보탬으로써 갚는 것이 보통이다. 구성원 사이의 품앗이는 입회되면서 조직과 맺게 된 계약에 의해 확보되고 구성원으로서 짓게 된 책임이어서, 자연스레 재산 공유 집단과 경계가 일치한 범위에서 진행된다.

집단이라는 존재는 중개로 개입해 있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계산하는 선물이나 노동 교환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과 집단 사이의 교환에도 부채를 정략적으로 계산해서 갚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비대칭성과 비즉시성이 돋보인다.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과 비즉시성에 기반해 계원으로서 지게 된 부채를 집단에 재물을 바치는 대신 품앗이를 여러 번 참여하는 식으로 갚는 행위양식이 형성됐고, 아울러 개별 구성원과 집단 사이의 2차 교환도 일어났다. 기타 구성원이 부채를 갚기 위해 주는 품은 공유재산과 구별되는 선물로 간주되어, 힘을 들여 도와

주는 기타 구성원들에게 보답으로서 사례비나 음식 대접을 주는 2차 교환을 환기했다. 2차 교환에서 받은 혜택은 공유재산과 그 구속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개인에게서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공동노동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2차 교환에서의 답례는 개개인에게 주는 대신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대접한다든가 계에 수고비를 기부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절에서는 공동노동으로부터 비롯된 수익을 분배하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2차 교환의 원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요약하자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동 교환에 참여해야 하는 개인과 집단 간의 교환 모델은 개별 구성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증여한다. 하나는 수증자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재산에 대한 용역권이고, 다른 하나는 수증자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구성원의 노동력이다. 후자는 전자와 다른 선물을 구성하여 별도의 답례를 요구한다. 개인과 집단 간 교환의 비대칭성과 계산 불가능성, 그리고 노동이 답례를 요구하는 2차 교환은 공동으로 재산 공유 집단 구성원을 결속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지역사회개발 사업에서 마을재산이 증가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됐다.

4.2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대동계의 활성화

3장에서는 동계류 조직이 마을재정기구로 단순화되면서 행정 체계의 수요에 부합해 말단 행정을 위한 재원으로 포섭됐다는 20세기 초반 동계류 조직의 변천을 소개했다. 동계류 조직은 행정 체계에게 재원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마을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마을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금곡을 제공하는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행정 체계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계의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중요시하지만, 마을, 마을일과 마을재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르다. 4장 1절은 마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이는 공유재산과 이를 매개로 구현되는 공적 영역을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1950년대 이래 행정 체계 추진 하의 지역사회개발이

어떻게 대동계 소관 재산과 관련을 지어 나아가 대동계 및 마을 사회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는지 다루고자 한다.

1) 지역사회개발 전략의 기본적 골격

해방 후의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제 하 농촌 개발의 특징을 회고하자면, 생활단위인 자연마을(부락)이나 행정단위인 구를 조직 단위로 중요시하면서도 그들을 애국심의 공고에 방해가 될 요소로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 구장을 ‘인민의 부형(父兄)’이라고 부른다는(윤해동 2006: 234) 진흥회에 호주부(戶主部), 부인부(婦人部), 청년부, 소년소녀부를 설치하든가 마을을 하나의 가족에 비유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마을에서 금곡을 거둔 금곡으로 경비를 충당했다는 점 등 특징을 들 수 있다. 그 중 부락 단위의 운동 경향은 농촌진흥운동 전부터 확립되었고 1940년대를 전후하여 구 중심의 조직방식에 대체되었다. 1920년대 초반에 나온 『京畿道農村社會事情』을 보면, 부락은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을 공유해서 사상, 생활방식과 이익도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활단위로 여겨져 주목받은 것이었다(京畿道內務部社會課 1927[1924]: 144-147). 여기서는 기존의 생활방식에 의해 형성된 지역적 연대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935년 「갱생지도부락 10개년 확충계획」으로 막이 열리는 농촌진흥운동 2단계에 농가 중심의 운동 방침이 제기되었고(윤해동 2006: 25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들어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및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자연부락 대신에 말단 행정 구역인 구와 그 하위조직인 반을 기반으로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해방 후 개별 지역에서 외국 종교단체, 유엔기구와 유네스코 등 조직이 주관하는 개발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된 개발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행되었을 때야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1950년대 말에 주한미대사관 및 경제원조담당자들은 한국에서의 전후 복구가 일단락되고 경제발전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다고 판단

하여, 미 국제협조처와 경제 조정관실을 주관자로 해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역사회개발 한미합동 실무반’은 경기도 광주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행했다. 예비조사 결과에 의해서, 상부상조의 협동 전통을 이용하면서 마을에 산재하는 불완전 취업 노동력을 동원하는 사업 방침을 세우고 지역사회개발을 “커뮤니티의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를 국가적 생활(단위)로 참여시키며 끝으로 이들이 국가발전에 완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주민들의 노력을 합쳐 추진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허은 2004: 280-286). 1959년 5월 아시아 및 극동지역사회개발회의에서 사업 원조를 담당했던 국제협조처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가 갖는 자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원조가 필요할 때 지역의 자체자원을 보강하는 정도에서 이를 받아들여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조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권태준·김광웅 1981: 52-53).

식민지시기의 농촌진흥운동과 비교해 보면, 1950년대 말에 발족한 지역사회개발은 현지 인력과 협동 관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전자와 유사하고, 자조정신으로 지역 주민을 동원하면서 원조를 제공하는 관민 협력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195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제시된 정부지원-주민참여 모델은 20세기 후반기 개발사업의 근간이 되어 국토가꾸기 사업, 새마을운동과 오늘날의 농촌진흥사업에 이어 수행돼 왔다. 자재와 노임의 지급 여부는 1980년대 말에 발간된 『지방행정사』에서 마을공동의 생활환경 사업과 개별가구의 생활환경 사업의 추진 방식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을 정도로 당시만 해도 개발사업 추진 전략에서 중시되었다. 자재 및 노임 지원은 사업에 물적 토대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에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인원 동원 방식으로도 활용되었다.

구분	시공방식	대상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현실노임지급방식	도로개설, 포장,	자재, 노임은 전액

		측구경계석 설치 등 특수조림 가드레일 설치 공공간관 정리	지원하여 시공
	자력노임방식	보도블럭 설치 가로수 식재 사방일반조림	자재 전액지원 노임은 50% 지원
	새마을방식	뿔골목 가꾸기 지붕개량 농로개설	자재 전액지원 노임 주민부담
자력사업	자력사업	울타리 개량 간판정리	자재 및 노임 전액 주민부담

표 IV-3 1970년대 국토가꾸기 추진 체제(한국지방행정사편찬위원회 1987: 1278)

현지 인력 활용은 지원사업이나 자력사업이 모두 채택하는 기본 방침이었고 고대국가나 식민지국가 시기에도 자주 쓰였다. 지역사회개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원 방식은 억압적 국가기구에 의한 수단 혹은 국가 행정 자체의 정당성이 아닌 참여자 본인과 그 소재 집단의 이득을 근거로 제시된 수단이다. 인센티브 제공은 단순한 물질적 혜택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확립과 함께 통치담론의 조정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권장하는 ‘자조’ 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1959년 국제협조처가 제시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정의나 나중의 새마을운동에서 제기된 기본 정신이나 ‘자조’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전자의 경우 마을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신을 조직화하고 마을 사회 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자조를 정의했고, 새마을운동에서는 지도자, 주민협동체계와 자체 자금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자조’의 내포를 더욱 구체화시켰다(내무부 1971: 46). 담론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을 재검토한 인류학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이 ‘발전’과 아울러 ‘후진’, ‘가난’에 관한 지식 형식을 규정하고 발전을 위한 실천을 통제하는 권력 체계와 자신을 후진적 존재로 인식하는 주체성을 생성시키는 발전 담론에 기반하다고 비판받은 적이 있다(Escobar 1994: 5-10). 담론 분석은 푸코가 권력 이론을 주권이론과 구분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과 구분한 데 제시한 권력 분석

처럼(푸코 2015: 44-53), 지식을 비롯한 도구들을 통해 권력에게 작동 공간을 마련해 주고 주체를 구성하는 장치 혹은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사업에서의 자조 담론을 들여다보면, 마을 발전과 주민으로서의 참여 및 봉사를 ‘선(善)’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선과 선 지향의 정당성을 통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으로서의 주체를 부르는 식으로 작동하는 행정 권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동원 방식은 주민·국민으로서의 참여 권리를 부여해 주는 한편, 국가 행정이 생산하는 지식이 마을 사회의 발전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다.

주민 동원의 편리를 위해 지식 외의 다른 수단도 사용되었다. 1961년에 내부무에서 ‘조국 근대화 사업’을 위해 동리 조직을 강화하며 그 하부조직인 통·반을 보강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1965년에 동리에 임립했던 주민조직들을 통폐합하고 동·리개발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치가 아울러 시행됐다(한국지방행정사편찬위원회 1987: 2380-2383). 오늘날 사람들이 익숙한 말단 행정보조조직, ‘마을’이라는 사회 단위를 행정리와 동일시하는 경향 모두 이 시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마을 조직에 대한 재편과 간소화는 지역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식과 접근 그리고 직접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기법(스콧 2010: 130-131)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말단행정 보조조직이 마을 사회 자체의 인적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을 사회 민속에 발목을 잡으면서 거꾸로 마을 사회 민속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3장에서 설명했던, 반장 선출에서 ‘수고’ 개념의 작용과 행정 보조 사무 증가에 따른 수고비 관행의 지속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을에 부녀회, 노인회와 청년회 등 주민조직들을 설치해 두고 각 조직 회장들을 통·이장과 더불어 임원으로 두고 동리개발위원회를 편성하는 조치는 말단 행정 구획을 사업 추진 단위로 삼는 기본적인 전략의 연장선상에 놓인 동시에, 마을을 일가로 은유하는 전략도 아울러 사용한다. 구장을 ‘일가의 부’로 표현했고 농촌진흥운동 시기에 부락 단위의 진흥회를 호주부, 부인부, 청년부와 소년소녀부로 나누었다는 식민지시기의 마을 통치책과 일맥상통하면서도 가부장제의 색깔을 희미하게 한다

는 차이점을 지닌다.

요약하자면, 해방 후의 지역사회개발은 식민지 통치가 남긴 행정조직 기반을 인수받은 한편 말단 행정 구획에 도구적인 의미뿐만 감정적인 의미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으로 대상화된 주체에게 봉사를 요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혜택과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행정리가 마을이나 커뮤니티로 불리고 행정 체계에서 더 많은 각광과 가치부여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식민지 정부도 마을을 지연적 결합에 기반하여 심리적·문화적·경제적 일체성을 형성한 사회로 이해해 마을을 단위로 각종 사업과 운동을 추진했지만, 마을의 상징적 의미와 마을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부락감정’을 ‘애면애국심’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마을 사회의 내부 결속력을 잠재적 위협 요소로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목표 중의 하나로 본다.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원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구축을 목표로 지향한다(Dore 1981: 18; 권태준·김광웅 1981: 143). 마을 사회의 통합과 협동 정신은 수단일 뿐 아니라 사업 그 자체의 목표이기도 했다.

지역사회개발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나 인센티브 제공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연대의 구축을 긍정하는 전체에 기반을 둔다. 환언하면, 개인은 지역 사회 주민으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 자체는 주민 권리로 알려지어 제공되므로 공민(公民)으로서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푸코가 안전장치라는 통치술의 특징으로 제시한 요소들이 드러나는데, 즉 통치해야 할 사건이 개인적이기도 하고 집단적이기도 한 현상으로 상상되고 통치 대상도 개인의 무리 대신에 집단적인·정치적인 주체이자 객체로 전환된다는 점이다(푸코 2011: 76-80).

2) 지역사회개발을 계기로 증가한 공유재산

-부역에 의한 공유재산 창출

앞선 절에서 소개한 공유재산의 결속 원리에 따르면, 공동노동은 재산에 대한 공유와 용익권을 수반하는 일종의 의무이다. 자연마을 안길의 보수는 바로 구역 내 생활하는 자들의 부역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었다. 행정리와 대동계 성립 초기에는, 행정리 단위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가구들에게서 거둬서 임원 수당과 마을총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이세가 거의 전부였다. 이와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의 공동노동 혹은 부역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보다는 행정기관 주도 하의 면도로 보수, 마을도로 포장과 조림사업을 위주로 하는 양상을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정부의 행정력과 자재나 노임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력과 외부 자원에 의해 벌어진 이 공동노동은 결국 행정리 단위의 공유재산을 창출하고 말았다.

사례 IV-16 부역에 의한 공유재산 창출

“(질문: 왜 신입례를 내야 마을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나가는 물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길 같은 것도 새마을사업을 많이 해서 번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대가를 얻기 위해서 ‘나도 이 동네주민이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야. (중략) 그 전에는 대동계에서 쌀을 걷어서 그걸 이장을 다 줬어. 남는 돈이 없어 하나도 (중략) 내가 이장을 맡아서, 내 전에 이ZO 씨라고 그 양반이 봤다가 나를 인계해 주는데, 결산서가 마이너스 2천원으로 가져왔더라고 (중략) 그런데 그전에 심은 나무가 굵어가지고 간벌하게 돼 있었어, 내가 이장 볼 적에. 그제 어마어마했지. 그때 나무를 팔아서 3000만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 해에, 돈 많이 모이는 해에 대동계를 키우자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중계로 바뀐 거지.” (홍SH, 1939년생, 1983~1987년도 이장).

마을주민은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노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주인의식은 환경 개선 및 미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책임감을 불러오는 동시

에, 책임지는 대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결국 생활환경과 그 안에 있는 자연물이나 인공물들은 마을사람들의 공동노동을 거쳐서 신성성을 지니는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고 일후에 선주민이 이주민에게 신입레 납부와 대동계 가입을 요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되었다. 행정 체계에 의해 추진된 지역사회개발이 부역 동원을 통해, 구성원을 결속하고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공유재산을 창출하게 했다는 이 현상은 행정 체계의 행위가 사회 민속과 결합해 행정리 단위의 사회 집단을 만든 예로 들 수 있다.

공동노동 대상이 되면서 공유재산으로 인식된 생활환경과 시설 외에, 대동계가 관리·운영하는 공동 자금도 지역사회개발을 계기로 증가했다. 그중 대부분은 분수조림이라는 제도의 시행으로 생겼고, 1980년대에 대동계가 재정비되고 계장, 총무와 감사로 구성된 임원진을 갖추며 자금대출 기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됐다. 분수조림제도의 확립은 대한제국 말기 일본 이주민의 개간 및 식림 청원이라는 배경 하에 이루어졌다. 노일전쟁 후 한반도에 더욱 깊게 간섭하기 시작한 일본 당국의 압력 하에, 일본 이주민으로 하여금 산림 소유주와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부분림의 설정을 허가하는 국유산림임야부분규칙을 통과시켰다(정세경 1984: 4-7). 한일병합 후 삼림법이 공포되며 종전의 부분림제도는 폐지됐고 산림을 조림한 대부자에게 양여하도록 하는 조림대부제도가 실시됐다. 1931년 7월 23일 조선일보에 실린 신문 기사를 보면, 1930년대 초반에 이르러 지방재정의 부담과 산림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식민지 정부가 분수조림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유림에 한해서 적용된 한말 시기의 부분림제도와 달리, 이 시기 분수조림의 적용 대상은 개별 지주가 소유하는 산림까지 확대됐다.

조선일보, 1931.07.23. 「경기도의 분수조림계획」: “사방공사 지역 내의 조림에는 종래 지방비에서 기분보조(幾分補助)하여 이를 조합하였던 바 임야소유자도 묘목대(苗木代), 식부(植付), 비료대 등 다액의 비용을 요하여 당분수의 없는 임야에 대한 투자로서는 상당한 고통이요. 동시에 부재지주의 많은 지소(地所)에서는 조림이 예기와 여히 진보되지 않고 사방식재

상 곤란을 감해야 경기도에서는 타도보다 솔선하여 내년 봄부터 이런 사방지역 임야 전부에 대하여 도지방비에서 장미(將米)의 수익 분수할 계약으로 일체의 조림비를 지변(支辨)하여 직접 도림(道林)을 행하기로 되었다. 이로써 소유자는 당분수익이 없는 산에 투자하는 고통도 없고 도지방비는 영구히 회수되지 않는 보조금 지출의 불리에서 탈하여 장래의 재원을 작(作)하게 되어 쌍방이 모두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방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와 목재 및 땃감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의 의무를 가하며 식민지시기의 분수조림제도를 이어받아 보조제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조림 및 산림관리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산림계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후자의 경우, 산림계는 조림 및 관리에 소요된 노동을 구성원에게 분담시키고 산림소유주와 수익을 분수할 수 있었다³⁵⁾. 그러나 산림계와 산림조합에 의한 식림이 이상적인 상황일 뿐이고, 실제로는 행정리를 단위로 인원을 동원시켜 마을 구역 내의 산에서 식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전2리에서는 산림계를 별도로 조직되지 않고 부역이라는 형식으로 각 반 가구를 동원해서 조림·관리·벌채 작업을 하도록 했다. 1980년대 초반에 굵은 나무를 벌채해 임목 간 간격을 조절하는 시기가 되어 임목수확으로 수입이 나왔다. 이 수입은 분수조림 계약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마을 사이에 분배됐다.

사례 IV-17 분수조림

“분수조림이라고 그랬어. 산 임자가 딴 데 살고 그러면 그 산 임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산에다가 나무를 100개를 심었다 하면 이

35)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제4조: 농림부장관은 임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회원에게 노동의 분담을 부과시킬 수 있다.

제6조: (전략) 조림 또는 산림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보상 또는 수익의 분수를 실행했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걸 3·7제, 4·6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임자하고 돈을 나눠 쓰는 거야. 그 나무 심는 거는 부락 사람들이 가서 부역으로 심는 거야. 거기서 생산 되는 거를 잘라가지고 팔면서 산주는 30% 주고 동네서 70% 쓰고 이렇게 돼.” (홍ST, 1934년생)

소유자가 마을이 아닌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역은 마을 사람에게 낮은 일이 아니다. 화전2리의 대부분 산림이 남양홍씨에 의해 소유되었지만, 다른 집은 별초 부역에 참여함으로써 산림자원에 대한 용익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2장에서 소개한 바가 있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주요 연료가 연탄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지속된 이 관습에서는 노동으로 용익권을 교환하는 행위방식이 보인다. 그러나 분수조립제도에 의해 조직된 공동노동은 목재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수입을 창출했으므로 부역이 무보수 노동이라는 마을사람들의 이해로 처리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다.

사례 IV-18 분수조립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처분

“공동 작업하는 걸 부역이라 그랬어. 부역을 해서 그 인건비를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봉사정신이지. 그러니까 봉사정진으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모든 재료는 국가에서 해준 건데 묘목이나 뭐 비료나 뭐 이런 거 다 국가에서 해주고 내가 부역만 나가서 일을 한 건데. 이를 팔면 자산 몇 푼 안 되거든. 그걸 나눠주면 누구를 줘? 그때 와서 일했던 사람이 동네 살아도 100% 똑같이 일을 안 했고. 사정상 안 나오면 안 나가. 그러니까 돈도 그걸 따져 가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공동으로 써라 마을 공동으로 써라.”(홍SH, 1939년생)

“(질문: 왜 수입을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부역이라고 그랬어.”(이ZH, 1940년생)

당시 재산 처분을 담당한 홍SH 이장의 서술에 따르면, 공동노동의 수입은 여러 고려로 인해 분할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처리됐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역이 원칙상 무보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역을 수익을

나뉘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마을 임원이 아닌 주민의 서술에서도 관찰된다. 그러나 농외소득의 증가를 목표 중의 하나로 두는 분주조림제도는 처음부터 식림을 환경보호행위 겸 경제행위로 삼아 나무의 경제적 가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로 가정하며, 식림이라는 노동 자체의 교환가치도 인정하여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산림소유자와 식림한 자 사이에 분배하도록 규정했다. 결국에는 마을 사람에게 무보수 노동으로 이해된 조림 부역이 목재 시장과 노동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익을 보았다. 공동노동으로부터 비롯된 이 수익은 마을사람의 생각 방식에 의해서는 분배될 수 없었다. 공동노동에서 마을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준 자재도 사용되었다는 점과, 개별 주민의 노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수익 분배는 불가능하거나 귀찮은 일로 여겨졌다. 여기서 재산 소유권의 구속력이 다시 나타나는데, 정부 지원은 노동 보수로서 인센티브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의 분할 불가능성으로 마을 사람을 결속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속력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을 사회에서 공유재산을 신성하고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주민들의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 마을발전기금의 마련과 부조 담례의 현금화

지역사회개발을 계기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의 증가는 공동노동을 거쳐 공유재산으로 인식된 부분과 외부에서 들어온 수익뿐 아니라, 납부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계원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부분도 있다. 상여를 사용하고 계원들에게서 부조를 받은 상갓집이 대동계에 납부하는 상여돈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사례 IV-19 상례부조 방식의 변화

“이중계라는 거는 자금, 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상여 메고 산소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보통 3일장을 지냈다고. 그러면 이제 수고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돈들을 내놓는다는 말이야. 상가 댁에서 마을에다 내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50만원 내는 사람

도 있고 1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개가 생긴 거가 이때부터는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돈으로 얼마 정도 마을에 찬조를 했다 이거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고 장사 지내면 3일장 끝나면 동네 분들 오시면 술대접하고 점심 대접하고 그것만 했어. 그전에는 내놓는 게 없었고.” (조YJ, 1943년생)

상여돈은 상갓집이 상·장례에서 도와준 마을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계에 기부하는 사례비를 가리킨다.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관념과 공동노동에서 비롯된 수익의 분할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논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례의 현금화 현상에 주목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떠안은 부채는 계원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 품앗이에 참여함으로써 갚을 수 있으나, 품앗이에서 다른 계원이 들인 힘은 새로운 부채가 되어 답례를 요구한다. 처음에는 현물 부조나 품앗이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대동계가 이중계로 중수되었고 상례조직과 통합된 시기를 전후하여 계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관습이 형성됐다. 상갓집의 형편에 따라 사례비의 금액이 다르지만 음식 대접 대신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대세였다.

사례 IV-20 상여돈과 마을발전기금의 관계

“상여돈이 나오면은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 사람만 일을 한 게 아니잖아. 전체 동네 사람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쥐 봤댔자 쓸 거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마을에 재산이 없잖아. 공동 작업이나 뭐 이런 거 할 재산이 없으니까 이걸 마을에서 쓰잖아. 마을 기금으로 집어놓은 거야.”(홍SH, 1939년생)

“여기 자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 데가 없고, 동네 사람한테 받아서 자금을 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받는데, 옛날에 그 돈이 상여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장사 한 번 지내면 한 2,3백만 원씩도 들어오고 그랬거든, 이중계로. 그런데 지금은 돈을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홍ST, 1934년생)

부조 답례의 현금화는 마을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 대동계 지출이 증가한 경향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1989년에 대동계와 상례조직이 통합된 후 상여돈은 대동계 자금에 흡수되어 이세와 함께 마을재산의 주요 재원을 구성했다. 마을 공동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상여돈은 더욱이 중요한 수입원으로 여겨졌다.

지출사항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임원수고비	이장	쌀 7석	쌀 7석	쌀 7석	쌀 7석	쌀 7석	쌀 7석
	총무	7만원	8만원	8만원	8.7만원	9.2만원	9.2만원
	부녀회장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새마을지도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총회/부역 식대 혹은 주대		쌀 5말 17만원	15만원	13만원	18만원	쌀 4말 17만원	20만원
마을환경 정비		/	/	252만원	36만원	448만원	1005만원
공동시설 보수		/	/	59만원	4만원	7.5만원	5.5만원
체육대회 등 행사 참가비		/	/	/	5만원	10만원	/
노인회 관련		/	/	/	14만원	4만원	14만원
접대비/감사패		/	/	/	16만원	14만원	4만원
서류대		/	/	7만원	2만원	4만원	2만원
기타		/	/	1만원 (재산세) 18만원 (이씨 종중 묘 이장)	0.4만원 (재산세)	0.4만원 (재산세)	0.4만원 (재산세)

표 IV-4 1980년대 후반 대동계 자금 지출 상황(금액 일부 단수처리)

1980년대 후반 공유자금 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마을환경 정비에 소요된 경비는 지출 중 가장 큰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해방 후의 지역사회개발은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델을 채택하나, 마을 사회 자체의 자원을 가능한 한 활용하는 방침을 이어받기도 한다. 특히 앞에서 소개했듯이 새마을운동 기본 정신으로 내세워진 ‘자조’는

마을에서 자체 자금이 갖추어지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내부무 1971: 46), 마을 주민이 주체로서 사업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자재나 자금 지원이 제공됐지만 점차 줄어든 추세이었고, 공사 후 마을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는 주로 마을 주민에 의존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비용에서 마을 주민이 자부담하는 부분은 이장 수고비를 넘어 대동계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성장하고 마을 사회에서 기존했던 자금 마련·운영 모델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가 됐다.

답례 현금화를 비롯한 자금 마련 수단의 창출은 개발사업 자체의 합리성이 도전을 당하지 않은 전제 하에만 가능하다. 개발사업 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마을환경 정비 활동이 반항을 일으킨 대신 자금 창출에 몰입하는 행위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부역이라고 불리는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 구술이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사례 IV-21 부역에 대한 기억과 서술

“내가 일한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게, 노력동원 나가는 게 부역이라고. 그거 많이 했지. 왜냐하면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 여기 차가 많이 댕기기 시작을 했는데 도로가 좁잖아. 도로가 좁으니 도로 구부러진 데 넓히는 작업 또 도로 위에 자갈 갖다 까는 작업 이걸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게 지고 가서 했어 (중략)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나이야, 80대 넘는 사람들.”(조YD, 1940년생)

“도로 포장 안 됐단 말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화전리 살지만 용문면에 나가서, 용문면에서 화전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 ○○라는 데까지 가서 부역을 했다고 (중략) 그때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때는 못 살고 있었으니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그때 뭐 부역으로 했지만은 하여튼 그때도 말도 잘 듣고 잘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 없었으면은 못 살아.” (조YJ, 1943년생)

“우리 어렸을 때 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인

심이 좀 박해졌지. 서로 협동정신은 좀 많이 침체되고 개인 위주로 많이 살아가는 거지.”(홍SG, 1951년생)

“마을 부역이라는 것을 돈들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다 동참하고 그때만 해도 참 인정 있고 정감 있게 했지. 일들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해.”(김SH, 1959년생)

“부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의 말이란 말이야. 그게 일제의 잔재가 남은 용어인데 (중략) 부역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 옛날 그 어원이 나빴지. 지금은 마을공동체 활동이지. 쉽게 말을 바꾸면 공동체 활동 또 아니면 마을의 재능기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김ES, 1968년생)

위에서 인용된 내용을 보면, 세대에 따라서 부역에 대한 기억과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 6·25전쟁 전에 출생한 자들은 부역을 회상할 때 면에서 화전2리로 할당된 구역에 대한 포장 및 보수 작업을 먼저 떠올리고 부역을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해해 자신의 몸과 국가의 운명을 연결시킨다. 그들과 달리, 50~70대 면담대상자는 부역이라면 새마을운동에 관한 경험을 위주로 상기하고 ‘협동정신’이나 ‘인정’, ‘인심’을 중심으로 이를 서사화한다. 부역 경험 및 기억의 세대 차이를 통해, 부역이라는 노동력 동원 방식이 새마을운동을 거쳐 착취적 의미를 벗고 온정적·긍정적인 의미를 띠게 될 뿐 아니라 국가가 아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역을 조직하게 하고 작업 내용을 정하는 데 국가가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지원자(支援者)의 모습만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이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처럼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을 주민’을 만든다.

마을이라는 사회 단위를 표상해낸 데에 있어서 국가뿐만 아니라 마을 공유재산과 공동노동에 대한 마을사람의 이해도 기여했다. 새마을운동 시의 부역과 1950년대의 부역을 비교해 보면, 노동 대상이 마을 외부 구역과 국가 혹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마을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 의무가 재산에 대

한 공유권이나 용익권을 수반한다는 관념에다 마을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부역이 행해졌음에 따라 도로, 하천과 여러 공동시설을 공유한다는 의식과 아울러 ‘마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지 및 확신은 강화됐다.

위 구술 자료에서 ‘마을’ 혹은 ‘공동체’와 같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발전’이다. 먼 도로를 대상으로 하든 마을환경을 대상으로 하든 부역은 ‘살기 좋게 만드는’ 또는 ‘마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정비를 포함하는 각종 ‘공동체 활동’은 바로 ‘발전’과 ‘마을’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정당성을 획득했고 나아가 공유재산을 마련하는 각종 시도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상여돈 기부 관례화는 그 중 일례일 뿐이고, 그 외에도 부녀회의 공동구매, 이주민에 대한 마을발전 기금 부과와 마을 임원 이세 면제 혜택의 취소 등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중 정부의 지도를 받아 전개된 부녀회 활동이 존재했으며 상여돈 관례화와 이세면제 혜택의 취소처럼 마을에서 공공의 일을 처리해 왔던 행위양식을 이용하거나 변모하는 시도도 활동 범위 내에 포함됐다.

사례 IV-22 마을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

“시장이나 뭐 어디 가서 미역 뭐 북어 뭐 이런 거를 사다가 만약에 100원에 사다가 거기다 한 20원 붙여서 120원에 파는 거지, 마을 주민한테다. 만약에 120원에 하면 한 10원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 마을발전기금으로 만드는 거지. (중략)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지. 힘드니까. (질문: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이었어요?) 85년 지나서 90년 사이. (질문: 어떤 계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기금이 있어야 모든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냥 어디서 나올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기금을 좀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푹푹 뭉쳐서 그런 걸 한 거고.”(김SH, 1959년생)

“그런 (상례)문화가 없어지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 받기 전에 없는 거야, 돈이.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장도 그렇고 다 내는 걸로 다, 이장이고 이중계 총무고 이중계장이고 노인회장이 부녀회장이고 다 내자.”(조YJ, 1943년생)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유재산을 창출하는 행위는 오늘날까지 대동계를 운영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현지자원 활용을 장려하면서 정부 소요의 자재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개발사업은 한편으로는 마을 공유재산을 증가시켜 대동계가 자금 차용을 통해 개별 주민의 삶과 더욱 긴밀한 연결을 맺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계 지출을 늘려 주민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대동계의 중수와 활성화

공유재산의 증가를 계기로 대동계는 이중계로 개칭되며 중수되었고, 계장, 총무와 감사로 구성된 임원진을 갖추어 이장의 직접적인 관할에서 벗어나게 됐다. 총무는 재산 관리와 수지를 실제로 맡아 처리하고, 감사 두 명은 연말 총회 전 한 해 동안의 수입 및 지출을 검토한다. 계장은 대동계를 총괄하여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이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을 감독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과 같이 마을의 중심 임원을 이룬다.

사례 IV-23 중수 후 대동계의 임원진 구성

“(돈이) 없는데 관리할 게 없잖아. 내가 그 이장을 보면서 돈이 그렇게 돼서 그럼 계장, 총무를 만들자.” (홍SH, 1939년생)

“대동계장은 말하자면 마을의 원로로서 이장에 사무 보는 거를 보조도 해 주고. 이장이 마을 일을 의논할 때 가장 먼저 의논할 사람이 대동계장과 부회장과 노인회장이란 말이야. 이장이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만큼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장이 자기 멋대로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장치가 대동계장이고. 이제 대동계장의 얘기를 듣고 그 대동계 총무, 옛날에 이서가지, 그 사람이 돈을 내주고 어디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김ES, 1968년생, 2016~2021년도 이장)

중수 계기와 대동계 임원의 직책을 보면, 화전2리 대동계가 조선시대

의 동계와 비해 공유재산 관리를 중심으로 기능을 축소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재정기구로서의 성격은 대동계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공유재산 증가로 대동계는 그 나름의 임원진을 갖게 되어 독립성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마을일 의결에 참여하는 발언권과 이장을 견제하는 힘까지 가지게 됐다. 물론 그러한 힘은 주로 계장에 의해 행사된다.

마을 사회에서 조직 위상의 제고뿐만 아니라, 대동계는 소관 재산의 증가로 개별 구성원의 삶과 더욱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대출 업무를 활성화된 것은 사례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자금 대출은 반계 차원에서 행해진 지 오래됐으나, 대동계로 모은 금곡들이 주로 임원 수고비로 사용됐던 시절에 행정리 차원에서 활성화되 못했다. 그러나 1985년도 「대동계통문」을 보면, 차용자, 차용 금액 및 이자 등 항목들이 계원 명단 아래 기재되어 대동계 차원에서도 자금 대출이 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 IV-24 차용 원인

“은행 금리 보다면 비싸다고 사채가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는 사채라도 빌려 써야 되잖아 (중략) 아들 장가 들리거나 땅을 사거나 이렇게 몽탱이 돈을 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니까 빌려다 쓸 수가 있어. 그런 거 좀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없어.” (조YD, 1940년생)

“못 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하니까. 애들 그 자녀 교육 학자금, 학자금 때문에, 이걸 학자금 우선이라고 그래야 돼.”(조YJ, 1943년생)

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수입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동계 결속력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금은 다른 유형의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차용을 통해 개별 구성원에게 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대동계 소관 자금을 차용해서 생업, 자녀 교육, 결혼 등 일에 사용하게 되면서, 대동계가 개별 구성원의 세계에 개입하는 정도는

높아졌고 대동계를 매개로 개별 구성원들의 세계들 사이의 결속도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공유재산의 구속력을 검토하고 공통의 생활방식에서 비롯된 사용가치, 용익권에 관한 규정, 그리고 노동참여에 대한 요구 등 요소들을 추출했으며, 대동계가 상례조직과의 통합 또한 공유재산의 성장을 통해 행정리 단위의 사회 통합을 낳게 된 과정을 아울러 회고했다. 2절에서는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 시 마을을 대상화하는 방식을 고찰한 뒤, 개발사업의 전개방식이 어떻게 마을사람들의 공동노동 및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와 결부해서 마을 사회 자체의 인력·물적 자원을 움직이게 하고 나아가 대동계에 유지 동력을 제공했는지를 설명했다.

3장에서는 행정 체계가 말단행정보조조직을 정립시켜 개별가구의 일상생활에 개입하게 했으며 대동계의 재정 기능과 수고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를 통해 말단 행정 비용의 일부를 마을 사회에 이전해서 대동계 성립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3장과 4장의 내용을 겸하여 생각하면, 행정 체계와 사회 민속이 각각의 방식으로 개별가구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마을이라는 사회 영역을 발현시킨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체계와 사회 민속에 따라 발현되는 마을 영역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공공의 일 및 공유재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사람·재물의 움직임들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대동계와 말단행정조직의 결속 원리나 공공의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5장에서는 공유재산과 이로 발현되는 마을 영역의 재편을 서술하고 민속사회와 행정마을의 관계 및 위상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 5 장 공유재산의 재편과 구속력 약화

5.1 행정 체계와 사회 민속에서 마을의 역할의 축소

1) 면으로 거점을 이동한 말단 행정

전문적인 행정 인원과 아울러 새로운 통치 기술이 등장하면서, 국가와 지방 행정에서 행정리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 단위로 주목받고 있지만 20세기 중후반처럼 다양한 사무들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3장에서 물자 및 정보의 유통과 인원 동원 세 가지 측면으로 이·반조직과 이·반장의 역할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역할들은 1990년대 이래 모두 축소되었다. 개별가구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물자의 획득은 농협 체제 전환과 자유 유통의 확대로 이·반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들, 취사 및 난방에 소요되는 연료와 살림살이에 필요한 여러 생필품들은 처음에 농협 체제를 통한 뒤 이장과 반장을 거쳐 구매·공급되었는데 현재 주로 개인이 농협 혹은 회사를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구매·배송되고 있다.

사례 V-1 연료 종류와 획득 방식의 변화

“연탄 땀 때는 연탄 신청해서 나눠주고. 이장이 애기를 해서 동네 오잖아. 연탄보일러를 놓아 보니까 좋더니 이제 또 기름보일러를 놓는다고 (중략) 기름은 아주 옛날에는 부락으로 배정해서 부락에서 놓아주고 그런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다 개인이 전화해서 갖다달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갖다 주니까, 개인이 조합원마다 주유소에다 전화하면 거기서 그냥 갖다 줘.”
(홍ST, 1934년생)

“가스는 그냥 LPG 가스 그거 배달해서 통으로. 그래서 주방에서 그걸 해서 쓰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인데 아무리해도 안 따뜻하고 돈만 막 비싸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름으로는 온수만 썼고요. 집 안에 벽난로, 화목난로 그걸

로 해서 살았죠. 그래서 나무 1년에 한 100만원정도 내면 크게 와요, 한 차로.”(김HM, 1985년생)

사례 V-2 농자재 구입 방식의 변화

“지금은 농협에서 다 갖다 준단 말이야. 자기네 개인 집까지 다 실어다 주거든. (중략) 그게 생긴 지 10년도 안 됐어. 한 2000년도 중반 때 그렇게 된 거라.” (홍ST, 1934년생)

생활용수의 경우, 샘물이나 공동우물에서 물을 대고 개울에서 빨래를 하는 방식은 전기가 통한 이후 자가에서 펌프로 퍼 올리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연마을별로 공공 양수·저수·급수 시설이 설치되면서 수원을 공유하는 집단은 다시 형성됐으나, 몇 년 전에 군 상수도의 설치로 공용급수시설이 파기되어 연대는 끊어졌고, 개별가구가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국가에 공과금을 지급하는 경로로 대체되었다. 국가 행정은 물자의 유통 경로 및 접근 가능성을 통제하여 마을 사회에서 이·반조직에 기반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대신, 개별가구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와 개별가구 사이 직접연대를 맺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례 V-3 생활용수

“여기가 자가로, 옛날에 펌프 이런 걸로 먹다가 이게 오염돼서 좀 위험하다 이래서 지하상수도를 각 동네 꼭대기 산에다 이제 군에서 해취가지고 그걸로다가 한 20년 먹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오염이라고 그것도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먹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상수도 이제 요금 나오니까 노인분들이 돈 나가는 게 좀 그러니까 옛날 걸로 먹는 집들도 몇 집이 있긴 있나 보더라고.”(김SH, 1959년생)

“마을 상수도는 내 오기 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저 위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모아놨다가 내려보내는 거지. (중략)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물이 모자라는 거야. 군에

서 운영하는 진짜 상수도로 다시 바뀌었어. 그 대신 물 값이 비싸.” (김GS, 1967년생)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각종 사실과 주민 여론 등 정보를 수집·확인하여 위로 보고하며 행정시책을 아래로 홍보해 주는 사무의 경우 점차 이·반조직에서 면 사무소로 이전되어 나갔다. 이·반장을 거쳐야 했던 전입·전출 신고와 각종 사실 확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면에서 배치되는 전문적인 행정직원의 역할로 이전되어 나갔다³⁶⁾. 조선총독부가 구상한 면 거점의 말단행정은 행정기구와 정보시스템이 완비된 20세기 말에 이르러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V-4 전입신고 절차 변화

“면사무소 와서는 자기가 이사를 온 거를 거기다 했지만, 주민등록 옮기는 거를 이전 신고를 했지만, 옛날에는 이 마을로다가 이사를 오게 되면, 나는 여기 와서 살고 싶어 내가 일로 이사를 옵니다 하면 이장이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야, 서류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면사무소 가서 내면 전입신고가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마을에 와서 마을에서 마을 도장을 찍었어야지 이장 도장을 받아야지.” (조YJ,1943년생)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며 행정시책 홍보, 시행 상황 및 주민의 건의 수집·보고와 인원 동원 역할들을 겸하는 반상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 모임 빈도와 참석률이 감소하며³⁷⁾ 경찰을 보조하는 정보망으로서의 성격

36) 동아일보, 1994.06.21., 31면, “주민등록 이전절차 간소화, 전출신고 생략 전입만으로, 신고땀 통·이장 거치지 않게. 내달부터 시행키로”

37) 1980년대에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반상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참석률도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동아일보, 1980.03.31. 6면, “시들해져가는 반상회”). 기사에서는 “농촌의 경우 이웃체면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 비교적 높은 편이나 별금이 없는 일부 도시는 극히 낮다”는 상황이 소개되어, 처음에 행정보조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반이 조직하는 회의가 오히려 사적 관계에 의해서야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1995년에 들어 운영 자율화, 빈도 감소 그리고 지역 상징을 담은 이름으로 개칭 등 지방화·민주화에 순응한 반상회의 변화들은 보도되었다(매일경제 1995.11.03. 38면: “광주시 반상회 자율화”; 한겨레 1995.11.08. 20면 “충남 반상회 주민자율 운영”).

이 퇴색됐다. 연구지에서 반원 모임은 현재 마을총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번 씩 거행되고 반유재산의 보유 및 수지 상황 검토, 반장 교체 등 일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의가 없는 평상시 반장은 예전처럼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하지만, 업무 내용이 지면 서류의 배포 및 수집 그리고 반원의 공동체사업 실천 상황에 대한 기록 등의 역할로 축소된다. 각 반 회의가 끝난 후 마을총회가 열리고 마을재산 결산보고, 이장 선임, 내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등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한다. 마을총회라고 하지만 대동계원만 출석한 경우가 많아, 행정상 등록된 주민이 대동계원과 괴리되면서 일부 주민만 참석하는 모임이 되었다. 총회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는 특징도 있다.

이·반을 단위로 하는 인원 동원에서는, 생활환경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이 일단락되고 농촌개발정책이 어메니티와 기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관 조성과 문화행사 참여로 형식을 바꿔 중노동에서 경노동으로, 고역에서 참여로 바뀌었다. 동원을 통해 펼치려는 단체행동에서 요구되는 노동 강도는 낮아진데 반해 동원에 호응하는 주민의 수는 감소세를 나타낸다. 이장과 반장의 동원은 지역 내 전체 주민의 행위를 규제하는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동네 발전’과 마을 임원의 행위를 인정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일부 주민에게만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사례 V-5 21세기 인원동원의 형식

“여기 정보화마을이 돼가지고 행사도 많았었다고.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도 했었고 봄이면 봄나물축제도 했었고 뭐 척사대회도 했고 별거 다 했는데. (중략) 우리는 뭐 크게 도운 것도 없지만 여기 이제 무슨 축제를 하면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나 책임 맡은 사람들은 많이 고생이 되고 힘이 됐었지. (질문: 그러면 일반 주민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신가요?) 이제 전부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많이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이장이 방송하고 노인회장이 방송하고 많이 참석해서 사람이 많아야 행사가 되잖아. 그 협조해 주는 거지. (중략) 좌우지간 동네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저거 하는 거지. 딱 느낌보다도 여러모로 협조하고 응원하는 거지 뭐.” (신ZS, 1948년생)

실은 읍·면지역의 동리는 1965년부터 행정기관으로 전환된 시지역의 동과 달리 보조적인 조직으로 남아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546-547). 이장과 반장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전문적인 행정직원이 아니다. 1972년부터 이장 선정방식이 임명에서 선출로 바뀌면서 이장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권위는 한층 더 퇴색됐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은 1993년 '제2새마을운동'의 출범을 전환점으로 지방화, 민주화와 다양화 등 흐름에 순응하는 민간자율운동으로 재자리매김하여, 범국가적 운동에서 지역사회 특히 '오직 내 고장'을 위한 개발운동으로 변모하고 전개 방식도 특정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경기도새마을회 2020: 101-102; 107-110). 이에 따라 이장과 새마을운동 제1단계에 세워진 동·리 개발위원회는 마을 발전에 기여해주리란 기대를 더 후하게 받게 됐지만, 이·반장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영역과 그 강제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반조직 대신에 면 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구를 통해 개별가구 내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행정 체계에 있어서 행정리가 맡았던 인구 통치의 역할은 약화됐고 개발사업과 공공 행사에서의 인원 조직 및 참여가 주된 역할로 부상했다. 결국 종전에 행정 체계의 힘을 빌려 이·반조직을 바탕으로 형성되던 사회적 연대는 행정리 기능의 축소와 함께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2) 개별가구의 삶과 연결고리를 풀린 공유재산

마을이라는 사회 단위가 개별가구에게 지니는 중요성의 축소는 공유재산의 구성 및 운영에서도 발생했다. 대동계 중수 이래 이에 의해 관리되는 공유재산은 논밭 및 산림, 자금과 공동물품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상여와 식기 같은 의례용품은 구성원마다 사용할 수 있었고, 논밭과 자금도 원칙상 차용의 형식으로 모든 구성원이 가용했다. 대동계는 바로 이러한 재산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삶과 연결을 맺어 구성원에 대한 구

속력을 쥐고 있었는데, 공유토지·의례용품·자금에 의한 연결이 21세기에 점차 풀리게 되면서, 공유 토지는 계원에게 임대하기보다 주로 대동계 외부 인원에게 임대 혹은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고, 의례용품은 화장, 장례식장과 외식 문화의 보급으로 2010년대 초반에 소각되고 말았다. 공유재산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던 자금은 기타 공유재산처럼 분할 불가능하고 차용의 방식으로만 개별 구성원의 사용이 가능한데, 농협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선호되면서 차용금으로 쓰이던 통로가 2000년대 후로 좁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더 이상 대동계통문이나 결산보고서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사례 V-6 차용자의 감소

“지금은 그렇게 갖다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농협에도 이자가 싸.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싸게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에는 돈은 있어도 달래는 사람도 없고.” (홍ST, 1934년생)

년도	1986	1989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금액	128.56	203.3	255	389.79	317.5	523.45	373.53	126.3	69.4

표 V-1 차용이자 금액 추이(단위: 만원)

개별 구성원의 삶에 사용된 부분은 줄어든 반면, 소위 ‘마을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물품 및 수지는 공유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현재 창고에서 보관되어있는 공용물품은 부역(제초·제설 작업), 마을축제, 체험활동(김장, 감자 캐기, 손모내기 등) 때 쓰이는 물건 위주이다. 공용물품은, 개별 계원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며 모든 계원에게 사용될 의례용품에서 마을을 주체로 하는 행사와 관련된 물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경향이 보인다.

마을창고 보관물			마을회관 보관물
농기구류	식기류	기타 도구	
빛자루	가마솥	가스통, 가스관	사무기기 및 용품
호미	전기밥솥	플라스틱 의자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낮	알루미늄 냄비	종이 박스 (농산물 포장용)	난타북과 기타 여가용품

갈퀴	도마	사다리	봉사팀 소요 청소도구
삽	김장대야	물통	
구루마	보온박스, 보관함	간판	

표 V-2 주요 마을공용물품 (2019년 기준)



그림 V-1,2 마을창고 내부 사진 ©류평평

오늘날 공유재산 중 마을주민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심지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는 공동시설인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이다. 이 두 가지 시설은 모두 정부의 지원에다 마을 자체의 공동기금이나 공유토지를 이용해서 조성된 것이며 주로 여가공간으로서 쓰인다. 1992년에 완공된 마을회관은 이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방문자를 접견하는 2층과 대동계, 반계, 부녀회, 노인회, 봉사팀 등 각종 마을조직들이 회의, 회식과 상시 모임을 행하는 1층으로 구성된다. 마을회관과 그 내부시설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일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대동계 자금으로 충당된다. 종전의 상여와 같이 공유재산의 형태를 띠지만, 개별가구에게 사용이 어렵고 단체행사에 한해 개방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시책에 응해 조성된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단체행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특히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이해되어 주로 노인회 구성원이 이용하고 있다. 소집단에 한해서 사용되므로 그 나름의 조직을 결성하고 재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다만 마을축제처럼 넓은 장소가 필요한 대규모 행사가 행해질 때 행사장으로 활용되며, 관련 비용은 대동계

에서 지불한다.

공유재산 구성의 변화를 요약하자면, 토지와 공용물품이 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금이 증가하지만, 주민에게 빌려주고 그들의 생활에 사용된 기회가 줄어든다. 종전의 차용금이나 공용물품은 주로 생업, 자녀 교육과 결혼, 일상의례 등 한 인간이나 가정이 필히 겪을 인륜대사라는 점에서 주민의 삶과 긴밀한 연결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과 주민 사이의 이러한 연대는 공유재산 구성의 변화로 느슨해지고, 점차 여가와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형성된 연대에 대체된다.

2. 발전 담론 주도 하의 대동계 운영과 사회 통합

1) 개발사업 중심으로 재구성된 공유재산

앞 절에서는 공유재산 구성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공유재산의 재구성을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근간이 되는 자금의 수지 구성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수지구조에 대한 분석은 1985~2021년도 대동계통문과 결산보고서를 자료로 한다. 대동계 성립 초기에 자금 구성이 간단해서 수지 상황은 대동계 구성원 명단 뒤에 첨부하는 식으로 통문에는 기록되어 있다. 수지 사항의 증가와 아울러 문서 작업 정교화에 따라, 1987년부터는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수지 항목을 기록하기가 시작했다. 통문에서 기록한 경우, 이세를 납부한 자의 이름 위에 ‘ㄱ’ 표시를 했으며 현금을 납부한 자의 이름 뒤에 현금 액수를 표기했다. 새 회원은 명단 말단의 ‘신입’란에 기재했다. 명단 하단에 자금 차용, 수금, 지출과 찬조 등 항목은 적혀 있고 내년 자금으로 넘어갈 잔금도 기재돼 있다. 대동계와 상여계가 통합한 1989년도의 통문에서는 상여돈의 차용 상황까지 기재했다.

1980년대 대동계통문의 서식을 통해 이세, 신입례, 차용 이자, 상여돈, 찬조금과 이월금으로 구성되는 기본적 수입구조는 확인된다. 신입례는 의지에서 이주해 온 이들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용익권과 일생의례 시 이

웃들의 부조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동계에 입회조건으로 부과되는 가입비이다. 공유재산 구속력의 약화와 대동계 가입률의 감소로 인해, 세대 수가 늘어났음에도 신입레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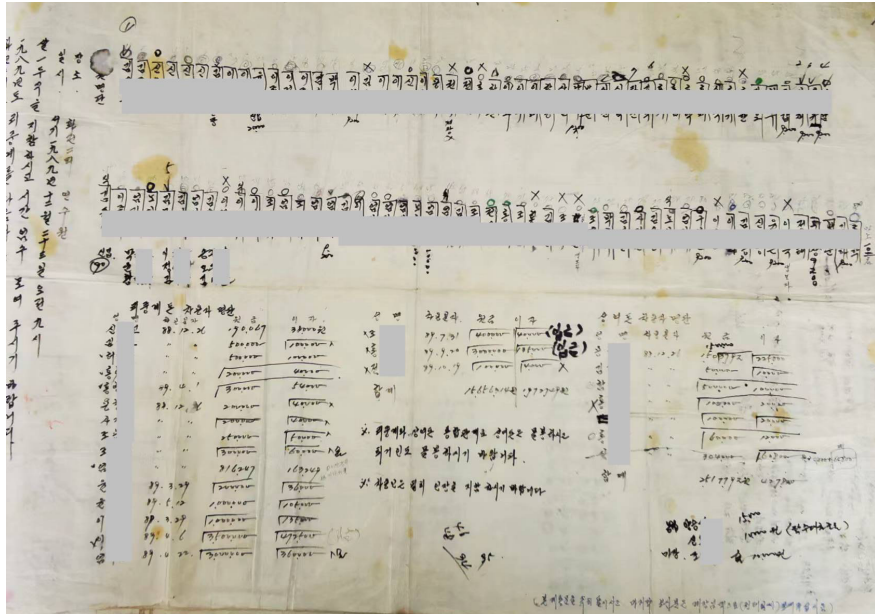


그림 V-3 1989년도 대동계통문(인명 부분은 마스크 처리가 됨) ©류평평

이주민이 대동계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선주민은 새마을운동부터 이어져 온 농촌개발의 흐름에 맞추어 신입레 명칭과 납부 이유를 재구성했다. 2010년대 새롭게 들어온 주민에게 신입레 납부를 권할 때, ‘신입레’ 대신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상·장례 용품 및 부조 대신에 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로 신입레 납부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사례 V-7 마을발전기금

“나처럼 집을 짓고 오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파려고 그러면 좀 많이 들어, 한 400만원 이렇게 들어. 우물이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 쓰는 마을 상수도라고 있어. 그 물을 끌어다 쓰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150만원 돈을 낸다고.” (김GS, 1967년생, 2015년에 이주해 온 주민)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거가 명칭을 바꾼 것뿐이야. (질문: 예전에 내는 리세랑 똑같나요?) 그렇지. 리세인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문화가 바뀌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서울 분들이 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기본이라는 걸 몰라 이중계라는 걸 개념을 모르고.” (조YJ, 1943년생)

신입레뿐 아니라 이세와 찬조금 등 기타 공유재산 구성부분도 대외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대동계가 거두는 자금들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통칭하는 경향은 한편으로는 이주민에게 익숙하고 설득력이 높은 개념을 활용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며, 또 한편으로는 공유재산 구성의 변화 자체에 바탕을 둔다. 마을발전기금이라는 표현은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반포됐음에 따라 널리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령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용어가 제시되는데, 이는 농수산업,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시설확충 사업과 농업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기금을 가리킨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70조). 새마을운동 시기에 이와 비슷한 ‘마을기금’을 조성·관리하라는 규약준칙이 시행된 바 있고, ‘농어촌발전기금’과 같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이나 마을 단위의 사업용 재산(비육우사업, 마을 양묘 등), 수익적 공동이용재산(정미소, 창고, 이발소, 판매장 등)과 공동사용동산(농기구 차량 등)을 바탕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측면이 주목된다(지방국 새마을지도과 1973: 128-133). 더 이른 식민지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농촌진흥운동 때 진흥회 조직 하에 각호로부터 거둬진 공동 기금도 마을 단위의 사업과 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강조됐다(府邑面雜誌社 1932: 37). 즉 정부가 장려하는 마을기금은 마을이 정주환경과 산업을 포함하는 여러 측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창출되고 관리되는 자금이다.

선주민은 이주민에게 신입레 납부와 대동계 가입을 권할 때, 공유재산인 시설이 과거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마을 발전과 이에 대한 주민의 책임을 또 하나의 정당성 근거로 삼는다. 후자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주민에게 전달해 주

입하려는 지식으로서, 마을 외의 지역에도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녀 있어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내지는 행정 체계의 힘을 차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을 뿐이다.

총전의 수입 구성 중 차용자와 상여돈 부분은 지난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축소 내지 소멸했고, 찬조금은 이세와 같이 주요 수입을 이루는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찬조금의 출처와 용도를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로 개발사업 주도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찬조는 처음에 대동계 연말 총회 시 개별 주민이 기부하는 소액 현금이나 현물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찬조자 성함과 찬조 내용은 대동계통문 하단에 기재되었다. 1992년부터 찬조 내용이 늘어나면서 결산보고서에서 찬조 내역을 별도로 첨부하기 시작했다. 이때 찬조 주체는 마을주민에서 관외 여행·음식·금융·건설 업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개별 주민이 보내는 찬조는 공용물품 구입·보수 시 혹은 부역과 마을총회 시 마을에 대한 감사나 지지를 표하는 뜻으로 기부하는 현금·현물과, 군·면 주최 행사에 소요되는 참가비를 모으기 위한 현금,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마을총회 시 받은 찬조금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은 주로 농촌개발계획과 양평군 군정시책에 응해 전개된 생활환경 정비와 각종 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인 것이다. 찬조금이라고 하지만 경비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청하여 거둬들이는 돈이고 특정한 행사에 사용될 것이므로 목적 지향성이 강하다.

찬조 주체	찬조 내용	비고
흥씨종중·업씨	현금(3~100만)	회관건립, 상여구입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건축 및 수선 기금	
농협	소액 현금 혹은 현물	
관외 여행·음식· 금융·건설 업체	현금(5~30만) 혹은 현물	
관내 업체와 종교·복지 단체	현금(2~5만)	
마을주민	현물이나 현금	면민체육대회, 면 척사대회, 마을축제 경로잔치, 효도관광,

		복날 모임 등 행사 소요 비용
이장, 부녀회장	현금(5~10만) 또는 현물	대동계 총회 날

표 V-3 찬조 주체 및 찬조금의 구성

1990년대 이래 수입에서 나타난 마지막의 변화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생태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등 전국이나 군 차원에서 벌어진 농촌개발사업에서 받은 지원금이 새로운 수입 항목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금액이 크나 일회성을 띄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었다. 결국 공유재산의 수입구조는 구성원이 해마다 납부하는 이세에 의지하고 찬조금, 신입례, 정부 지원금 등 일시소득을 추가재원으로 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행정리 이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공동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마을환경정비 비용도 도로 포장·보수 작업이 일단락 되며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는 수입구조가 이세와 일시소득으로 단순화되어도 재원문제를 초래하는 이치가 없었어야 하나, 실제론 자금 확보 문제가 발생해 이세 납부액이 기존의 쌀 한 말 값에서 그보다 약간 높은 3만원으로 인상됐다. 공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세 납부액을 올렸을 뿐 아니라 지원금이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시책과 주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사례 V-8 지출 부담 증가와 자금을 만드는 노력들

“(질문: 이세 내기를 그만두면 안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줄어들수록 동네 사람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잖아. 마을에 자금이 없으면 여기 주민들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그 충당금이 되니까. 마을발전기금을 3만원을 낸다고 지금 그렇게 치고. 만약 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저거 할 땐 더 올려 받아야 된다 이거야. 자금이 없으면 동네가 안 되잖아. 운영을 못하잖아. 여기서 자금이 많이 나가는 게 뭐 있고 이제 화전리에도 옛날에 이제 적십자회라고 그랬지. 개인별로 원래 부과를 했던 거를 그때 자금이 넉넉할 때 동네에서 일괄적으로 다 물어줬었거든. 그런 거 물어주고 여기서 일 년에 체육회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일 년에 한 번씩 군민의 날, 면민의 날이라는 행사 해. 그러면 거기 같은 데 출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서 먼 소재지에서 뭐 해놓은 게 있느냐면 정월달 되면은 대보름 놀이 옷놀이 하는 게 있어. 그럼 그런 거 할래도 이에서 돈을 몇 십만 원씩 내야 돼. 거기 주최하는 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부탁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야. (중략) 어디서 지원되는 데 없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모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홍ST, 1934년생)

“면에서 이제 뭐 한다 무슨 행사 같은 거 있고 면민의 날 이런 거. 그런 게 행사할 때에 여기가 출전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출전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 데 쓰고 또 뭐 여기서 그전에 또 축제도 했었어. 그거 하다 보면 발전 비용이 들어가야지.” (이HY, 1941년생)

“(질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건 그 목적이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만큼 소득을 올리라는 거지. 정부에서 일부 돈을 대주면서 이제 마을 발전을 시키는 거지. 마을을 잘 살게 만드는 거지. (질문: 마을자금을 많이 만드는 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마을에도 공동으로 필요한 돈이 많아. 저 회관 운영하는 데도 뭐 전기세니, 또 노인들 모이고 그러면 거기서 뭐 밥 해먹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개인이 또 막 내는 것도 있고.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이ZH, 1940년생)

주민들의 구술에서는 적십자회비, 군·면 주최 체육 및 문화 행사 출전비와 마을회관 운영비 등 항목은 마을재정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1985년 이래의 대동계(이중계) 결산보고서를 정리함으로써 지출구조의 변화와 위와 같은 지출 부담의 양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공동지출 내용은 마을 사회의 공적인 업무에 관한 지출과 외부 업체·기관과 왕래하는 데 드는 비용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마을임원 수고비, 공용물품 구입비 혹은 보수비, 마을환경정비 경비, 노인회 및 부인회에 대한 행사 지원비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후자를 외부 방문자 접대, 기타 동리에 대한 찬조금과 선물, 군·면 주최 행사 참가비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985~1994년대 지출구조

1. 마을임원에 대한 수당 및 지원금
이장, 대동계 총무 수당;
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 지원금
2. 총회·모임·부역 시 식대/주대
3. 마을환경 정비 비용
도로포장 및 보수
용수로 공사; 교량 공사
4. 공공시설 및 공용물품 구입·보수
상여, 그릇 구입; 앰프 수리
마을회관 건립 및 인테리어
5. 접대비 및 선물비
군청 직원, 농기계 수리반, 환지사,
검사원, 진흥공사계장과 관광 기술
자 등 인원 접대비
이장, 총무, 부녀회장과 새마을지
도자 감사패
대통령 경축행사, 용문면 사무소
개관식, 용문보건지소 개원식 등
행사 시 경축금
6. 노인회 관련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비용 지원
7. 부녀회 관련
관광방문 비용 지원; 협조금 지불
8. 기타
재산세, 적십자회비, 서류대
체육대회 기부금

1995~2010년대 지출구조

1. 마을임원에 대한 수당 및 지원금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보
수 및 견학 지원금; 총무 수당
2. 총회·모임·부역 시 식대/주대
3. 마을환경 정비 비용
제조작업 시 휘발유 비용
잔디·나무 값
4. 공공시설 및 공용물품 구입·보수
마을회관 관련: 전기·전화·가
스·기름 요금, 회관등기 비용, 가
전제품·오피스용품 구입 및 수리,
공사비
수도 관정 및 계량기 값; 우물보수
부역 및 체험프로젝트 소요도구
구입
5. 접대비 및 선물비
지난 시기와 같음
6. 노인회 관련
지난 시기와 같음
7. 부녀회 관련
지난 시기와 같음
8. 기타
재산세, 적십자회비, 서류대
마을축제 관련 비용;
면 체육대회·석사대회 찬조금

표 V-4 대동계 자금의 지출구조와 그 변화

3장에서 대동계 결성 계기로 소개된 마을임원 수고비는 마을재정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지출 항목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보이

면서도, 정부 및 농협에서 이장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며 다소 감소됐다. 이보다 더 큰 변동이 나타난 부분은 마을환경정비 관련 비용인데, 작업 내용이 도로·교량·용수로 공사에서 제초·청소·녹화 작업으로 중점을 옮기면서 1990년대의 몇 백만원 내지는 천여만원에서 식대와 제초기 기름값 같은 소액 지출로 축소됐다. 이에 반해 공동시설 및 공용물품에 관한 지출은 개발사업의 진행과 이를 계기로 신축된 시설(마을회관과 용수·급수 시설 등)들에 대한 운영 및 보수로 인해 증가세를 이루었다. 외부 업체 및 기관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일부는 단체 여행, 회식, 공사로 맺힌 업체-고객 간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일부는 군이 추진하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사업 및 행사를 조직하는 빈도와 행정리가 이에 참여하는 방식 및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사례 V-9 2002년 지출 상황

1. 임원 수고비: 184만원
(이장·총무 수고비, 지도자 부녀회장 회비, 이장부녀·회장 감사패 선물, 이장 견학 지원)
2. 마을총회 날 지출: 174만원
3. 마을환경정비 비용
(동네 청소, 잔디·나무 값, 조경 시 포크레인)
4. 공공시설 및 공용물품 구입 혹은 보수 비용
(회관 전기·전화 요금, 회관 냉장고 및 티비 구입, 삼·곡괭이 구입, 상수도 요금)
5. 접대비 및 선물비
(○○개발 감사패)
6. 노인회 관련 지출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행사 지원금)
7. 부녀회 관련 지출
8. 기타
(적십자회비, 회관 취득세, 서류대, 면 척사대회 찬조금)

위와 같은 지출 항목에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체육·문화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과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데 드는 운영비다. 마을회

관은 주민 자치 및 복지라는 목적으로 관의 주도 아래 건립되고 정부 지원금에 마을 공유토지와 주민들의 찬조금을 보충해 조성된 것이다. 1992년 완공된 이 건물은 이장이 사무를 처리하고 방문자를 접견하는 2층 사무실과 마을 내 여러 조직 및 집단들이 여가나 회의 장소로 활용하는 1층 공간으로 구성된다. 마을회관이 생기기 전 이사무소는 이장 자택에 두었고, 모임 장소는 동네의 마당이 넓은 집 혹은 학교 등의 공공 장소로 정했다. 마을회관과 관련된 지출은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여가 장소로 사용할 때 발생하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회 민속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요금을 부과하는 공공서비스의 결착에서 비롯된다.

군·면에서 전개하는 각종 체육·문화 행사는 처음에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복지개선의 일환으로 출범했으나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지역 이미지를 조성해 관광산업,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특히 상수원관리구역에 속한 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단지와 공업 단지 조성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문화와 자연 자원 활용에 유달리 관심을 가진다. 1995년 이래 매년 반포된 군정시책을 모아 그 추이를 추출해보면, 초기 주민복지를 위해 제기됐던 문화 관련 항목들이 21세기에 들어 체육·예술 활동, 축제, 테마 마을 등의 조성 등 새로운 형식을 띄고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대로 목적을 돌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점 시책	개별 항목 상세 내용
199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넉넉한 인심으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 영위</u> 2. 자주재원 확충과 군민 소득 증대 3.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2) ‘군민의 정서 함양과 체력 증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문화재 보전 관리 군민 모두의 체력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등
2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맑은 물 사랑 실천 2. 환경농업-21의 적극적 추진 3. 문화적 가치 창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의 장작기회 제공 및 기반 조성(각종 문화·예술 행사

	4.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지방자치 정착 5. 권역별 특성개발과 복지수준 향상	유치) 2) 전통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발굴 보존 3) 홍보 활동 추진 4)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2005	1. 주민우선, 경제우선의 행정 서비스 구현 2. 교육과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3. <u>역동적인 여가휴양지 조성</u> 4.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생태전원마을 조성	3. 1) 주민의 레저 생활과 찾고 싶은 양평 2) 관광 홍보
2010	1.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 정착 2. <u>행복한 교육·문화기반 조성</u> 3.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4. 건강한 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 기반 조성 5.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 6. 군민이 행복한 감성 행정서비스 실현	2. 1) 평생학습도시 조성 2) 환경과 웰빙,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조성 (역사와 연계한 관광자원 정비; 웰빙 투어 추진; 지역문화예술 창출 등) 3) 체육과 레저스포츠 조화로 관광 자원화

표 V-5 양평군에서 체육·문화 행사 관련 정책 추이³⁸⁾

문화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영농기반 구축의 맥락에서 도입된 친환경농업을 ‘건강’과 ‘녹색’이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도구로 취급해 체험, 관광 같은 비농업 부문 내지는 인프라, 주거, 환경, 위생 등 비생산부문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97년부터 군정시책으로 추진되어 온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1990년대 토양개량, 비료공급, 용수개발, 기계화와 경작로 확·포장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나 2000년대 이후 판로 확보, 농산물 가공, 신소득 작목

38) 『민선 양평군정 20년사: 1995-2008』(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20)에서 수록된 역대 군정시책에서 발취해 온 것이다.

육성, 브랜드 만들기와 체험·관광 활성화로 그 방향을 돌렸고, 2009년부터 ‘친환경 생태도시’ 또한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사업으로 발전했다(지방의회발전연구원 2020: 267-1302).

지방정부에게는 경제 발전, 환경 보호와 사회복지가 이제 서로 분리되거나 충돌하는 분야가 아니고, ‘녹색’, ‘건강’, ‘행복’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융화시켜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화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와 아울러 환경보호 실천을 현실화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인원과 물자 유동의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민간 참여 혹은 ‘관·민 공동 추진’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재원조달의 일부를 민간에게 맡기는 조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대동계의 존속과 직접 관련된다.

군·면이 주최하기에 참여 강제성이 강한 체육대회·척사대회의 경우 행정리 별 참여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참가비도 부과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개별 행정리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당선 시 정부에서 상금 혹은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수년 간 마을 자체로 부담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적지 않다. 2006년에 출범해 기존의 ‘녹색’, ‘건강’에다 ‘행복’을 또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만들려 제4기 양평군 민성정부 추진 하에 열린 ‘행복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행복’은 처음에 사회복지의 지표로서 제기되었으며,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우 등 각 집단에 적합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군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 정의되었다. 2010년 ‘행복’이라는 목표의 내포는 교육·예술·체육 기반 조성 and 감성행정의 실현으로 구체화되었고 관광 자원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었다. 이듬해 ‘누구나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적 ‘삶의 행복 운동’이 작했고, 2013년 마을 단위의 ‘행복한 지역만들기’ 사업이 그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ibid: 571, 629, 931, 999). 연구지에서 지출 부담이 된 행사들 중 마을축제는 바로 이 사업을 계기로 계획된 것이다.

사례 V-10 화전2리 마을축제의 유래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어떤 공모 사업을 해놓은 게 있었어. 공모 사업 같은 걸 해서 우리가 1등상을 받았어. 1등상을 받았는데 시상금이 1억을 받았어. 우리가 공모 사업하면서 낸 내용 중에 뭐라 하나면, 그때 당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를 해서 마을사람들이 단합하고 한 군데 더 잘 모여서 마을 발전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소규모 마을축제를 개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뭐 지자체 큰 데서 지원해 주는 축제가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자연, 리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 축제 그게 있었지.” (김ES, 1968년생)

사례 V-11 마을축제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족

“○이중화 위원: (전략) 또 화전리의 황금들녘축제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회째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재경인사들도 많이 오고 이런데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어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윤중: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홍보비를 좀 세웠는데요, 그 홍보비 가지고 만약에 그 마을에서 원하면 우리가 야립간판이라고 (중략) 야립간판 같은 거를 홍보를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24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공모사업의 당선은 지원금·상금 뿐 아닌, 계획 이행과 수익 계산 등 일련의 경제적 활동을 수반한다. 특히 계획안에 올린 ‘마을공동체 활동’은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몇 년 간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자조’라는 방침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을 포함하는 개발위원회가 주도해서 주민을 동원하고 마을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군·면 주치의 문화행사와 개별 행정리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리를 조직 단위로 삼고 ‘자조’나 ‘관·민 공동 추진’을 강조하면서 주민에게 참여와 자금의 자주적 조달을 청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종래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어받아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경제가 정체된 배경 하에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을 펼치려면 자금 마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세입이 자주재원이 아닌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지하고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재정구조의

양평균 정부에게는 축제와 기타 문화·체육행사에 지원 가능한 예산이 한정돼 있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각각 일부를 출자하는 자금 마련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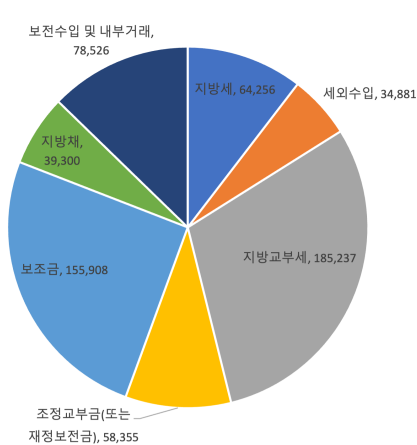


그림 V-4 2012~2020년도 세입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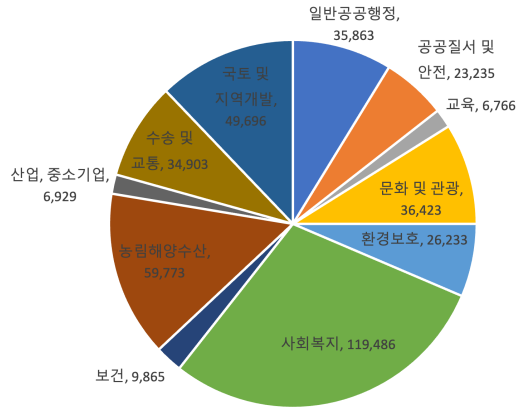


그림 V-5 2012~2020년도 세출결산

(비고: KOSIS에서 기록된 2012~2020년도 데이터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원그래프를 만든 것이다)

행정리로 돌리는 자금부담은 연구지에서 대동계 소관 사무로 처리되어 결국 대동계 지속 계기 중 하나로 귀속된다. 21세기에 들어 대동계 결산 보고서에서는 체육대회, 척사대회와 마을축제에 관한 항목이 수입·지출 리스트 외에 서류를 별첨하는 식으로 대폭 늘어나며 수지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는’ 기회이며 ‘마을 발전을 시키는 것’(사례 V-3 참조)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균정시책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임원 수고비와 같이 주요 지출 부담이 되어, 자금 마련의 원인으로 자리했다. 발전 담론은 발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민 주체를 형성한 동시에, 마을 사회 내 자금을 활용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마을공유재산을 움직이게 하는 유통경로를 형성했다. 결국 마을공유재산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움직이게 되고, 대동계도

이로부터 지속 동력을 공급받는다.

2007년 3월 3일 면회사대회 찬조금 명단

성명	금액	성명	금액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
	50,000		30,000
	30,000		20,000
(다 7)	30,000		50,000
(덕촌리)	20,000		10,000
(부인)	10,000		20,000
(군의원)	20,000		20,000
	30,000	리장님	10,000
용문동협(조합장)	20,000		10,000
계			710,000
면 품			
꽃집		맥주 (1 BOX)	소주 (1 BOX)
상 금			
노인부	100,000	부녀부	50,000
계			150,000
합계			860,000

2007년도 수입 내역

월 일	내역	금액	비고
1월 22일		50,000	회관 전기사용료
		18,000	리세
1월 28일		18,000	리세
2월 8일		18,000	리세
		18,000	리세
2월 22일		200,000	신입래
3월 3일	면 회사대회		
3월 22일	관정전기세	900,000	수리계(관정)
4월 23일	모친 장례	1,543,000	
5월 8일	부친 장례	700,000	
6월 15일	도로 제초작업 관조		
		30,000	
		30,000	
		30,000	
8월 30일	도로 제초작업		
		30,000	
		30,000	
10월 26일	도로 사용 승낙(서준순)	2,000,000	
11월 5일	(장례)	1,000,000	
	계	6,645,000	
	현물산조		
			막걸리 1통
			개 1마리 (20만원상당)
			개 1마리

그림 V-6, 7 다른 수입항목과 구분해서 별도로 기록된 첩사대회 찬조금 ©류평평

축제전 준비 지출

2015년 12월 26일

월 일	내역	지출
4. 6	용문 동협 경계부	18,900
4. 8		35,000
4.11	꽃잔디구입	600,000
5.29	해마라기 구입	150,000
6.28	결산 소득세.지방세	190
7.31	정보화마을(사진관 꾸미기)	1,000,000
8.4	용문 경계부	70,250
8.12	역대이장.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액자 사진현상)	1,000,000
9.1	마을만들기 포크레인작업	500,000
☆(12.22)	군세	940
	합계	3,375,280

축제후 수입 지출

2015년 12월 26일

월 일	내역	수입	지출
10.19	정보화마을(자부담)		500,000
10.19	담발		150,000
10.19	차해협(부식)		81,250
10.25	예금이자	9,166	
10.25	결산소득세		1,280
10.25	결산지방세		120
10.27	축제제반기금(이중계)		1,052,210
10.27	이중계, 차용금		10,000,000
10.27	체험수수료(정보화마을)		77,900
10.27	축제시(전기료)		50,000
10.27	축제수입(10% 정보화마을)		666,850
10.27	축제, 고춧가루()		260,000
10.27	축제시, 쌀()		220,000
10.27	축제(11월 수상자 꽃, 4명)		80,000
11.02	들깨멸이, 식대		121,000
11.27	축제후(뿔정리, 부식재료)		68,380
11.27	축제전(화단거름구입)		100,000
11.27	안양초등(세합비)	779,000	
11.29	예금이자	2,419	
11.29	결산소득세, 지방세		360
12.09	마을잔액(지출)		512,250
12.21	A4용지 1Box, HP잉크 태극기세탁		45,880
12.21	마을발표(꽃다발)		30,000
	합계	790,585	14,017,480

그림 V-8, 9 별도로 기록된 마을축제 관련 수입·지출 ©류평평

마을공유재산의 구성 변화를 요약하자면, 개발사업을 계기로 조성된 공공시설과 마련된 물품들이 늘어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와 관련된 수지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발전과 자조 담론을 통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부분적으로 마을 사회로 이전하는 기왕의 전략은 대동계를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마을사람들이 발전 및 자조 담론을 수용하는 면모가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 중심의 공유재산 운영과 대동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축으로 추측된다.

2) 민속사회와 행정리의 괴리 및 공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공유재산의 변화상은 마을로 인식된 행정리가 국가 행정 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데, 개별가구의 삶과 연결고리가 풀린 후 대동계 운영에서 말단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붉어진 까닭으로 생각된다. 대동계와 말단 행정의 관계가 밀접해졌다는 점은 이장의 공유재산 사용을 감독하는 대동계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사례 V-12 대동계장 선출 방식의 변화

“옛날에는 대동계장은 노인네들이 했었어. 요새 젊은 사람들 저거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고집들만 계속 부리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장 되면서부터 대동계장을 앞으로는 전임 회장이 맡는 걸로 하자 그랬어. 새로 된 이장이 1년은 지나야 관청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전임 이장이 대동계장을 맡아서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코치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자. (중략) 세대갈등이라는 게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어. 젊은 이장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대동계장 노인네는 안 된다고 고집만 부리면 안 되잖아. 서로 싸움만 하고 동네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이 동네 살면서 그런 거, 잘못된 거, 폐해를 봐 왔으니까 이 참에 바꾸자.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고친 거야.” (김ES, 1968년생, 2015~2020년도 화전2리 이장)

대동계 중수 후 설치된 계장은 처음에 존위처럼 연로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임명하는 것이었다. 마을재정기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마을일을 의논하는 데 참석하고 이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10년대 중반에 이장과 계장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이사무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임 이장이 계장을 맡는 것으로 선출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대동계장의 역할은 행정 체계 외의 인원으로서 마을재산에 대한 사용 감독에서 이장의 업무 수행 보조로 바뀌었다.

대동계 운영에 있어서는 소관 재산 구성부터 관리자 선출 방식까지 말단 행정에 맞추는 경향이 대두한 반면, 역설적으로 대동계 영향권과 말단 행정 구역의 괴리가 발생했다. 공유재산의 재구성은 대동계의 말단 행정 보조 역할을 강화하면서 공유재산의 구속력과 이에 기반한 통합을 약화시켰다. 1980, 90년대에 공유재산과 용익권의 구속력은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공유된 생활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주민으로 하여금 대동계에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공유재산에서 개별가구의 사용가치 비율이 줄면서, 공유재산과 이에 대한 용익권은 대동계 가입 시 구속력을 상실하게 됐다. 표 IV-1에서 나타났듯이 2000년대 이래 대동계에 가입하는 세대는 주민등록이 된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에서 50% 남짓 감소했다. 결국 대동계는 행정리 내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에서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소집단으로 변모했다. 사회 민속을 매개로 발현되는 사회가 민속사회라고 하면, 대동계 규모의 축소는 민속사회와 행정리의 분리로 볼 수 있다.

사례 V-13 의례문화 변화와 대동계 가입 필요성 감소

“이장이 부지런하고 홍보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집을 짓고 살잖아. 그러면 여기 발전 기금을 마을 발전기금을 얼마 내시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해줄 뿐이지. 안 내도 그만. 법적으로 내라는 법이 없잖아.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 마을에 와서 살게 되면, 마을사람들하고 더 붙어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해놓은 방법대로 그렇잖아. (중략) 옛날에는 이사 오고 그러면 동네 들어와야 되니까. 왜 동네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면 상여도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 그거를 들어야만 공동으로 상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혼식 같은 거 있을 때 옛날에는 마을에서 준비한 그릇이 있었던 말이야, 식기 같은 거. 그거를 공동으로 사놓은 거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내가 돈을 내야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상여도 안 메고 그냥 운구차 뽕 떠나서 그냥 화장터에 가서 해서.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조YJ, 1943년생)”

대동계에 가입해야 선주민들에게 리 주민으로 인정받고 공유재산에 대한 용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으나, 이 규칙은 그 자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행된다. 위 인용문을 보면, ‘계원’보다는 더욱 기초적인 ‘인간/사람’ 범주가 존재하고 계에 가입한 사람에게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두 적용되며 미가입자를 평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인간/사람’ 범주는 계원과 비계원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행정적으로 구획된 구역 안에서 행정적으로 ‘주민’에 속하되 사회 민속에 의해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람’으로 간주되는 이주민과의 공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특수 상황에 대동계 규칙을 무효화하여 비계원을 계원처럼 대하는 일도 가능하게 한다. 2022년 3월에 화재를 당한 한 가구는 대동계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계원 대우를 받아 공유재산인 마을회관을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았고 마을 주민들에게서 현물 및 금전 부조도 증여받았던 사건이 그 예에 해당한다.

사례 V-14 대동계 미가입자에 대한 부조

“동네 분들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쌀 갖다 주시고 반찬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애들 치킨도 사다주시고 돈도 주고 가시고. 그리고 의외로 불났던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4년 전에 저희도 불이 났었어요. 잘 알아요’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김HM, 1985년생)

“원칙은 그 원칙은 맞는데 우리는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누가 봐도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인데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람 사는 거지. 그게

너는 동네 마을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몰랐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좀 모르는 것 같아. (중략) 우리가 마을에서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도 마을에서 얼마만큼 해라 이런 거는 없어. 그냥 그 친구가 이 달이고 다음 달이고 집을 어디 구해서 나가면 마을사람들한테 그동안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래서 고맷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만 제대로 해보고 가면, 그래프만 댔지 뭘. 느긋이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걸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김ES, 1968년생)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보면, 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유재산 용익권을 허용해 주고 부조가 전해진 예외적 상황은 하기 두 가지 맥락에서 가능했다. 하나는 화재라는 사건에 대한 마을 사람의 선행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에 대한 이해이다.

개인은 타인의 체험을 의식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판단 및 이해를 진행하며 판단 및 이해로 촉발되는 감정도 경험한다. 막스 셸러는 함께 기뻐함과 함께 슬퍼함은 타인의 체험들과 그 체험의 본성과 성질들에 대한 지식을 전제중 하나로 여긴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셸러 2006: 40). 화재 소식을 듣자 마을 주민은 화재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불쌍하다’,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타인 체험에 대한 판단과 감정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건 또한 사건을 당한 자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관계가 있으면 자신이 어떤 행위를 취해야 할지 등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일어난다. 타인의 체험은 판단, 감정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나 자신과 관계없고 자신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면 의식의 흐름에서 곧 사라진다. 연구 사례에서 마을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부조를 보낸 행위양식은 타인의 화재 체험에 대해 자신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양식과 이를 가능하게 감정, 감각과 사유 방식은 과거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이웃들이 피해 가구를 부조하거나 구출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화재를 당한 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피해 가구를 집단적으로

든 개별적으로든 구휼하는 행위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집합을 습득하는 데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와 시혜자는 처하는 위치가 다르지만 화재 사건이 부조를 촉발하는 행위 사슬을 공동으로 경험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적 경험이라도 마을 사람들의 모임에서 논의됨으로써 공통의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22년 3월 화재가 발생한 당일 궁촌 여성들의 정기적 화투놀이 모임에서 화재 사건은 화제가 되어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뒤 올해 초와 몇 년 전에 일어난 화재 사건들을 회상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올해 동네에서 불이 많이 났다는 탄식과 아울러 침묵으로 토론이 끝났다. 모임은 특정한 체험에 대한 인식방식을 공유하고 같은 감각을 가지는 기타 주민과 공감하여 피해 가구에 대한 공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 자리로 볼 수 있다.

현물·현금 부조가 주로 개별 주민이 방문하여 증여한 것이라면, 마을회관을 임시거처로 빌려주는 것은 이장, 계장, 부녀회장, 노인회장과 새마을지도자로 이루어진 임원진들의 상의 하에 결정된 일이었다. 계원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동계 규칙을 변통하여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대동계에 가입해야 ‘화전리 주민’으로 인정받고 마을재산에 대한 용익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관념이 있는 동시에 ‘계원’ 혹은 마을사람이 말한 ‘주민’이 ‘사람’의 하위 범주로 사용된 양상이 관찰된다. 계원과 비계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나 계원만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용익권에 대한 규정은 계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밝히는데 인간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변통될 수 있다.

공유재산이 그 사용가치로 이주민에게 구속력을 지녔던 시기에는 ‘대동계원’과 ‘주민’의 범위가 유사했고, 대동계 가입이 ‘이에 들어온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공통 생활방식에 기반한 공유재산과 그 용익권의 구속력이 약화 돼 이주민의 대동계 가입률이 낮아지면서, 선주민 특히 대동계원에게 인정받은 ‘주민’(말하자면 대동계에 가입한 자)과

행정 절차에 의해 행정리 주민으로 등록된 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종전에 ‘계원’ 혹은 ‘주민’의 행위방식을 뒷받침하는 ‘인간/사람’ 이해는 선주민에게 여전히 유효해 그들이 이주민을 이해하고 대하는 데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구속력과 이에 의한 사회적 통합이 약해지지만, 인간관에 기반한 계원과 비계원 사이에 최저한의 통합 가능성이 남는다. 후자는 공유재산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을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작동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 형성 및 지속과 작용원리를 밝히려면 향후 마을 사회 민속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노동참여 탈의무화 후 여가로 보장된 통합

4장에서는 공유재산의 결속 원리를 생활방식의 공유, 용익권 제한과 노동 참여의 수반으로 확인했고, 생활방식과 용익권에 기반한 구속력의 약화를 5장 앞부분에서 확인했다. 공유재산 보수를 위한 공동노동과 상여 공유 관계에 수반되는 노동 교환 관계는 예외 없이 쇠퇴해, 각각 마을안길 포장과 의례용품 소각을 계기로 사라졌다. 현재 연구지 마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동노동은 주로 ‘정보화마을’, ‘생태마을 만들기’,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등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개되는 마을환경미화 작업과 마을축제 같은 행사의 준비 작업 뿐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강조하여, 참여마을 공모 시 마을 자체의 활동 계획을 방침으로 한다. 그러나 공모사업 주체가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데다가 활동 계획이 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이개발 위원회에게 맡겨져 그들의 견학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공동노동의 내용은 공유재산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발전 담론의 주도하에 놓여 있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역은 대동계에 의해 조직된 것보다는 말단행정조직이 주축하며 부역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대동계와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재산 공유에 기반한 자발적 공동노동과 달리, 행정 체계의 작동에 응하여 조직되는 부역은 개

발 정책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토가꾸기 사업과 새마을운동이 집행된 시기에는 여촌반, 동촌반과 마장반에서 한 해 동안 각호의 출역 횟수를 기록해 평균 이하에 달한 자에게 벌금을 징수하고 평균 이상을 하는 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

사례 V-15 부역 상·벌금 제도

“열 집이면, 이 집은 부역을 나왔는데 이 집은 안 나와,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 1년에 열 번을 하면 10번을 했다. 1년에 다섯 번 나온 사람, 열 번 다 나온 사람, 두 번 나온 사람, 그러면 이걸 평균을 따져서 덜 나온 사람은 그만큼 돈을 받았어 안 나온 만큼.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 전혀. 도로 포장이 되고 나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안 해.”(조YJ, 1943년생)

지역사회개발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지원금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마을에서 부역을 떠는 강제성은 약화됐다. 부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임원은 정부가 지원금으로 주민 참여를 장려하는 동원 방식을 수용해 마을부역을 조직하는 데 적용했다.

사례 V-16 화전2리 생태보전 실천마을(개인별) 행동요령

1. 공동과제 년 3회 이상 - 마을청소 환경정비 도로변 풀 깎기
2. 개별 과제 년 10회 이상 - 4월부터 시차를 10일 이상 두고 년 10회 이상 사진 찍고 날짜 꼭 표기(작업 내용) 논 밭 풀 까기, 폐비닐 정리 등
각 조장님이 1달에 1번씩 잠깐 모여서 사진만 찍어서 기록하는 것도 방법
3. 밭 집을 썰을 때는 작업 사진 찍고 지번 표시하고 본인도 나오게 사진 찍을 것
4. 축산 농가는 년 8회 이상 BM수 수령 칩을 찍어 확인(기술센터에서 수령 시)
5.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단체로 모여서 가짜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각자 사진을 잘 찍으셔야 합니다.

별금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동원되는 부역은 공유재산 보수 시 조직되던 부역과 일생의례에서 나타나던 품앗이와 비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책임이 아니라 정부 행위에서 배워 온 상벌기제에 기반하여 대조를 이룬다. 개발사업을 계기로 조직되는 공동노동은 종전의 재산 공유 관계에 기반했던 공동노동이나 품앗이에 비견하는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을 동원해야 한다.

오늘날 마을부역은 주로 행정 체계의 부름, 특히 발전과 자조 담론에 응하여 조직되지만, 행정 체계의 세계 외에 마을 사회 민속으로서 반복되어 온 행위 양식인 노동-여가 혹은 노동-회식 패턴을 보인다. 마을부역은 순수한 노동이 아닌, 여가 및 회식이 따르기 마련이다. 2021년 8월 제조작업이 행해진 그날, 마을사람들은 아침 8시에 마을회관 앞에 와서 이장과 노인화장에게 인사한 후 작업을 시작했고, 9시를 전후하여 음식을 나누고 쉬는 시간을 갖추었다. 30분 정도 휴식했다가 잔업을 마무리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떠나든가 마을회관에서 베푸는 점심 회식에 참여했다. 부역이라고 하지만 한담과 음식을 나누는 휴식시간은 작업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공동으로 일하다 여가시간을 갖고 노동이 끝난 후 뒤풀이를 하는 과정은 분업구조와 같이 부역, 농업생산과 일생의례 등 여러 영역의 공동노동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행정 체계화 전 이미 마을 사회에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을 차원에서 조직되는 부역에만 아니라 마을주민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도 드러난다. 2006년도 면 체육대회 관련 지출을 보면, 참가비와 비품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연습 및 행사 후의 뒤풀이 비용이 지출을 구성한 주요 부분이다.

그림 V-17 2006년도 면체육대회 관련 지출(부분) ©류평평

순번	품 목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22	축구연습시 저녁			164,000	
23	축구연습시 저녁			125,000	
24	유니폼(택배비포함)	50	10,500	530,000	
25	코팅 장갑			4,000	
26	저녁식대			60,500	
27	행사뒤풀이 소주	2box		40,000	
28	1리와결산시저녁			87,000	
29	고추가루			30,000	
30	간장, 물엿			9,600	
31	앞치마	30	8,000	240,000	
32	면체육대회참가비			300,000	
	소 계			4,621,370	

행정 체계의 작동은 개별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들의 교차점, 예컨대 체육대회, 척사대회와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구성했지만, 개별 세계들이 실제적으로 펼치는 시공간들을 일일이 채워서 그 구체적 전개 양상을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행정 체계가 결석하는 자리에서 민속 문화가 주도하는 행위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만약 부역이나 면 주최 행사를 개별 주민의 세계들이 만나는 지점으로 간주한다면, 민속세계에 속하는 노동-여가 행위양식은 마을사람의 부역이나 면 행사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정부 추진 하에 생성되는 연결통로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체계의 행위체에 부착돼 피어나는 민속적 행위들은 행정 체계의 작동을 순조롭게 하는 안정기제로 짐작되는데, 이들로부터 민속적 행위의 기능을 산출하기 위한 주민 심리에 대한 분석이, 향후 연구 과제로 주목된다.

제 6장 결론

본 논문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지역에서 행정리 단위로 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고, 화전2리 대동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20세기 이래 동계류 조직의 지속과 변모를 검토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계류 조직을 ‘마을공동체’의 표징이나 마을사람들의 행위 결과물만으로 이해하고 국가 행정과 마을 자치 간의 대립 및 투쟁에 주목하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서로 구분되면서도 공존하는 체계세계와 민속세계로 생활세계를 이원화하는 이론적 모델을 수용하고 국가 행정 체계와 마을 사회 민속의 공동 작용 및 상호 의존을 가정하는 전제 하에서 대동계의 존속에 접근했다. 체계세계에서 현상화된 마을(구역, 주민과 공공의 일)과 민속세계에서 현상화된 마을을 각각 추적해 대조하고 현상화에서 나타나는 의미부여 방식과 인원 및 물질의 움직임을 단서로 행정 체계와 사회 민속의 연계 방식을 조명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양평군과 경기 지역에 관한 문헌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갑오개혁 이래 마을에 대한 국가 행정이 체계화된 과정을 회고했다. 연구지와 근접한 양평군 양서면에서 발굴된 대야동계 문서를 통해, 당시 반상계층을 모두 포함하는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가 상장례 부조, 공유재산 관리, 강신, 구휼, 부역과 호포 및 공납 징수 등 마을 대소사들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공사무를 장관하는 동계와 오가작통조직이 모두 재지사족의 감독 하에 놓여 있어 관청을 마을 사회의 외부 권위로 의지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양근-지평과 같이 경기도 광주부 관할구역에 속했던 경안면의 이리동약을 아울러 참고하면, 단체 행위를 규정하는 행정적 질서는 ‘고장의 선인’과 ‘나라의 양민’이 되는 기준으로써 개인의 행위를 규정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갑오개혁에서 「향회조규」와 「향약판무규정」의 반포를 전환점으로, 국가 행정 체계는 관리 대상으로서의 마을을 확장하고 국가 중심의 행정적 질서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향약 계통의 조직과 임원을 기반으로 군·면·리 차원의

행정조직을 만들어 해당 지역 내의 주민과 재산들을 관리하고 부의 생산, 주민의 삶과 법령의 집행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 행정 대상으로서의 마을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재산과 이에 따른 납세액의 양을 기준으로 주민 등급을 나누는 평가 방법을 제시해 ‘국민’으로서의 바람직한 품행을 재규정했다.

국가 행정 체계는 유지를 행정보조조직에 포섭하기 위해 신분적 질서에 기반한 ‘수고’ 관념을 수용한 한편, 마을 임원 수고비를 포함하는 마을 행정 비용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추렴하는 관습을 제도화했다. 식민지 정부는 위와 같은 행정 방식을 계승하는 동시에, 행정적으로 구획된 생활단위인 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시체제를 도입하기 전에 여전히 부락(자연마을)을 말단 행정 단위로 활용했고, 그 후에야 구와 그 하부조직인 반을 활성화해 주민 통제, 정보 전달과 물자 유통을 담당하는 말단 행정보조조직으로 정립했다. 해방 후 동리·반조직은 구·반조직을 대체하고 그 기능을 이어받아 1990년대까지 국가 행정 체계의 작동과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물자·인원·정보 유통 네트워크의 말단 단위로 작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기능으로 행정 구역 내 개별가구의 생계에 깊이 개입해서 모든 가구에게 필요불가결한 조직으로서 자리를 잡고 행정 체계에 의한 연결을 만들어냈다.

기능 영역 분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마을재정기구로 축소된 동계류 조직은 말단 행정 비용의 일부를 마을주민에게 이전하는 작동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 행정 체계로부터 지속의 동력을 받고, 말단 행정 구역과 경계가 같아졌다. 본 연구에서 주요 사례로 선정된 화전2리 대동계는 바로 행정리 정립 시 이장을 비롯한 행정리 임원들의 수고비를 각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민속문화 기능 중의 일부가 체계 기능과 중합을 이룰 때, ‘기능영역이 내외준거를 기반으로 자동 재생산되는 체계’는 민속문화를 재생산시키는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 체계와 동계류 조직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그 중간에 얽혀 있는 사회 민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 자체의 행정 비용 마련을 제도화하는 「동리세조례」와 동리장 보수 지급 방침이 폐지된 후 수

고비 각출과 대동계 운영은 마을 임원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즉 ‘수고’ 관념으로 인해 여전히 지속된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 체계는 행정 보조 인원이 맡는 사무의 확대를 통해 대동계의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연계방식은 행정 체계에게 행정 보조 인원으로 취급 받는 사람들이 민속세계에서도 존재하고 민속문화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생활세계의 이원화와, 행정 체계가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부분이 된다는 생활세계에서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행정 체계화와 대동계 성립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뒤, 본 연구는 지역 사회개발사업을 계기로 번창했다가 1990년 말 이래 쇠퇴하기 시작한 화전2리 대동계의 변화상을 분석했다. 대동계의 성장은 공유재산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지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반계, 상례조직과 대동계와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구속력과 결속 원리를 ①재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생활방식, ②용익권에 대한 제한, ③공유관계에 수반되는 노동책임 세 가지로 추출했다. 20세기 후반의 공유재산은 주로 개별 가구의 농업생산, 일생의례와 자녀 양육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 물품과 금곡(金穀)으로 구성됐다. 개별가구에게 공유되고 한 집안의 힘만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재물을 소유하는 생활방식은, 개별가구가 계에 가입하는 주요 계기이며 용익권에 의한 구속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용익권의 확립은 재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계원과 비계원의 구분 나아가 집단의 경계를 짓는다. 용익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에 참여할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는 것은 기타 계원과 공동노동 혹은 노동교환 관계를 맺힘을 의미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위와 같은 공유재산은 주로 자연마을이나 구동리를 단위로 결성된 반계·상례조직 소관 재산이었고 자연마을과 구동리 단위의 사회적 연대를 유지해 있었다. 대동계 소관 자금이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계기로 증가했고 상례조직들이 인간 감소로 통합했다가 대동계에 편입된 후로부터 대동계에 기반한, 행정리 내 모든 자연마을을 아

우르는 사회적 통합은 비로소 강화되었다. 20세기 후반의 지역개발사업은 현지 인력과 물적 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식민지시기의 농촌진흥운동과 유사하지만, 동원의 최소 단위인 마을에 도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도 적극적으로 부여해 ‘협동’과 ‘자조’를 발전 담론의 일환으로 포섭하고 또한 원조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운동과 구별된다. 현지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 체계의 작동방식은 행정리 단위의 공동노동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종전의 사회 민속에 따라 분할 불가능한 공유재산으로 취급됐고, 공동노동을 통해 구축한 환경과 인프라는 공유재산으로 인식되어 이후 이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 납부를 설득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행정 체계가 협동 관행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공동노동이라는 행위방식을 둘러싼 사회 민속의 지속에 변수를 도입했다. 노동관계와 소유관계를 병행하는 관습과 이에 따른 공동노동 수익 처리방식은 전처럼 행해져 변수를 공유재산 증가 계기로 전환하는 반면에, 공동노동에 답례하는 행위방식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출을 대비하는 수요로, 외부에서 노임 지급의 방식을 수용해 현금화되었다.

공유재산의 구속력은 개별가구에게 필요한 재물을 마을이라는 단위를 통해 조달·제공하는 데에서 비롯되어, 개별가구에게 재물이 지니는 의미와 개별가구에게 중요시된 재물의 유통에 마을이 개입하는 정도를 기반으로 한다. 1990년대 말 이래로 개별가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공유재산은 개별가구의 삶과 연결고리를 풀어 마을사람을 대동계에 가입하게 하거나 결속하는 구속력을 잃어 나갔다. 말단 행정에 있어서는 면 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구가 이·반조직을 대신하여 개별가구 내지 개인의 삶에 관한 행정 관리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개별가구에게 농자재 및 생필품 취득을 비롯한 생활의 여러 분야에 관여해 주는 이·반장의 역할은 축소됐다. 그 결과로는 임원 수고비를 각출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동계에 가입률이 감소했고 대동계와 행정리의 경계가 달라졌다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동계를 중개로 발현되는 민속사회와 행정적으로 구획되는 마을 간에 괴리가 생겼지만, 종전에 ‘계원’들 사

이의 관계 및 상부상조를 규정하는 인간관은 선주민에게 여전히 유효해, 그들이 이주민을 이해하고 대하는 데 반영되고 계원과 비계원 사이에 최저한의 통합 가능성을 남긴다.

한편, 20세기 후반 정부가 추진해 온 발전 담론은 대동계원들이 행정리 단위의 사회적 연대를 만들고 대동계를 운영해 나가는 데 갈수록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행정 체계에게는 행정리가 개발사업 및 공공행사를 위해 인원을 동원·조직하는 단위로서 부각된 동시에, 마을공유재산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마련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자금이 공유재산의 구성과 수입 및 지출에서 주요 부분으로 성장해 나갔고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마을기금 혹은 마을발전기금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대동계에 가입해 있는 선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개념으로 공유재산을 지칭·설명함으로써 이주민에게 대동계 가입과 기금 납부를 권하기 시작했다. 발전 담론에 대한 수용은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체육·문화 행사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행사 및 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부분적으로 마을사회에 전가하는 행정 관리의 수단에 맞물려 공동자금의 마련 및 유통을 맡는 대동계를 활성화한다. 행정 체계는 자원의 유통양상을 조절함으로써 대동계의 존속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들(가령 자조, 협동, 행복, 발전, 건강, 녹색)을 제시·규정하여 마을사람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발전 담론에서 ‘민간 참여’와 ‘관·민 협력’ 같은 개념이 보이지만, 마을주민들이 주로 정부에 의해 선출·전시되는 모범 사례를 본보기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계획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방식을 규정하는 의미부여 방식은 관이 지배한다.

발전 담론에 의지하는 사회적 연대와 공유재산 운영은 행정리 혹은 그 상급 행정단위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고 마을과 개별가구 사이의 연결을 약하게 맺는 까닭으로, 지역 내 주민들 사이어나 개별 주민과 행정리 사이에 강한 결속력을 낳지 못한다.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공유재산은 종전의 공유재산처럼 노동 참여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재산 공유

관계가 노동 참여 책임을 수반한다는 관념 대신에, 정부가 사업 추진 시 보여주는 인센티브 전략을 모방해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행위방식은 마을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조직되는 공동노동을 주도하고 있다. 발전 담론과 개발사업을 통해 형성되어 취약성을 보이는 이 연결통로는 체계세계 밖에서 일어나고 마을 단위의 사회적 연대를 목적으로 지향하지 않은, 여가시간을 공동으로 보내는 사회 민속과 공동노동 후 뒤풀이를 하는 사회 민속을 통해 견고해진다.

본 논문은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 체계와 사회 민속의 공동작용을 염두에 두고 대동계의 존속을 고찰했다. 행정 체계화와 이를 배경으로 하는 대동계 설립을 통해, 국가 행정 체계가 기능을 준거로 자신의 작동과 재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사회 민속을 선별해서 활용할 때 해당 사회 민속의 존속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동계 설립 계기 겸 주요 업무인 임원수고비의 마련이 행정보조조직 직능으로 확대된 것과 그 수고비가 동리장보수제도 수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민속세계와 체계세계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실존들을 매개로 사회 민속이 행정 체계와 연계되고 행정 체계의 작동에 반응함을 시사해 준다. 한편, 수고비 관행은 입법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돼 왔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 안정성이 노동시장과의 접촉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는 본문에서 조명되지 못하고 향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20세기 후반 이래 대동계의 존속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대동계 주된 기능인 공유재산 관리를 단서로 삼아 공유재산의 구성, 구속력과 그 변화를 추적했다. 20세기 말까지는 공유재산의 구속력은 재산이 개별가구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과, 용익권 취득에 따라 구성원과 계 사이에 또한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맺히는 노동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삼았다. 전자는 대동계가 마을재정기구로 단순화되지만 일생의례, 자녀양육과 농업생산 등 여러 생활 영역과 결합하고 있는 민속세계의 기능 종합 특징을 드러낸다. 생활세계에서의 기능 영역 분화와 말단행정에서의 전문화가 일어나면서, 공유재산은 여러 기능 영역과, 나아가 개별가구의 일상생활과 연결고리를 풀어 나가고 발전 담론 주도 하의 개발사업

을 중심으로 재구성됐다. 공유재산이 재편된 데다가 발전담론이 구성원과 집단 사이·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노동교환을 유지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동계는 여전히 마을재정기구의 성격으로 행정 체계로부터 지속의 동력을 받고 있지만 공유재산의 구속력과 함께 축소됐다. 즉, 행정 체계는 단체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적 질서를 제시해 주었지만, 과거의 나라-마을-인간에 관통했던 행정적 질서처럼 강한 사회 통합을 낳기 어렵다. 후자에서 비롯된 인간관은 오늘날에도 사회 민속에서 잔존하고 있으며 행정 체계에 의해 발현되는 행정마을과 사회 민속에 의해 발현되는 민속사회 사이의 균열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행정 체계와 이로 확산된 발전 담론은 개별주민의 세계들의 연결점과 물적·인적 자원 유통의 기본 방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성시키는 사회적 연대가 취약하고 행정 체계의 작동과 상호 동반하는 민속에서 안정성의 힘을 얻는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삼수, 1964, 『한국사회경제사연구』, 서울: 박영사.
- 김택규, 198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빈센트 S. R. 브란트, 김관봉 옮김, 1975, 『한국의 촌락』, 서울: 시사문제연구소.
- 스즈키 에타로 지음, 1964,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옮김, 『한국농촌사회 답사기』, 서울: 이대출판부.
- 윤해동, 2006, 『지배와 자치』, 서울: 역사비평사.
- 이해준, 1996, 『조선시기 향촌사회사』, 서울: 민족문화사.
- 장동섭, 1973, 『농촌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 정승모, 2010, 『조선후기 지역사회구조 연구』, 서울: 민속원.
- 제임스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최재율, 1991, 『한일농어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유평출판사.
- 니클라스 루만 지음, 이철·박여성 옮김, 2020, 『사회적 체계들』, 서울: 한길사.
- 막스 셸러 지음, 조정옥 옮김,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 막스 베버 지음, 박성환 옮김, 1997, 『경제와 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모리스 고들리에 지음, 오창현 옮김, 2011, 『증여의 수수께끼』, 파주: 문학동네.
- 미셸 푸코 지음, 오토르망 옮김,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1978년』, 서울: 난장.
- 미셸 푸코 지음, 김상운 옮김, 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

- 드프랑스 강의 1975~1976년』, 서울: 난장.
- 에드문트 후셀 지음, 이종훈 옮김, 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행적 현상학』, 서울: 한길사.
- 本田洋, 2016, 『韓國農村社會の歴史民族誌：産業化過程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再考』, 東京: 風響社.
- 鈴木榮太郎, 1973, 『朝鮮農村社會の研究』, 東京: 未來社.
- Escobar, Arturo, 1994, *Encountering Development*,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sons, Talcott, 1991[1951], *The Social System*, London, New York: Routledge.
- 1968,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A Study in Social Theory with Special Reference to a Group of Recent European Writers*. 2 vols. New York, London: Fress Press.
- Parsons, Talcott and Shils, Edward A.,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dcliffe-Brown, Alfred, 1958, ed. M. N. Srinivas, *Method in Social Anthropology: selected essay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논문

- 강정원, 2002, 「근대화와 동제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5(1).
- 2020, 「현대화와 민속세계, 민속문화」, 『현대화와 민속문화』, 서울: 민속원.
- 강창규, 1966, 「계가 이동농협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제연구』 8.
- 구열희, 2019, 「19세기 양근 대야동의 동계운영과 성격」, 『지방사와 지

- 방문화』 22(2).
- 김건태, 2008, 「조선 후기~일제시기 전통동성촌락의 변화상: 전라도 남원 둔덕리 사례」, 『대동문화연구』 62.
- 김경욱, 2002, 「한국전쟁 이후 장흥 유치동계의 조직과 기능변화」, 『역사학연구』 19,
- 2010, 「20세기 전반 장흥 노력도 대동계의 조직과 운영」, 『역사민속학』 33.
- 김광준, 1954, 「동리장제도의 재검토」, 『지방행정』 3(2).
- 김병인, 2003, 「대동계의 형성과 변화」, 정근식 외, 『구림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화』, 서울:경인문화사.
- 김병하, 1958, 「계의 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덕, 1985, 「동계고」, 동간행위원회, 1987, 『두계이병두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 1992, 「촌회와 향회: 공동체적 가치의 현대적 실현을 위하여」, 한국역사민속학회 엮음, 『역사민속학 제2호』, 서울: 이론과실천.
- 김영희, 2000, 「일제말기 국민총력운동의 전개와 농촌통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 김인걸, 1984, 「조선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 『진단학보』 58.
- 김점숙, 2012, 「미군정기 국내산 생필품 통제 정책」, 『사학연구』 105.
- 김준, 2003, 「사회조직과 마을공간구조의 변동」, 정근식 외, 『구림연구: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인문화사.
- 김태우, 2021, 「광복 이후 경기 남부 마을 조직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시론」, 『민족문화연구』 90.
- 권태준, 김광웅, 1981,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 서울: 법문사.
- 미야지마 히로시, 2021, 「한국 소농사회의 장기지속성에 대해」, 배항섭 엮음,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는다』, 서울: 너머북스.
- 박경하, 1987, 「왜란 직후의 향약에 대하여: 고평동동계를 중심으로」,

- 『중앙사론』 5.
- 1993, 「조선후기 촌락민조직과 촌계」, 『정신문화연구』 16(4).
- 박순, 1999, 「조선전기 광주지방의 향약과 동계」, 『동서사학』 5.
- 배항섭, 2021, 「19세기 조선 향촌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공론의 대두」,
배항섭 엮음, 『동아시아의 근대, 장기지속으로 읽는다』, 서울:
너머박스.
- 백남운 지음, 하일식 옮김, 1991[1927], 「계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휘편(彙編)』, 서울: 이론과실천.
- 신상철, 1989, 「지방자치의 앞둔 동리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
무부지방행정연수원 엮음, 『연구논문집: 일반행정분야』.
- 신용하, 1987, 「두레와 농민문화」,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7,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서울: 한길사.
- 안승택, 2009, 「해방 전후 한국농촌의 공동노동과 호락질」, 『비교문화
연구』 15(2).
- 2014, 「현대농촌일기에 나타난 촌락사회의 계 형성과 공동체
원리」, 『농촌사회』 24(1).
- 2019, 「근현대 향촌사회에서 상여를 메던 ‘아랫것들’과 공동체
의 ‘살갓’: 경기남부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52(1).
- 오창현, 2008, 「농지개혁과 마을공동체의 변형」, 『비교문화연구』 4(2).
- 이경란, 2004, 「동원체제하 농촌통제와 농민생활: 마을 사회관계망을 중
심으로」, 『동방학지』 124.
- 이성우, 2012, 「전시체제기(1937~1945년) 일제의 농촌통제정책과 그 실
상」, 『한국근현대사학회』 60.
- 이영훈, 2002, 「18. 19세기 대리서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 ·
이영훈 외, 『맛질의 농민들: 한국근세촌락생활사』, 서울: 일조
각
- 이용기,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동계와 마을자치-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서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교, 2017, 「일제강점기 마을사회의 동향과 동계의 역동성」, 『비교

- 민속학』 45.
- 이진태, 1989, 「17·8세기 향도 조직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
- 이토 아비토, 1982, 「계조직에서 보이는 '친한 사이의' 분석」, 최길성 엮음, 『한국의 사회와 종교: 일본인에 의한 사회인류학적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2000, 「한국의 임의 참가조직」, 한경구·이토 아비토 외, 『한일 사회조직의 비교』, 서울: 아연출판부.
- 이해권, 1969, 「말단 행정강화에 관한 연구: 동리장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준, 1990,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향촌사회사연구회 엮음, 『조선후기 향약연구』, 서울: 민음사
- 임선빈, 1990, 「공주 부전대동계의 성립배경과 운영주체」, 『백제문화』 20.
- 장동섭, 1969,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서민 협동체 「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승모, 1990, 「상·장제도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 국립민속박물관, 『(영원한 만남) 한국 상장례』, 서울: 미진사.
- 정세경, 1984, 「우리나라 분수림의 발전과정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환, 2019, 「17세기 경주 국당리 동계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 42(4).
- 2020, 「조선후기 경주 방어리 사계와 동계의 호혜와 협동 가치」, 『한국학』 43(4).
- 정승진, 2004, 「20세기 전반 전통 농촌지역의 사회변동 양상」, 『대동문화연구』 48.
- 2006, 「나주 초동동계의 장기지속과 변화, 1601~2001」, 『대동문화연구』 54.
- 주강현, 2003, 「20세기 동계전통의 장기지속과 촌계로서의 자치적 성

- 격」, 『민족문화논총』 28.
- 채종암, 2003, 「소유자미복구 및 미등기토지의 소유자확인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9권.
- 최병택, 2008, 「해방 직후~1960년대 초 산림계 설립논의의 전개와 그 성격」, 『사학연구』 90.
- 최재석, 1972, 「한국에 있어서의 공동체 연구의 전개」, 『한국사회학』 7.
- 한상권, 1984, 「16·17세기 향약의 기구와 성격」, 『진단학보』 58.
- 허은, 2004,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미국의 한국 농촌사회 개편 구상」, 『한국사학보』 17.
- 혼다 히로시, 2002, 「한국 지역사회의 지연성과 공동성」, 한경구·이토 아비토 엮음, 『한일 사회조직의 비교』, 서울: 아연출판부.

- 李覺鐘, 1923, 「朝鮮民政資料-契に關する調査」, 『朝鮮』 7월호.
- 善生永助, 1927, 「朝鮮に於ける契の利用」, 『朝鮮』 1월호.
- 豬谷善一, 1924, 「朝鮮に於ける契の研究」, 『商學研究』 4-2.
- 今村靱, 1931, 「朝鮮の地方自治制度に就いて」, 『朝鮮』 1월호.

3. 기타 자료

자료집

- 朝鮮總督府, 1910, 「組合に關する慣習如何」, 『慣習調査報告書』.
- 1910,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朝鮮總督府官報』 第28號.
- 1912, 『面制說明書』
- 1926, 『朝鮮の契』.
- 1934[1911], 「面及洞ニ關スル制度舊慣調査」, 『邦文』(3).
- 1935, 農村振興運動の全貌
- 1938, 『農山漁村に於ける契』.
- 1940,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 1941, 半島ノ國民總力運動
- 1943, 『國民總力運動要覽』.
- 1945,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事務局, 1940,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の組織
と其の活動」, 『文教の朝鮮』 176.
- 京畿道內務部社會課, 1927, 京畿道農村社會事情
- 府邑面雜誌社, 1937, 府邑面雜誌 2卷 10號
- 越智唯七 編著, 2002,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上)』,
東京: 龍溪書舍.
- 경기도, 1957, 「자문사항답신: 국민반운영강화책」, 지방행정 6(4).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2, 『경기도사: 9권』, 수원: 경기도사편찬위원회.
- 경기도새마을회, 2020, 『경기도새마을운동50년사: 1970~2020』, 수원: 경
기도새마을회.
- 경기문화재단 엮음, 2005,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수원: 경기도.
- 경기문화재단 엮음, 2005, 『경기도의 근현대지도』, 수원: 경기도.
- 국세청, 1996, 『세정100년약사』, 서울: 국세청.
- 국회예산정책처, 2018,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서울: 국
회예산정책처.
- 농협중앙회, 1966, 『한국농협오년사』, 서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021, 『한국농협 60년사: 1961~2021』 2, 서울: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 대한산림조합연합회, 1977, 『산연십오년사』, 서울: 대한산림조합연합회.
- 송병기·박용옥·반한설 엮음, 1970, 『한말 근대법령 자료집 I』, 서울:
국회도서관.
- 양평군, 『통계 연보』.
- 용문면지발간위원회, 2011, 『용문면지』, 양평군 용문면: 양평문화원 용
문분원.
- 이상식 역주, 2009, 『여지도서(3): 경기도』, 전주: 디자인흐름.

- 지방국새마을지도과, 1973, 「마을기금 및 재산조성관리」, 『지방행정』 22(241).
- 지역의회발전연구원, 2020, 『민선 양평군정 20년사: 1995-2018』, 양평군: 양평군.
- 한국지방행정사편찬위원회, 1987, 『한국 지방행정사, 1948-86』, 서울: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엮음, 1999, 『지방자치 행정50년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이트

- 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 국가기록원(<https://archives.go.kr/next/viewMain.do>)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assembly>)
- 양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yp21.go.kr/www/index.do>)
- 양평문화원(<http://ypculture.org/yp16/>)
- 장서각 기록유산 DB(<https://visualjoseon.aks.ac.kr>)
-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
-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

中文摘要

國家行政系統與村落社會民俗的交織與相生

-以京畿道楊平郡某山村大洞契的變遷為例-

劉萍萍

人類學系

社會科學大學院

首爾大學

本研究聚焦于京畿道楊平郡龍門面地區行政裏單位的結契現象，通過對花田2里大洞契的個案分析，考察朝鮮時期的村落自治組織洞契在行政系統化的時代背景下如何重組、存續和變遷。本文參考了將生活世界二分為系統世界和民俗世界的民俗學理論，將大洞契的存續與變遷視作國家行政系統和村落社會民俗共同作用下的結果，並試圖通過大洞契存續與變遷的分析，闡明國家行政系統與村落社會民俗的連結方式。為此，本研究以人力、物資的流通及其背後的意義賦予方式為線索，分別考察系統世界與民俗世界中顯化出的村落（區域、居民和公共事務），找出其間的差異與連結。鑒於大洞契的主要功能為村有財產管理，重點考察了村有財產的構成與流動。出於論證便利性與清晰行的考慮，本文以大洞契重修的1980年代中期和大洞契規模縮小的千禧年前後為時間節點，劃分出三個時期。

第一個時期是行政系統化初始的甲午改革到大洞契重修的1980年代中期這段時間。通過楊平郡和京畿道地區存有的古文獻，可以確認朝鮮末期的村落行政由鄉班階層擔任的教化職和中人、奴婢擔任的實務職組成的村落組織所落實，以貫通國家-村落-個人的行政秩序為根據，統領村內大小事務。大韓帝國地位的政府文書則展示了村落社會基層行政組織以戰時體制和國家現代化事業為契機成長、壯大的過程。基層行政組織在村落社會構建出國家行政管理空間，向居民傳達包括"國民"品格在內的、由行政體系主導的意義賦予方式，並向上級行政組織報告村落社會相關信息，使國家對村落的統治得以可

能。另一方面，在以花田2里居民為對象的訪談中，可以發現被村民認為是村落共同事務的人生儀禮被排除在基層行政組織的職務範圍外，以契為中心得以組織。在此可以發現村落社會內部民俗社會與作為基層行政單位村落間的分裂。然而國家行政系統以功能為基準自我再生產時，發現了契文化中可用於自身運作、再生產的部分——契員眾籌資金的行為方式。在系統社會中，契以行政資金源的面貌顯現。系統基於自身再生產需求將契工具化時，促生了末端行政區劃為單位的契組織，並為其持續提供動力。基於系統功能的連結點之外，同時出現在民俗世界和系統世界中的村幹部及其勞動是大洞契得以建立並長期維繫的另一契機。籌集村幹部辛苦費的行為方式可見於朝鮮末期的洞契組織，行政系統化後基層行政組織分化出來並不斷擴大其職能，却因行政系統將契工具化為末端行政財源的運作方式，未能從政府機構獲取酬勞，而是依賴於村民籌集的資金。基層行政組織一方面作為村落治理工具出現在系統世界中，一方面依據村民對村落事務、村幹部的理解顯化於民俗世界。村民經由大洞契籌集村幹部辛苦費的行為方式在行政系統與社會民俗的共同作用下延續至今。

第二個時期是大洞契因村有財產增加重修並擴大其技能的1980年代中期至20世紀末。在這個階段，共有財產借助其對個別家庭的使用價值，以及與用益權一同確立的成員-組織間、成員-成員間的勞動交換關係，具有促使個別家庭加入洞契，強化個別家庭間紐帶的約束力。行政里單位的共有財產增加以大洞契與喪葬組織的合併，及社區開發事業的展開為其中。其中，社區開發通過“發展”、“協同”、“自助”等話語和物質獎勵，以行政領導為單位調動人們參與開發事業，觸發了行政里單位的共同勞動，以及村落社會和外部社會之間等資金流動。其中共同勞動在民俗世界中與共有財產息息相關，成為開發事業與社會民俗的連結點之一，將開發事業帶來的變動引入民俗世界。勞動關係和財產所有關係並行的關係和以其為依據的共同勞動收益處理方式，並未因開發事業受到衝擊，反而將社區開發帶來的收益與新建設施轉換為共有財產，帶來村有財產的增加。相反，酬勞或答謝共同勞動的行為方式却因開發事業帶來對共同支出的增加，借鑑了工資支付方式，實現現金化。村民對開發話語的接受和勞動答謝方式的轉換，雖然在該時期起到了增加村有財產、擴大

大洞契功能的作用，在接下的第三時期中卻成爲大洞契和民俗社會範圍縮小的原因之一。

21世紀以來，隨着生活世界功能領域分化與基層行政專業化的加速，村有財產與個別家庭日常生活之間的紐帶逐漸瓦解，村有財產的構成也以發展話語主導下的開發事業爲中心重組。再加上發展話語無法提供維持成員-組織間、成員-成員間勞動交換關係的意義賦予方式和信念，使得大洞契雖然仍以村落財政機構的身分爲行政系統工具化、從中獲得持續動力，却失去了基於共有財產的約束力和凝聚力。行政體系雖提供了限制集體行爲的新行政秩序，却無法像過去貫穿國家-村莊-個人的行政秩序一樣締結強有力的社會連結。而源於後者的人觀至今仍殘存於社會民俗中，彌合著行政村和民俗社會之間的裂痕。如今行政系統及其積極推廣的發展話語主導著村落社會內共同活動的主要形式，但其在個別居民生活間創造的這些連結通路十分脆弱，反而是與系統相伴相生，在行政系統創造出連結點上展開的社會民俗起到穩固連結的作用。

.....

**关键词：洞契，社會民俗，行政系統，村落共同體，地域社會開發，
村有財產**

學 號：2019-23025